

2010-24 | 연구보고서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청소년 보호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청소년 보호 방안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책임연구관 김윤영

<제목 차례>

I. 서론	1
1.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1
가. 연구 목적	1
나. 선행연구 검토	4
2. 연구 방법 및 범위	11
가. 연구 방법	11
나. 연구 범위	11
II. 이론적 배경	13
1. 개념 정의	13
가. 탈북자 및 탈북청소년	13
나. 보호담당관	17
2. 탈북 요인 및 유형	21
가. 탈북 원인	21
나. 탈북 유형	22
3. 탈북 경로	25
가. 북한 탈출 경로	25
나. 국내 입국 경로	26
다. 중간 기착지에서의 경험	29
III. 탈북청소년 정착실태 분석	31
1. 탈북자 현황	31

가. 국내·외 체류 현황	31
나. 탈북청소년 현황	37
2.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43
가. 학비지원	43
나. 편입학 지원	44
다. 학력인정	46
3. 탈북청소년 적응 실태	47
가. 학교 적응 실태	47
나. 탈북청소년의 의식성향	50
다. 탈북자 사회일탈 현황	54
IV. 탈북청소년 신변보호 지원체계 및 문제점	64
1. 신변보호 지원 현황	64
가. 탈북자 보호의 법적 근거	64
나. 신변보호 체계	65
2. 신변보호 지원의 문제점	71
가. 신변보호경찰관과 탈북자와 관계	71
나. 과잉보호의 문제	75
다. 보호담당관의 역할분담 미흡	76
라. 신변보호경찰관의 인력 및 예산 부족	77
V. 탈북청소년 신변보호 개선 방안	79
1. 신변보호경찰관 역량 강화	79
가. 신규인력 및 예산 확보	79
나. 탈북청소년 전담 전문요원 양성	80
다. 탈북자 지원 전담부서 신설	80

2.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 배치와 의식 재고	81
가. 맞춤형 신변보호경찰관 배치	81
나. 신변보호경찰관의 의식 재고	82
3. 사회일탈 예방책	84
가. 검증시스템 강화	84
나. 범죄피해 매뉴얼 작성 배포	86
다.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원	86
라. 지방·민간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86
마. 탈북청소년 쉼터 제공	87
바. 치안환경 적응 프로그램 지원	87
사. 전직 신변보호경찰관 활용	88
4. 신변보호활동의 과학화	88
가. 탈북청소년 전용 홈페이지 구축	88
나. 신변보호의 매뉴얼화	89
5. 신변위해 요인 차단	89
6. 무국적 아동의 보호	90
VI. 결론	93
【참고 문헌】	96
【부 록】	106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06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1
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147
5. 민간단체 현황	159

<표 차례>

<표 2-1>탈북자의 분류	14
<표 2-2>탈북자 관련 용어	15
<표 2-3> 탈북자 거주지 보호제도	20
<표 2-4> 탈북자 탈출 및 국내입국 경로	26
<표 2-5> 탈북자 탈출 및 국내입국 경로	27
<표 3-1> 탈북자 전체 입국 현황	31
<표 3-2> 1990년대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	33
<표 3-3> 2000~2008년 각 기관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	34
<표 3-4> 탈북 청소년 입국 추이	37
<표 3-5> 무연고 탈북 청소년 수	38
<표 3-6> 여성 탈북자 입국 현황	39
<표 3-7> 연령별 유형(~'10.2 입국자기준)	40
<표 3-8> 가족 단위 입국 현황	40
<표 3-9> 탈북자 10명 이상 집단입국 일지	41
<표 3-10> 재북당시 거주지 분포	41
<표 3-11>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48
<표 3-12> 연도별 재학 현황	48
<표 3-13> 연도별 중도탈락률	49
<표 3-14> 중도 탈락사유별 현황	50

<표 3-15> 탈북자 범죄현황(1998-2007.1.31)	56
<표 3-16> 탈북자 범죄현황(1998-2004.6)	56
<표 3-17> 보험사기 의심 탈북자 보험수령 금액	57
<표 3-18> 탈북청소년 범죄발생 현황	59
<표 4-1> 탈북자보호 및 정착지원법 연혁	64
<표 4-2> 탈북자와 담당경찰관 연령에 따른 인간관계 평점 분포	72

<그림 차례>

<그림 2-1> 탈북자 주요 탈출 경로	28
<그림 3-1> 학비 지원절차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44
<그림 3-2> 학력확인 절차	45
<그림 3-3> 남북한 학제 비교	46
<그림 3-4>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47
<그림 3-5> 탈북 브로커	55
<그림 3-6> 국내 정착 탈북자 가구 부채(단위: %)	55
<그림 4-1> 신변보호 지정절차	66
<그림 4-2> 보안경찰 1명당 탈북자 관리인원	77
<그림 4-3> 보안수사 인력과 보안사범 검거 추이	78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청소년 보호방안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가. 연구 목적

북한주민들의 탈북사태는 북한 내부 사정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적 문제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도강이나 휴전선 등을 통해 소수자들이 남한으로 귀순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생존권 차원에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출하기 시작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식량이나 생필품을 구입한 후 북한으로 자진 귀환하였으나, 일부는 제3국을 통해 국내입국이나 서방 국가로의 망명을 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급증과¹⁾ 함께 탈북 동기나 유형, 형태 등에서 그 이전 시기와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 특징 중 하나가 가족단위의 탈북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단위 탈북자 대다수는 북한지역을 완전히 탈출하여 국내로 입국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 국내에 입국자한 자라도 정착 후에는 탈북브로커 등에게 정착금

* 김윤영: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문학박사: 북한문학전공)

1) 1990년대 중반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최대 10-40만명의 탈북자가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6, 237면).

을 주고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가족을 국내에 입국시키고 있다. 가족단위의 입국이 급증하면서 인적 구성의 변화 즉, 연령층의 다양화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과거의 경우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20~30대의 남성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여성들이 대다수(70% 이상)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과 노인들의 비중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 1월 현재 초·중등학교 연령(10-19세)에 해당하는 탈북청소년만 해도 2,144명으로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입국 탈북청소년들은 부모와 동반하여 오거나 부모 없이 유랑하다 홀로 입국하는 경우이다. 이들 중 10대 중반의 청소년들은 북한의 경제난이 가장 심각했던 1990년 중반에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극심한 식량난에 의해 영양실조에 시달렸던 세대이다. 또한 이들은 학령기 시절 경제난과 체제불안으로 인한 교육 체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아 기초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외에도 식량부족으로 가족들이 아사하거나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부모들이 가출하여 꽃제비²⁾로 전락하기도 했다.

탈북청소년들은 열악한 환경을 탈출하여 중국과 제3국을 길게는 수년간 유랑하다 국내로 입국하지만 남북한 문화의 이질화에 따른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즉, 국내에 입국한 이후에도 가족이 해체되거나 상실한 경우, 가정의 경제적 빈곤, 부모의 낮은 학력,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불안, 남한문화 적응의 어려움과 정체감 상실 등으로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남한사회 정착 후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만, 경쟁적인 학교생활과 언어소통의 부족으로 급우들의 따돌림에 의한 좌절로 중도 탈락하기도 한다. 이들의 사회와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당사자의 문제를 넘어서 그들 가족들의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탈북청소년들의 사회부적응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김정일 이후의 북한체제

2) 북한은 일정한 거주지 없이 유랑걸식 하는 아동들을 ‘꽃제비’라 지칭하고 있다. 어원과 관련해 2001년 3월에 발표된 북한의 장편소설 <열병광장>에서 ‘넙마 같은 옷을 입고 시장 바닥 헤매는 집 없는 아이들을 꽃제비’로 부르고 있다.

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남북통일시대가 구호가 아닌 현실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통일세대라 할 수 있는 탈북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정착지원 문제 즉, 이들의 보호문제는 통일 이후 함께 해야 할 수백만 명의 북한청소년들을 이끌어 가기 위한 과제이자, 진정한 남북사회 통합의 성패를 가름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탈북청소년의 보호대책과 관련한 연구들은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동안 탈북청소년과 관련한 연구들은 학교 부적응 문제를 중심으로 대안학교 설립 문제와 더불어 그들이 어떻게 교육환경에 적응해야할 것인가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으나, 그들의 보호지원 문제와 관련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탈북자 체류 관련국과의 외교적 문제와 탈북자 실태조사자들의 신변안전 문제 그리고 탈북자들이 체포되어 강제 송환될 위험성으로 인해 은신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통계자료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국내외 정착문제에 주된 관심을 가져왔기 때문이기도 하다.³⁾ 따라서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여 통일세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명제로부터 출발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탈북청소년들을 어떻게 보호·지원할 것인가 따라, 이들이 남한사회 적응에 성공할 경우 건전한 사회구성으로 성장하여 통일시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는 반면, 적응에 실패할 경우에는 치안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지금까지 조사된 국내 및 국외체류 탈북청소년 실태와 관련된 가능한 모든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한 후, 탈북청소년들의 국외체류과정과 국내입국 과정, 국내입국 후 정착과정 및 교육과정에서 야기되고 있는 부적응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그에 따른 신변보호경찰관(보안경찰)의

3) 김윤영,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2009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9, 3면.

신변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의 사회 정착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 만 아니라 남북통일의 자산인 탈북 청소년이 건전한 통일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탈북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지원의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남북통합 과정에서 예상되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의식과 문화의 갈등문제, 치안환경의 과도기적 현상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선행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⁴⁾

나. 선행연구 검토⁵⁾

탈북자 관련 연구는 1990중반을 전후하여 대별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이전의 연구는 국가안보 차원에서⁶⁾ 폐쇄된 북한체제의 정보나 첩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면, 탈북자들이 급증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는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적응해야할 주제라는 관점에서 우리사회에 잘 적응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필요한 지원제도와 대책을 제안하는데 있었다.⁷⁾ 이러한 연구 성과는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⁸⁾ 최근에는 다양한 전공 연구자들의 참여는 물론 급증하는 탈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경제사회적 이슈 등을 반영하여 탈북자의 심리적 적응문제, 청소년 학교적응 문제, 각종 교육 훈련 등에 관한 수많은 연구 결과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⁹⁾ 특히, 최근 가족단위의 입국이 증가하면서 가족, 여성, 청소년 등이

4)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2010년 상반기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10.6, 3면.
 5) 김윤영,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2008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8, 3-7면 재정리
 6) 이 시기의 연구는 국토통일원이나 정보기관이 주도하였는데, 대표적인 연구를 보면 국토통일원(1978)의 북한이질화실태조사, 민병천(1980)의 월남귀순자의 자유사회적응과정 실태조사, 국토통일원(1989)의 귀순자의 증언을 통해 본 북한체제변화 실태연구, 국가안전기획부(1990)의 북한주민의식조사연구: 월남귀순자 진술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7) 이러한 연구경향은 복지학, 사회학, 교육학, 정치학, 심리학, 종교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8) 유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5, 8-9면

새로운 연구대상으로 부상되고 있다.

그러나 탈북청소년들은 탈북자 전체에 비해 소수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 그들의 탈북과정이나 국내정착과정에서 적응문제와 관련한 보호지원과 관련한 연구는 아직도 미진하다. 즉, 탈북청소년에 대한 기존 연구는 대부분 개괄적 수준에서 교육제도 지원을 중심으로 한 행정지원체계에 대한 정책분석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탈북청소년들의 보호방안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탈북청소년들의 체류실태를 비롯한 적응실태 등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기존연구를 검토해 보면 탈북청소년들이 사회 및 학교 적응과정이나 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탈북청소년들의 국내정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응문제와 관련한 연구이다. 탈북청소년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안성시 ‘하나원’에 위치한 ‘하나들학교’¹⁰⁾에서 소정의 사회적응 기초 교육을 받은 후 거주지에 편입하여 정착하게 되는 동시에 사회인의 한 구성이 된다. 이들이 하나원에서의 사회적응 기초 교육을 받았다고 하나 남북한의 이질적인 문화와 경제체제 등에 따른 정체성의 혼란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장창호의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¹¹⁾ 길은배·문성호의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¹²⁾ 황진수·전신욱의 “북한이탈청소년

9)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사회정착 문제와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김윤영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2007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7, 2-7면과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2009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9, 3-9면을 참조할 것.

10) ‘하나들학교’는 1999년 19살 미만 탈북 청소년들이 우리 학교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설치했지만 정부가 2006년 4월 한겨레 중고등학교와 삼죽초등학교에 탈북학생의 교육을 위탁하면서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후, 하나원 본원의 제1교육관을 전면 개보수하여 2009년 9월 30일 개교하였다.

11) 장창호,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12) 길은배·문성호,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 연구, 제 10권4호, 한국청소년학회, 2003, 163-186면.

의 남한사회 적응지원방안”,¹³⁾ 금명자·권혜수·이희우의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¹⁴⁾ 최명선·최태산·강지희의 “탈북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 전략 모색”¹⁵⁾ 등이 있다

장창호는 탈북청소년 6명(국내입국 3년 이내의 13세-24세)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한 결과, 탈북청소년들은 ‘북한과 중국 등에서의 경험’, ‘입국 후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 ‘거주지에서의 초기 상황과 적응’, ‘초기 대응에 따른 인과적 상황’ 등 5단계의 적응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보았다. 이들이 겪는 적응문제는 외로움과 소외감, 자신감 저하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과 학교, 가족, 대인관계, 언어 등에서 사회문화적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길은배와 문성호는 탈북청소년들(20명을 면접 조사한 결과)의 사회 부적응 원인으로 남북한 교육제도 차이로 인한 학업부적응, 놀이문화의 부적응,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몰이해로 인한 경제활동의 수동성과 정착금 관리 실패, 한국사회의 편견과 가치관 및 언어적 이질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 사회부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내 갈등 증폭 등을 지적하고 있다. 황진수와 전신옥은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적응 과정을 심리적 불안정의 상태에서부터 안정적 정착까지를 단계화하여 설명하면서, 그들이 국내에 입국 후 정치·사상적, 경제적, 심리적 등 모든 부분에 있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사회 적응과정에서 부분적응과 부적응유형이 많다고 지적했다.¹⁶⁾ 즉, 1단계: 남한사회 도착 후 이질문화 충격단계, 2단계: 하나원에서의 직업훈련을 통한 기초 취업 준비단계, 3단계: 거주지 배정 후 직장취업에 의한 생활정착단계, 4단계: 사회정착과정에

13) 황진수·전신옥,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지원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223-249면.

14) 금명자·권혜수·이희우,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6권2호, 한국심리학회, 2004, 295-308면.

15) 최명선·최태산·강지희, “탈북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 전략 모색”,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9권 3호, 한국놀이치료학회, 2006, 23-34면.

16) 탈북청소년들은 사회적응 과정에서 불안감과 걱정, 소외감(심리적 측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학교생활에서 갈등,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새로운 어휘의 습득 문제(사회문화적 측면), 기술과 지식습득을 위한 진로방향 설정의 문제, 직업선택과 적응문제, 상대적 빈곤감(경제적 측면) 등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심리적 갈등, 경제문제 갈등에 대한 자아성립의 남한사회 순응단계, 5단계: 남한사회에서 건전한 시민으로 정착하는 문화사회적 통합단계로 구분하고 있다.¹⁷⁾

금명자·권혜수·이희우는 탈북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유형과 문화적응 정체감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동화’ 유형(하나원 생활을 포함함 한 보호기간 4개월), ‘분리’ 유형(4개월-1년), ‘주변화’ 유형(1-2년), ‘통합’ 유형(2년 이후)로 분류하고 있다.¹⁸⁾ 탈북청소년들은 국내 정착 후 1, 2년을 경과하면서 적응과정에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상담 개입의 필요성은 물론 급우들이 북한 문화와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을 제언하고 있다.¹⁹⁾ 최명선·최태산·강지희는 탈북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으로 불안증상, 외상후 스트레스(PTSD), 정체감의 혼란, 죄책감과 공포, 또래 관계에 대한 어려움, 가치관의 차이, 감정표현에 대한 어려움, 가족해체와 부모역할의 부재, 극단적인 공격성향, 가정해체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한 방임과 유기로 인한 문제점, 북한의 가정생활 축소로 인한 부모와의 애착관계형성의 결여와 모성에 결핍, 남한생활 적응속도 차이로 인한 부모자녀관계의 갈등 등을 제시하면서, 심리적 상담전략을 지역단체에서의 심리적 치료적 접근, 학교상담사 개입을 통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멘티 프로그램, 가족치료, 부모상담 및 부모 교육,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방법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²⁰⁾

결국, 탈북청소년이 겪는 국내정착과정에서 남북한 교육제도 및 놀이문화의 차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의 몰이해로 인한 경제활동의 수동성과 정착금 관리 실패, 한국사회의 편견과 가치관 및 언어적 이질성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 형성의 어려움, 사회부적응 스트레스로 인한 가족 내 갈등 증폭, 심리적 스트레스 등은 사회부적응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17) 황진수·전신욱,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지원방안”, 2004, 1-26면.

18) 금명자·권혜수·이희우, 앞의 글, 295면 재정리.

19) 위의 글, 306면: 양영은, “학업중단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2009, 25면.

20) 최명선·최태산·강지희, 앞의 글, 23면.

둘째,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학업적응 문제와 관련한 연구이다. 탈북청소년들은 ‘하나둘학교’에서 일정기간 학교생활 적응 교육을 실시한 후, 거주지 주변의 학교에 편입학하게 되나 학교 및 학업성취 부적응 현상을 보이는 한편, 우리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고자 학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대표적인 연구로는 박선경의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²²⁾ 장문강의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 교육 관점을 중심으로-”,²³⁾ 유가효·방은령·한유진의 “한국사회에서 탈북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응 -초기 사회적응 교육을 중심으로-”,²⁴⁾ 이항규의 “새터민 청소년 학교 적응실태와 과제”²⁵⁾ 금명자·권혜수·이희우의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²⁶⁾ 이항규의 “새터민 청소년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²⁷⁾ 한만길의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의 과제”,²⁸⁾ 이수정의 “북한이탈청소년 현황과 대책: 교육문제를 중심으로”²⁹⁾ 김화순의 “탈북대학생의 학업실태와 진로”³⁰⁾ 등이 있다.

박선경은 탈북청소년(국내입국 1년 미만의 초등학교생 2명과 중·고등학교생 6명)을 심층 면접한 결과 그들이 직면한 문제로 교사와 친구들에 대한 신뢰부족, 학업에 대한 집중성 부족, 소극적이고 불안한 감정, 급우들의 놀림과 괴롭힘 등을 제기하는 한편, 장문강은 탈북청소년 6명(13-16세)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경험

21) 양영은, “학업중단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26면.

22) 박선경,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석사학위, 1999.

23) 장문강,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 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06.

24) 유가효·방은령·한유진, “한국사회에서 탈북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응-초기사회적응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5호, 2004, 185-196면.

25) 이항규, “새터민 청소년 학교 적응실태와 과제”, 교육비평, 가을-겨울 제1호, 2006, 93-207면.

26) 금명자·권혜수·이희우,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6권2호, 2004.

27) 이항규, “새터민 청소년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가톨릭대학 인간연구소, 2007.

28) 한만길,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의 과제”,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포럼, 2009.5.

29) 이수정, “북한이탈청소년 현황과 대책: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의 대안과 전략, 통일학연구원 불학술회의, 2009.

30) 김화순, “탈북대학생의 학업실태와 진로”, 제1회 북한이탈주민대학생 세미나, 북한이탈주민 후원회, 2010.

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이들은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보다는 교육 및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 혼란을 경험했으며, 급우들의 북한실상에 대한 확인 질문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효·방은령·한유진 연구는 탈북아동·청소년이 연령에 상관없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학업성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며 학업에 매우 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금명자·권혜수·이희우는 공교육을 받는 탈북청소년들이 개별적 교육(대안학교나 검정고시 등)을 받는 탈북청소년보다 ‘주변화’ 유형을 많이 보이는데, 이는 남한청소년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적응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향규는 탈북청소년들의 취학 포기 이유와 학업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학교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친구를 사귀지 못하기 때문이며, 후자의 경우는 남한입국 전에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교육제도가 매우 상이한 점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만길은 탈북학생의 교육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초기적응 교육 대책, 정착지 적응 교육 대책, 대안교육기관 및 민간단체 교육활동 지원 대책 등을 제안하면서,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책개발과 자료개발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수정은 탈북청소년들의 당면문제로 낮은 학업성취도, 경제적 어려움, 가족문제, 건강과 심리적 문제, 정체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관련당국의 문제점 및 지원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김화순은 탈북대학생의 학업상 어려움으로 남북한 교육제도 차이, 기초학습(영어, 컴퓨터 등) 능력의 부족,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졸업 후 취업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탈북대학생의 역량강화 지원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대체적으로 탈북청소년들과의 심층면접을 통해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원인을 남북한의 이질적인 교육제도, 낮은 학업성취도,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편견과 정체성의 문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문제점을 추출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결국, 탈북청소년들은 학력을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학업성취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 과정에서 보았듯이 기존의 연구들은 탈북청소년들은 청소년의 일반적인 문제 외에도 새로운 사회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인 적응 문제를 겪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심층면접, 관찰, 설문지, 문헌 연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동원하여 개인적·사회적(가정, 학교, 대인관계 등)측면의 부적응의 원인을 다양한 영역에서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정부를 비롯한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에 의한 다양한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함을 제언하고 있다. 즉, 선행연구의 경향은 탈북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일천한 시기에 그들이 남한사회와 학교에 적응해야 할 주체라는 관점에서 그들이 남한사회와 학교생활 잘 적응하는가 여부를 분석하고, 그들의 성공적인 적응에 필요한 지원제도와 대책을 제안하는데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탈북청소년들의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도 했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해야 할 신변보호경찰관들의 역할과 관련한 연구들은 매우 미진하다. 물론, 필자가 작성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2007),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2010) 등은 탈북자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신변보호경찰관의 지원체계를 다룬 연구서이지만, 탈북청소년들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탈북자 전체 문제와 관련한 연구서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탈북자 전체에 비해 소수자의 입장에 머물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자료의 한계와 연구진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신변보호경찰관들의 보호활동과 관련한 연구는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청소년 신변보호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었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가. 연구 방법

탈북청소년들의 사회 및 학교적응 문제와 관련한 연구경향과 접근방법이 다양화되어 왔다. 기존 연구의 접근방법은 문헌조사, 면접조사, 설문조사, 관찰 및 현지조사, 법 및 제도적 분석, 심리적 분석, 수기분석, 사회·문화적응 이론, 사회복지이론, 인간생태이론, 정신분석적 접근방법, 통계적 접근, 종교적 접근 등이 있다.³¹⁾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방법과 함께 사례연구와 통계론적 접근 방법 그리고 면접 자료 등을 병행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 자료로는 국내외 서적과 학술지 논문, 간행물, 유관기관 정책연구자료, 신문기사, 인터넷 검색자료, 시민단체 자료 등을 참고할 것이고, 통계자료는 통일부에서 제시한 자료와 함께 국내외 NGO 단체의 국외체류 탈북자 실태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증조사(Survey Research Method)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시간의 제약과 개인조사의 신뢰도를 고려해서 공신력이 높은 연구조사기관의 연구결과를 2차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이 체류하고 있는 해당국을 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해야 하나 예산과 시간 등의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은 아쉬움을 남는다. 이러한 아쉬운 점을 나름대로 극복하고자 탈북자 체류국가에서 실태를 조사를 직접 조사한 바 있는 개별 연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보강하고자 한다.³²⁾

나. 연구 범위

본 연구의 연구범위는 북한주민들의 탈출이 본격화된 1990년 중반부터 현재

31)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7면

32) 위의 보고서, 11면.

까지의 탈북자들 중 9세에서 19세까지의 탈북청소년들을 기본 대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25세까지 연장하여 언급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탈북청소년들의 연령별 통계자료나 사회일탈 실태와 관련된 정책 자료가 보안상의 이유로 대부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탈북청소년들의 실태 분석을 미시적으로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음을 밝혀 둔다.

이 논문의 각장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탈북자 및 보호담당관의 개념, 탈북 요인과 유형, 탈북경로 등을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일반 탈북자 및 탈북청소년들의 국내입국과 탈북청소년 교육지원 현황을 살펴본 후, 탈북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실태와 의식성향 그리고 사회일탈 현황을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신변보호경찰관의 지원체계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 볼 것이다. 제3, 4장은 언론매체들이 보도한 탈북청소년의 실태, 선행연구 등에서 제시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탈북청소년들과의 개별 인터뷰 자료를 보충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제2장~제4장에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청소년 보호 개선 방안으로 신변보호경찰관의 역량 강화 방안,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 배치와 의식 재고 방안, 사회일탈 예방책, 신변보호활동의 과학화, 신변위해 요인 차단과 무국적 아동의 보호 방안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끝으로 제6장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총평한 후 정책적 제언을 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 정의

가. 탈북자 및 탈북청소년

1) 탈북자³³⁾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용어는 통일되지 않는 가운데 ‘귀순 용사’, ‘귀순자’,³⁴⁾ ‘월남자’, ‘귀순북한동포’, ‘난민’, ‘망명자’, ‘탈북자’, ‘탈북주민’, ‘탈북민’, ‘남한이주북한동포’, ‘북한 출신 남한이주자’, ‘자유북한인’,³⁵⁾ ‘북한탈출주민’ 등으로 다양하게 호칭되어왔으나,³⁶⁾ 1990년 중반 이후 북한 주민들의 탈출이 급증하자 ‘탈북자’를 통상적인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1997년 1월에 제정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³⁷⁾ 법률적으로 ‘북한이탈

33) 위의 보고서, 12-13면.

34) ‘귀순’은 “반항하거나 반역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 돌아서서 따라오거나 복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는 것으로서, 남북 간의 체제 경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35) ‘자유북한인’의 경우에는 일부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대변하기 위한 모임을 창립하면서 ‘자유를 찾아 온 북한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왔다.

36) 주로 한국전쟁 이전에 남한으로 이주한 사람들은 월남인, 월남 가족으로, 한국전쟁 중인 1951년 1월 대거 월남한 사람들을 통칭 ‘1·4후퇴자’로 불렀다. 그 이후 이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월남 귀순자’는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이 제정되면서 사용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1993년 6월 제정된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에 따라 ‘귀순북한동포’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37) 통일부는 2005년 1월 9일부터 ‘탈북자’를 ‘새터민’으로 호칭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조선을 미화하는 이름’이라며 이를 비난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진 순수한 우리말로써, ‘북한이탈주

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의미한다.³⁸⁾ 탈북자는 공식적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모든 주민을 의미하지만, 행정적 의미에서는 이들 중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동법 2장)받는 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표 2-1> 탈북자의 분류

용어	내용
국내정착 탈북자	· 북한주민이 북한 지역을 탈출한 후 곧바로 국내로 입국하거나, 중국이나 태국 등 제3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한 후 한국 국적을 취하여 정착하고 있는 자
국외체류 탈북자	· 북한주민이 북한 지역을 탈출한 후 중국이나 태국 등 동남지역에 정착하거나 한국행 및 서방국가로의 망명을 목적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
탈북자	· 북한주민이 북한 지역을 탈출한 후 국외에 불법체류 중이거나 국내로 입국한 자들을 통칭하는 의미

그러나 정부당국은 '북한이탈주민'이 지나치게 정치적 이미지를 띠고 있다고 보고 2005년부터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여기서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언론은 "어감이 생경하다", "말만 바꾼다고 탈북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바뀌나" 등의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³⁹⁾ 국내입국 탈북자들 역시 '북한이탈주민'이나 '새터민'이라는 호칭에 대해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르기 쉽지 않지 않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⁴⁰⁾

민'이라는 호칭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많아, 여론조사를 통해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을 '새터민'라는 용어로 바꿔 부르기로 한 것이다.

38) 2007년 7월 23일 일부 개정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북한이탈주민을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9) 한겨레신문, 2005.1.12.

40) 통일부는 햇볕정책이라는 용어 수정과 더불어 지난 정부가 규정한 새터민의 용어를 재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2008.9.20).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탈북자(North Korean defectors/refugees)라는 용어는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과 동남 등 국외체류자를 비롯한 서방국가로 망명한 자와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내에 정착한 자 모두를 아우르고 비교적 많이 통용되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⁴¹⁾

〈표 2-2〉 탈북자 관련 용어

용어	해설
탈북자	언론 기관 등에서 일반적·편의적으로 통상 사용하는 용어
새터민	2005년부터 정부 내부 문서, 보도자료 등에는 새터민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용어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귀순자	「월남귀순용사특별보상법」(1979년, 원호처) 및 「귀순북한동포보호법」(1993년, 보건복지부)에 규정되어 있던 용어 ※ 귀순자는 주로 국내에 입국한 자에 대한 호칭이고, 탈북자는 국내 입국 여부를 불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자유북한인 북한이주민	탈북자들이 임의로 사용하는 용어

2) 탈북청소년

최근 우리사회의 청소년⁴²⁾ 문제를 설명하는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탈북 청소년 문제이다.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에 대한 용어가 통일되지 않는 가운데 시대환경과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듯이 탈북청소년에 대한 호칭 또한 북한이탈청소년, 새터민청소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탈북청소년에 대한

41) 탈북자라는 것은 북한 지역을 탈출해 국내로 입국했거나 국외에 체류 중인 자를 통칭한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42) 청소년에 대한 대체적인 견해는 아동기를 마치고 성인기에 이르지 못한 ‘미성숙한 존재’의 연령 또는 그 집단으로 보고 있다. 청소년을 지칭하는 영어의 ‘adolescence’는 라틴어로 ‘어른으로 성장하다’의 뜻을 가진 ‘아직 미성숙한’, ‘불안정한’의 의미이다. 신체적·생리적인 관점에서도 청소년기는 제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에 시작하여 신체적 성숙이 끝나는 성인기의 전(前)과정을 의미한다.

개념은 시대나 학문 영역과 학자, 국가 또는 국가의 통치이념과 사회체제, 관련 법규뿐만 아니라 심리학⁴³⁾·생물학⁴⁴⁾·사회학적⁴⁵⁾ 관점에 따라 규정되고 있고,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 상황을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탈북청소년을 한마디로 개념 규정하기 쉽지 않다. 즉, 북한을 탈출한 북한주민을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법률적 용어가 있으나 탈북청소년을 지칭하는 별도의 용어는 없다. 따라서 탈북청소년이란 법률 제2조 1항에 명시된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속하는 ‘청소년기 계층’의 탈북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⁴⁶⁾

탈북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또한 13세에 21세(이기영, 2001),⁴⁷⁾ 9세에서 24세(장창호, 2000, 금명자 외, 2004)까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길은배·문성호(2003)는 탈북청소년이 가지는 특수성⁴⁸⁾을 고려하여 연령규정을 유보하고 있다.⁴⁹⁾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5조 1항은 교육지원 대상을 ‘국내의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 미만’의 자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만 20세 이후의 탈북청소년들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은 만

43) 심리학에서는 청소년을 14~15세경부터 22~23세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심리학 자로는 버기스(Bergius), 로스(Roth), 오즈벨(D.P.Ausubel) 등이 있다.

44) 생물학에서는 청소년기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제2의 증세인 신체적·생리적 성숙의 특징이 나타나는 시기로 성적 성숙은 여자의 경우 12~13세에 시작되고 남자는 14~15세에 시작되며, 이 육체적 성장은 일반적으로 여자의 경우 18~20세에, 남자의 경우에는 20~22세에 끝난다고 본다.

45) 독일 사회학자 쉘스키(H. Schelsky)는 청소년기를 회의세대로 보고 “청소년은 인간의 행동 발달단계로서 아동의 역할행동은 더 이상 수행하지 않으나 성인의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에 있는 자이다. 이러한 행동의 미성숙으로 사회체제들은 청소년들에게 교육·정치·경제 등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정의하면서, 청소년기의 연령을 14~25세로 규정하고 있다.

46) 박윤숙,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6, 8면 참조.

47) 이기영,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생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통일부, 2000.

48) 법적 연령기준 뿐만 아니라 학업, 신체, 정서, 문화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49) 박윤숙,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해결방안”, 교정담론, 제3권 2호, 아시아 교정포럼, 2009.12, 10면 재인용.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소년법」은 만 20세 미만을 소년으로, 「민법」은 만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에서는 9세 이상 24세 미만의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등 통일된 명칭이나 연령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탈북청소년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보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되는 탈북청소년이란 기본적으로 북한주민들 중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에 속하는 청소년기 계층인 9세에서 19세까지의 탈북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연령별 분류는 통일부가 10세 단위로 분류한 통계에 따른 것인데, 구체적인 연령별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한계가 있다.⁵⁰⁾ 이러한 자료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연령별 통계를 제공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를 병행하여 사용할 것이다. 이외에 필요할 경우 탈북자 관련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을 비롯하여 선행연구자들이(길은배·문성호, 2003) 제시한 탈북청소년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탈북자 중 25세의 청소년까지 연령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남한에 정착한 탈북청소년들이 정규학교 급우들보다 2세부터 많게는 5세 이상의 연령이 차이가 있고, 이들이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여 보다 나은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연령에 상관없이 학업성취에 대한 열망이 높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연령 범위를 정한 것이다.

나. 보호담당관

하나원에서 소정의 사회정착교육을 받은 탈북자가 거주지에 편입하게 되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변보호경찰관’, ‘거주지 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등 보호담당관제도를 운영하여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1) 신변보호경찰관⁵¹⁾

50) 통일부 통계는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등 10세 단위로 제공하고 있어 탈북청소년의 구체적인 분석에 대한 통계자료의 한계가 있다.

51) 최근의 탈북자관련 연구서들조차 경찰청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이 2008년 6월 9일 전부 개정된 사실을 인지 못하고 신변보호경찰관을 신변보호담당관으로 오기하

탈북자가 하나원에서 소정의 사회정착교육을 받은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편입하게 되면 신변보호경찰관서에서 신변보호경찰관을 지정하여 외부의 신변위해요소에 대한 보호업무를 담당한다. 신변보호기간은 보호대상자의 신변에 위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실시한다. 주요 임무로는 탈북자의 신변위해요소 제거 및 위해로부터 신변보호,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파악,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009년 12월말 현재 탈북자 거주지 관할 경찰서는 신변보호경찰관 770여명을 지정하여 탈북자들의 신변보호 거주지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⁵²⁾ 관할 경찰서마다 자체적으로 ‘탈북자 안보교육’, ‘탈북자 건강지킴이’(지역 내 의료 기관과 탈북자 진료협약 체결), 자매결연, 자원봉사자 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의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이하 신변보호지침)⁵³⁾ 제3조는 ‘신변보호경찰관서장’, ‘신변보호담당관’, ‘신변보호경찰관’에 대한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신변보호경찰관서장’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라 함) 및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함)을 말한다(동 지침 제3조 1항).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이라 함은 신변보호경찰관서에서 보호대상자 신변보호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주무과장을 말한다(동 지침 제3조 2항).

셋째, ‘신변보호경찰관’이라 함은 신변보호경찰관서장으로부터 보호대상자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정 받은 경찰관을 말한다(동 지침 제3조 3항).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신변보호담당관이란 거주지에 편입한 탈북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신변보호경찰관서에서 지정한 보안경찰을 의미한다.

고 있다.

52) 통일부,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2010, 85면.

53)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지침」은 1997년 8월 7일 제정한 후 2005년 1월 1일 일부 개정하였으며, 2008년 6월 9일 전부 개정하였다.

2) 거주지보호담당관

하나원 교육 수료 후 탈북자들이 거주지 편입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하며, 이들은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각종 사후지원을 한다. 주요 임무로는 거주지 보호업무의 총괄·조정, 주거 알선,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과 협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긴급의료 지원, 생활실태조사 및 거주지 보호대장 관리(3S-Net), 탈북자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탈북자 지원 관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종교,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들과 결연 및 후원추진, 무연고 탈북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 거주지담당관의 임무와 역할은 광범위하고 중요하지만 업무가 제한되어 있다. 이외에도 이혼소송업무,⁵⁴⁾ 개인 신상의 변동 등 관리,⁵⁵⁾ 민·관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⁵⁶⁾ 업무 등을 담당한다. 2009년 12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211개 지자체에서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탈북자의 거주지 정착지원과 각종 행정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3) 취업보호담당관

노동부 산하 전국 55개소 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직업상담사로 구성된 취업보호담당관을 지정하여 탈북자들의 경제적 자립기반 확보수단으로 진로지도, 직업훈련, 취업알선 및 상담 등을 수행한다. 주요 업무는 직업훈련 신청서 접수 및

54) 북한에 배우자를 두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이혼청구의 법적 근거를 2007년 2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2(이혼의 특례)항에 신설했다('07.2.26부터 발효). 북한에서는 1956년 합의 이혼절차를 폐지하고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만 이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따라서 이혼을 하기까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혼이 허용되는 경우는 건강상의 이유, 성적관계불가, 애기를 못 낳는 경우, 그 밖에 특별히 법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만 된다. 꼭 이혼 사유가 아니면 화해와 재결합을 유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다(통일부,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편람, 83면).

55) 거주지보호담당관은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절차에 의한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개인 신상 변동시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호적등본 등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즉시 공문으로 통일부에 통보한다.

56) 보호담당관(거주지·취업·신변)간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체계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하고 있다.

내담자 면담, 훈련상황 확인 및 기록유지, 취업신청서 및 고용지원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취업장려금 신청서 접수 및 통일부(하나원)에 송부,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 고용실태조사 및 취업보호대장 관리, 지원 지역협의회 참여, 구인·구직자 발굴 및 취업 연계, 지역적응센터, 전문상담사, 정착도우미 등과 협력관계 유지 등을 담당한다.

4) 기타 탈북자 거주지보호제도

정부는 거주지에 편입된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과 보호를 위해 지역협의회, 정착도우미, 정주도우미, 지역적응 센터 등을 두고 있다. 이를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2-3> 탈북자 거주지 보호제도

제도	주요 내용
지역협의회	- 지역내 보호담당관, 정착도우미사업기관, 지역사회복지관, 민간단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 북한이탈주민 정착에 필요한 생활실태 파악 등 각종 애로·상담 창구 역할 수행 (전국적 북한이탈주민 밀집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24개 운영)
정착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년부터 시행, '9.2월 2,300여명이 전국에서 활동 (초기 6개월 집중지원) - 정착도우미는 자원봉사 유경험자 중에서 선정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를 담당하는 매개체 역할 - 북한이탈주민 1세대 당 정착도우미 2명이 1년간 전담하면서, 북한이탈주민의 '가까운 이웃'으로서의 역할 담당 ○ 초기 거주지 생활의 정보나 도움을 직접 제공해주는 주거 밀착형 정착지원체계 구축 및 다양한 계층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정주도우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도우미사업은 정착도우미 지원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 중 자원봉사자의 지원을 계속 희망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1년간 연장 봉사 - 도우미 2명이 북한이탈주민 1세대와 결연, 지역정착의 심층 안내 ○ 지역사회(지자체)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을 조직, 체계적 지원체계와 실생활 적응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과 지역정착 지원
지역적응센터 (하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주간 「지역적응교육」 실시 후 1년간 체계적인 사후지원 서비스 제공 ○ 거주지에서 지자체·고용지원센터·정착도우미·지역복지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안내 및 직업훈련·취업·진학 등을 종합 지원 ○ 현재, 시범 6개 운영 중이며, 2010년에 전국 30개소 확대 예정

* 자료: 통일부 발표자료(2009, 북한이탈주민후원회)를 요약 정리하였음.

2. 탈북 요인 및 유형

가. 탈북 원인

1) 생존권

북한 주민들의 국경탈출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만성적인 경제난과 1990년대 중반 잇달아 발생한 수해와 가뭄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아사자가 속출하고 중앙통치와 배급체제가 무너지면서 국가배급제에 익숙해 있던 주민들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식량, 생필품, 의료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기강의 해이와 외부정보의 유입과 습득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심화, 북한 사회의 기강해이, 자본주의 풍조의 확산 등에 따라 생존권 차원에서 자녀와 함께 보다 나은 삶을 찾아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식량난으로 부모가 아사하여 꽃제비로 전락한 아동과 청소년은 생존을 위해 홀로 탈북을 하고 있다.

2) 교육환경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서방세계의 식량지원, 해외 유학생, 외화벌이 일군을 비롯한 해외 파견자, 조선족 보따리 장사, 해외교포, 국제기구, 민간단체의 종사자들과 접촉을 통해 중국과 남한의 발전상 등의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국가의 주민통제가 약화됨에 따라, 그동안 출신성분으로 인한 진학 및 진로, 직업선택의 한계, 각종 노력동원이나 경제적 착취로 인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열악한 교육환경 등에⁵⁷⁾ 대한 불만을 해결하

57) 북한의 대부분 학교는 오전 수업만 하고 오후에는 사회 과제 수행 명목으로 여러 일을 시키고 있다. 파철, 파유리, 파비닐(폐비닐), 파지(폐지) 등을 모으는 것은 기본이다. 학생 한 명당 일등품의 토끼 가죽 3매, 석탄과 나무 한 달구지, 재생 학습장을 만들기 위해 마른 오사리 50kg, 영예군인 전상자 돕기 성금 300원, 건설장 지원운동 명목으로 100~500원, 군부대 지원운동으로 달래 3kg, 마른 도토리 50kg, 마른 살구씨 3kg 등 명목과 종류도 많고,

고자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찾아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⁵⁸⁾

이와 같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주민 대부분은 일차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지 사회문화를 수용해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면서 새로운 삶에 대한 욕망이 높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최근에는 굶주림, 경제적 곤란, 인권 억압보다는 더 나은 세계를 향한 갈망과 자녀들에게 보다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탈북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계층만이 아니라 중류계층 출신의 탈북자들이 늘어나는 등 전 계층 주민에게서 발생되고 있다.⁵⁹⁾ 이 때문에 2000년 이후 자녀를 비롯한 가족 단위로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북한청소년들의 탈북 원인은 어느 한 특정 요인에 있기 보다는 다양한 대내외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동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의 정치·사회·경제 등 내적 문제와 외적인 요인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얽힌 결과로 파생된 것이다.

나. 탈북 유형

북한 청소년들이 단독으로 탈북을 시도하는 경우도 있으나,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적응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탈북을 시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경우 부모를 따라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1) 부모에 의한 탈북

할당량도 많다. 계절과 절기에 따라 내라는 물품도 다양하고 특이한 게 많아 나이 어린 학생들이 따라가기에 여간 벅찬 것이 아니다.¹⁾ 아이들이 수집을 못 하면 결국 그 몫은 고스란히 부모에게 돌아간다. 학부모들은 학부모대로 바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으로라도 과제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돈 낼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은 과제를 못한 벌을 받거나 친구들 사이에 따돌림 당하기 일쑤여서 학교에 나가지 않으려고 한다. 결국 도중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지키거나 부모 따라 돈벌이에 나서는 아이들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 내야 하는 부담금 때문에 갈수록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사)좋은벗들,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좋은벗들, 2007.11, 44-45면).

58)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8면 참조.

59) 2001년의 경우 국내 거주 탈북자의 도움을 받아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사례는 115건, 116명으로, 2001년 전체 입국자(583명)의 28%를 차지했다.

북한주민들 중 처음부터 서방국가나 한국행에 목적을 두고 자녀나 가족을 데리고 탈북하게 되는데, 청소년 스스로 탈북을 선택하기 보다는 부모를 따라 나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은 북한을 탈출한 후 다른 국가에서의 새로운 삶을 희망하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목돈을 마련한 후 자녀나 가족을 동반해 탈북한 후, 국경을 통과하면 신변안전을 위해 중국 내륙이나 몽골, 태국, 미얀마 등 제3국으로 신속히 이동하여 해당 국가에서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5년 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시민 또는 종교 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국내입국이나 서방국가로 망명하고 있다.⁶⁰⁾

2) 단독 탈북

1990년 중반 이후 극심한 식량난으로 가족이 아사하거나 부모가 사망하는 등 생활기반을 상실한 청소년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개별적인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과 김일성의 사망(1994) 그리고 극심한 경제난(식량난)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사회주의 체제에서 허용될 수 없는 자본주의형 개인주의가 확산되면서,⁶¹⁾ 청소년들은 절도 및 강도, 성범죄, 마약범죄 등의 자본주의형 범죄를 자행한 후 처벌을 피하고자 단독으로 탈북을 시도하고 있다.⁶²⁾ 최근 북한 청소년들로 조직된 ‘제비

60)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13~15면; 이들의 경우 중국 등 제3국의 불법체류 신분을 벗어나 안정적인 정착 생활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에 한국행이나 서방 망명을 선택하고 있다.

61) 북한당국은 자본주의 문화가 확산되자 이를 ‘얼빠진 사고방식’ 또는 ‘썩어빠진 부르주아적 유행’으로 비판하는 한편, 김정일은 ‘군대문화 따라 배우기 운동’과 ‘모기장 교육’을 통해 ‘자유화바람’을 차단하여 주민들의 사상이탈을 방지할 것을 지시했다(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265-266면). 조선로동당 역시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철저히 반대 배격”해야 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학습제강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62)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교정담론, 제3권 1호, 아시아교정포럼, 2009, 1-2면; 권혁의 다음과 같은 증언은 북한 청소년들의 범죄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의 14-15세 청소년들은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아이들이 많다. 그들은 공부는 뒤에 놓고 싸움부터 배우려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가정성분과 뒷 힘이 없으면 세력이 센

떼⁶³⁾가 국경일대를 비롯하여 라신시, 청진시, 함흥시, 남포시 등 큰 도시의 시장이나 주변, 주택지 등을 배회하면서, 여자조직원들이 범죄대상자를 선정하면 흠어져있던 조직원들이 규합하여 절도, 밀수, 강간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살인에 이르기까지 조직적인 강력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제비떼들의 출몰로 주민피해가 심각해지자 ‘비사회주의 구루빠,⁶⁴⁾ 보안서 순찰대, 보위부, 청년동맹 불량청소년 구루빠’ 등을 총 동원하여 제비떼의 실제파악과 단속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인민반 회의 등을 통해 자녀 교양강화 지시 등 청소년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제비떼들은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자, 빈집털이, 밀수, 마약밀매 등으로 범죄방향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청소년범죄를 유발시키는 주된 요인은 출신성분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 차별대우에 따른 사회적 진출의 좌절, 인격형성의 미비, 과도한 노력동원과 사상학습, 경제난에 따른 가정 붕괴, 자본주의 확산 등에 따른 것이다.⁶⁵⁾ 청소년들의 자본주의 모방에 따라 김정일은 2006년 여름 평안북도 신의주 방문시 학생들의 ‘한국 풍 옷차림새’ 등을 본 후 학생들 문화에 대한 제재 내용의 방침⁶⁶⁾을 하달한 바 있다.⁶⁷⁾

집 아이들에게 밀리고 마니 그런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자연히 공부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함흥시 동흥산구역에 있는 반룡산과 성천강 둑, 학교 운동장, 주변 야산에 가면 싸움 기술을 익히느라고 훈련하는 학생들을 볼 수 있었다. 학생들의 패싸움도 자주 일어난다. 전에는 무리 지어 돌이나 몽둥이 같은 흉기로 싸움을 했지만 지금 아이들은 흉기 쥐는 것을 한 수 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손과 발로 기술싸움을 한다. 겨루어 보아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세면 순순히 손을 든다.”(권혁, “24. 함흥2월”, 고난의 행군, 정토출판사, 1999, 253면; 박원홍, “북한주민의 이탈현상과 부조리 실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7면 재인용).

63) 역이나 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10대 떼강도’를 ‘제비떼’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유랑걸식 하는 ‘꽃제비’와 구분되며, 함경북도 라선시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한다. 제비떼는 최초 라진선봉(라선)시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부유층이나 중국인들의 문화와 유행을 따라하려는 욕망에서 조직적인 범죄로 나서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다. 제비떼는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지만, 일단 무리를 지어 행동할 때에는 무서운 강도로 돌변하게 된다고 한다.

64) 비사회주의 구루빠는 동구권 붕괴이후 자유주의 사조 유입 증가에 따른 사회주의 일탈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인민보안성 주관하에 보위부, 검찰 등과 합동으로 조직한 것이다.

65)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9, 36-37면.

66) 동 방침은 “옷차림이 모두 우리나라 학생답지 않다”는 비판과 함께 “퇴폐적인 노래를 부르거나 영화를 보지 말라”, “생일파티를 금지한다”, “거리에서는 절대 교복을 입고 다녀라”는 등의 내용이다. 이후 규찰대·청년동맹들의 감시활동이 강화되었으나, 대부분 학생들은 적발되지 않을 정도로만 방침에 순응하고 있다.

3) 부모의 탈북 유도

한국 사회에 먼저 정착한 성인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자녀들의 탈북을 유도하는 경우이다. 국내로 먼저 입국한 탈북자들은 북한에 두고 온 자녀나 가족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전문 브로커를 비롯한 여러 경로를 통해 송금하는 형식을 통해 연쇄 탈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국내 입국 탈북자 중 가족단위 비율이 증가하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국내에 먼저 입국한 성인탈북자들이 정착금과 기타 소득 등을 활용해 자녀나 가족들의 탈북을 지원하여 상당수 성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일연구원이 1993년 이후 입국한 탈북자 2,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780명중 대수다수(90.1%)가 자녀나 가족들의 국내 입국을 위해 정착금과 기타 수입을 활용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⁶⁸⁾

3. 탈북 경로

가. 북한 탈출 경로⁶⁹⁾

1990년 초반까지만 해도 군인 등이 정치(사상)적 및 개인적 문제로 처벌의 두려움을 피해 매년 10여명 이내의 소수 인원이 휴전선이나 도강으로 직접 남하하는 ‘망명형’ 탈북이 대다수 차지하였으나, 1990년 중반부터는 주민들이 극심한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중·러 국경선을 통해 집단 탈북은 ‘생존(생계)형’ 탈북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근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대부분은 여성과 청소년들로 나타나고 있다.

67)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18면.

68)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용실태연구, 통일연구원, 2003;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5. 37-38면.

69)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35-36면.

1990년대 중반부터 주로 두만강·압록강·백두산 지역의 국경(북·중, 북·러)지역을 통해 중국이나 러시아로 탈북을 시도하였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경로는 두만강→백두산→압록강 순으로 알려졌다. 두만강 북동쪽의 경우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고 겨울철은 결빙으로 비교적 도강하기 쉬운 곳이다. 반면 백두산은 산악지역으로 중국 공안요원의 접근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동포(조선족)가 집단 거주하는 장백조선족자치현에 은신처를 확보할 수 있으나, 최근 중국 당국의 경계가 강화되어 체포될 위험이 많다. 특히 압록강은 강폭이 넓고 수심이 깊을 뿐만 아니라 경비도 삼엄하여⁷⁰⁾ 위험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만강이나 백두산 경로에 비해 비교적 탈북 빈도가 낮은 경로이다.⁷¹⁾

이와 같이 북한 주민들의 국경 탈출 경로가 어느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선택하고 있다. 국경을 넘다가 북·중 당국에 체포될 위험성을 고려하여 가장 안전하고 용이한 지역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탈북자들은 국경경비 상황과 시간 등을 고려하려 가장 적절한 루트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2-4> 탈북자 탈출 및 국내입국 경로

구분	탈북 요인	탈출 경로	탈북 빈도
1990년 이전	정치적, 개인적 문제	휴전선, 해상, 강	휴전선을 통해 가장 많이 탈출
1990년 중반 이후	식량난, 생존권 차원	중러 국경선이 있는 두만강, 백두산, 압록강, 휴전선, 해상, 강	두만강, 백두산, 압록강 순으로 탈출

나. 국내 입국 경로⁷²⁾

탈북자들의 국내입국 경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주

70) 북한당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가 급증하자 제10군단을 창설하여 국경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71) 김문수, “탈북에서 입국까지”(탈북자입국지원 법률개정 자료집), 2004. 13면 참조.

72)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36-38면.

로 휴전선, 강, 해상 등을 통해서 남한에 직접 귀순하여 정착했다면, 1990년대 중반부터는 식량을 비롯해, 생필품과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이나 러시아 지역으로 탈출해 불법체류하다가 현지의 한국대사관이나 외국대사관으로 잡입한 후 망명을 신청하거나 비정부기구나 선교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서방국가나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다시 말해 1960년대에는 탈북자의 50%가 휴전선이나 해상을 이용했으나, 1990년대부터는 제3국을 통한 탈북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전 탈북 경로는 대체로 제3국(55%), 육상(31%), 해상(13%)의 순서로 나타났다. 2005년 북한인권정보센터의 탈북자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8.2%가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입국했고, 53.1%가 2개국 이상의 나라를 거쳐 한국으로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⁷³⁾ 반면에 2007년 상반기에는 탈북자(1,237명)의 국내 입국 과정에서 태국(39%)이 최대 경유국으로 부상했고, 그 뒤를 이어 몽골(22%), 캄보디아(20%), 중국(16%) 순으로 나타났다.⁷⁴⁾

<표 2-5> 탈북자 탈출 및 국내입국 경로

구분	국내입국 경로
1990년 이전	① 북한 → 휴전선 → 국내 ② 북한 → 강 → 국내 ③ 북한 → 해상 → 국내
1990년 중반 이후	① 북한 → 중러 국경선(두만강압록강백두산) → 중국 → 동남아 → 국내 입국 * 북한 → 중국 → 태국베트남캄보디아미얀마몽골 → 국내입국 * 북한 → 중국 → 국내입국 ② 북한 → 휴전선 → 국내입국 ③ 북한 → 해상 → 국내입국

최근에는 중국으로 탈북한 후 태국, 베트남, 미얀마, 몽골 등을 경유해 입국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을 거쳐 제3국을 경유하는 방법과 여권과 비자를 위조해 중국에서 바로 국내로 입국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주로 알려

73) 윤인진, “탈북자의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거버넌스 패러다임”(경인발전연구원 공동정책 심포지엄, 기로에 선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주무부처 조정, 지자체·민간이양 가능한가?, (사)북한인권시민연합(사)경인발전연구원, 2007.12.10, 19면.

74) 2006년 상반기 최대 경유지는 몽골(279명, 32%)로 나타났다.



진 탈북 경로는 <그림 2-1>와 같다. 그리고 이들은 기획입국을 기도하기도 한다.

탈북자들이 많이 이용했던 중국-몽골 경로는 중국의 경비가 강화된 데다 추위가 심한 겨울에는 사실상 폐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용이 줄어든 반면, 중국-태국 경로의 선호로 인해 태국의 방콕 이민국의 여성 수용소는 한때 80평 정도의 방에 300여 명이 넘는

탈북자가 수용될 정도였다.⁷⁵⁾ 그러나 2008년 초 국내 일간지가 주요 탈북경로를 보도한 뒤로는 중국-태국 경로에 대한 중국의 감시가 삼엄해져 상대적으로 태국을 통한 국내입국자의 수가 감소하고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을 통한 국내입국이 증가했다. 최근에는 베트남-캄보디아 경로를 선호하고 있어⁷⁶⁾ 또다시 방콕 이민국의 여성 수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2008년 3월 26일(현지 시간) 태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인용해 “태국에 밀입국한 탈북자가 2005년 189명에서 2006년에 729명, 2007년에는 1,767명에 이르고 있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를 감안하면 실제 탈북자 수는 더 많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⁷⁷⁾

75) 태국 이민국수용소에는 2007년 11월 현재, 적정 인원 200~300명보다 훨씬 많은 424명의 탈북자들이 수용된 상태이다(김필재, “태국 밀입국 탈북자, 3년새 10배 증가”, 프리존 뉴스 (<http://www.freezonenews.com>, 검색일: 2008.3.27).

76) 현지 관계자들에 의하면 한 달에 적어도 60명 이상이 이 경로를 통해 한국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라오스나 태국에 비해 거리가 길고 그 만큼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경비가 조금 더 비쌌으나 최근에는 가격이 내려 미화 1천 3백 달러에서 1천 5백 달러 정도면 캄보디아까지 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영권, “중국, 최근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의 소리방송, 2009.6.10).

77) 김필재, “태국 밀입국 탈북자, 3년새 10배 증가”.

탈북자들이 탈북 경로를 다양하게 변경하고 있는 것은 안전성, 용이성과 해당 정부의 송환 협조 및 언론 보도의 영향 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탈북자들의 탈북 경로가 다양화되고 있음을 볼 때, 향후 탈북자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동남아 지역 국가에 일정 기간 체류하다가 국내로 입국하는 경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중간 기착지에서의 경험⁷⁸⁾

북한 주민들이 국경 탈출 후 국내입국을 위해 일정기간 머물게 되는 기착지는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미얀마 등 다양하다. 탈북청소년들 대부분은 중국으로 탈출한 후 제3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짧게는 몇 주간 길게는 수 년 동안 중국에서 체류하게 된다. 북한을 탈출한 후 중국에서의 경험은 한국행을 결심하는 동기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정착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중국에 도착한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사회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풍요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을 경험하며 문화적 충격에 빠지게 된다. 중국 체류과정에서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실상을 보고 느끼게 된 환상과 동경심으로 북한으로 귀환하기 보다는, 중국동포의 도움이나 브로커와 결탁하여 일자리와 거처를 마련하여 중국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불법체류라는 신분적 한계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복송 될 두려움 때문에 신분이 보장된 한국행을 결심하게 된다. 특히, 단독으로 탈북한 청소년들 대부분은 부모가 사망했거나 병을 앓고 있어서 가족에게 의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구걸한 것으로 생활고를 해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도와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양실조로 신체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하여 또래보다 3~4살 아래로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차도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어 거리와 시장을 떠

78) 김경준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44-48면 참조하여 재정리.

도는 부랑아로 전락하게 된다. 이들 중 소수는 종교단체들이 운영하는 고아원이나 쉼터에서 보호를 받기도 하지만, 이외의 아이들은 노동력이 없고 스스로 은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체포되어 강제 송환되기도 한다.⁷⁹⁾ 이러한 제3국에서 겪게 되는 심리적 불안증상은 국내 정착 후 남한사회가 그들이 기대 했던 환상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또 다른 심리적 갈등과 고민에 빠지게 되면서 극단적인 공격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둘째,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 제3국 머무는 동안 학업 결손이 따른다. 즉,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은둔생활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 공장이나 식당 등에서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신분의 불안정과 생활고는 국내입국을 결심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어머니가 한족 남성과 재혼할 경우 호구를 취득하여 중국의 정규학교에 다니기도 하나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한동안 겪게 되는 탈북청소년들의 학업 결손으로 인한 기초 지식 부족은 국내 입국 후 학교생활에서 교육과정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남북한의 문화적 이질화에 따른 충격은 심리적 갈등과 정체성 혼란을 유발시켜 사회부적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부모와 함께 탈북한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부모가 먼저 국내로 입국했거나 단독으로 탈북한 청소년들은 중국 등 중간 기착지에서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로 어린나이에 불구하고 은둔하며 유랑걸식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절도를 하게 되는 등의 범죄환경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체포와 강제복송의 두려움, 문화적 충격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육체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정적 학습경험은 국내입국 후 사회정착 과정에서 사회일탈로 이어지는 부적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79)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53-54면.

Ⅲ. 탈북청소년 정착실태 분석

1. 탈북자 현황

가. 국내·외 체류 현황

1) 탈북자 체류 현황 및 특징

가) 국내입국 탈북자 현황

1990년 중반 이후 북한을 탈출해 국내에 정착하는 탈북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50년 첫 귀순자를 시작으로 탈북자 입국자 누계는 1999년도에 1,000명을, 2007년도에 1만명을 기록한 이래 불과 3년 만에 2010년 11월 11일 현재 2만 명을 돌파하였다. 연도별 탈북자 입국 규모를 보면 1990년 중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까지만 해도 한해 3백여 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2년 처음으로 1천 명 선을 넘어선 후, 2009년 한 해 동안 2,927명이 입국함으로써, 지난 10년간 한 해 탈북자 증가율이 10배 규모로 증가했다.

<표 3-1> 탈북자 전체 입국 현황

(입국시점 기준~2010년 10월 입국자 기준)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0	합계
합계(명)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1,979	19,963

*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정착지원 정책 추진 현황. 통일부, 2010. 11. 9. 2면.

** 탈북자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나) 국내입국 탈북자 특징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들은 탈북 동기 및 입국 경로, 출신 성분과 성별, 입국

목적, 성분 분포와 연령, 입국 수법 등에서 과거보다 다양화되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탈북 후 국내 입국자는 중국을 비롯한 제3국 등 중간 기착지에서 불법 체류하다가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연령층 또한 어린이에서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근래에는 가족 단위의 탈북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입국 동기 역시 과거의 경제적 문제보다는 정신적 자유, 자아 성취, 가치 실현을 비롯해 자녀들에게 더 나은 삶을 찾아주고자 하는 욕망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⁸⁰⁾

2) 국외체류 실태⁸¹⁾

가) 국외 탈북자 체류 현황

국제인권규약 B규약 제12조 제3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하여 어떠한 나라로부터 자유로이 되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중반부터 본격화된 탈북 행렬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제3국에 수 만 명의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월경하는 순간 불법체류자라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신분노출을 피하고자 철저한 은신생활과 함께 유랑생활로 인해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다.

탈북자에 대한 통계는 공식 집계보다는 주로 탈북자 체류국의 현지 상황을 토대로 추산하거나 탈북자와의 면담, 탈북자 수기 등을 근거로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당국과 일부 비정부기구(NGO)의 추정치는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탈북자 규모 산출은 대체적으로 중국 현지에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민간단체 활동가나 개별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1990년 말 탈북자 규모는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활동가나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중국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는데, 중국 체류 탈북자를 10만~3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80)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29면.

81)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43-49면 재정리.

〈표 3-2〉 1990년대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⁸²⁾

조사자 및 기관	조사기간	조사지역	규모	비고
윤여상 외	1998년	중국 헤이룽장 성(黑龍江省), 라오닝 성(遼寧省), 지린 성(吉林省)의 동북 3성	10만명	중국동포 거주지역의 취락구조와 인구 분포 상황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후, 현지 조사 실시
좋은벗들	1998.11.16-1999.4.3(5개월)	중국 동북 3성 29개 사현에 속한 총 2,479개 마을	14-30만명	조사마을 거주민 3-5인의 면담을 통해 그 마을의 탈북자관련 현황을 파악한 후, 조사마을 내 탈북자 878명과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CNKR)	1999년	중국 현지 탈북난민 2,193명 대상 조사 분석	10-20만명	“중국 내 탈북난민에 관한 현장조사 보고서”
탈북난민보호유엔청원운동본부	1999.10.2-11.12	중국 현지 탈북자 1,383명 대상 직접 면담	10-20만명	“국내 탈북난민 현장보고서” * 탈북자 중 82%가 북한으로 귀환할 의사가 없으며, 탈북자 중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도 77%로 나타났다.

둘째, 2000년부터 진행된 국외체류 탈북자 규모 역시 탈북자 지원 민간단체 활동가나 관련 연구자들에 의해 중국지역의 체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는 국제사회의 식량지원에 의한 탈북자 감소는 물론,⁸³⁾ 북한당국의 국경지역 통로의 검문검색과 경계강화, 중국당국의 탈북자 단속강화와⁸⁴⁾ 강제 송환 등으로 월경이 쉽지 않아 탈북행렬이 둔화되었다. 이 시기의 탈북자 규모는 3~10만 여명 선으로 추산하고 있다.⁸⁵⁾

82) 김윤영, 국내의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45면.

83) 1990년 중반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아사자가 속출하자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함으로써, 북한의 극심한 식량난이 완화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4) 북한당국은 탈북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9월과 10월에 국경선을 통하는 도로에 임시검문소를 설치하여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와 보안서(남한의 경찰서에 해당) 합동으로 차량 검문을 시작했다가, 동년 11월부터 군대보위소대 단독으로 무기한 통제검열을 하기로 했다. 또 중국정부와 협의하여 회령의 전 구간과 그 외 도강이 빈번한 국경변에 철조망을 치고 주민들의 접근을 막고 있다. 2007년 6월에 중국과 합의하였는데 철조망은 중국에서 무상 지원하기로 하고 양측이 국경변에 철조망을 치는 것에 동의했다. 중국은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변경지역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했고 북한도 탈북자의 발생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의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 당국은 2008년 올림픽을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였고, 중국내에 체포된 탈북자를 북한으로 강제 송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사)좋은벗들,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좋은벗들, 2007.11, 96면).

85) 박상봉, “중국내 탈북자 현황, 정책 및 전망”, 원재천 편, 새로운 차원에서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46면.

<표 3-3> 2000~2008년 각 기관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 추정⁸⁶⁾

연구자 및 발표기관	발표 년도	체류 지역	규모	비고
중국정부	2002년 2월	중국	1만명 이하	통일부 국회제출 자료
한국정부	2002년 2월	중국	2~3만명	통일부 국회제출 자료
유엔난민고등판무관(UANHCR)	2002년 2월	중국	3만명	통일부 국회제출 자료
루드 루버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UANHCR)	2003년 6월		10만 여명	
민주노동		중국 현지조사	3만 명 이하	
중국인권연구협회 사무총장 양칭밍(Yang Chengming)	2004년 12월 1일		3만 여명	2004년 12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최한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중국 군사과학원 왕이성	2005년		3~4만 명	
미 국무부	2005년 2월		7만 5천~12만 5명	
좋은벗들	2005년 6~7월	동북삼성 농촌 지역 대상 현장조사	5만 명	2005년 6~7월 국경에서 500km 반경에 있는 동북삼성 농촌지역 대상 현장조사
좋은벗들	2006년 1월	동북 3성	10만 명(탈북여성 출산 어린이 5만 명)	2006년 1월 동북 3성 서북쪽 오지 한족 마을(탈북 체류자 약 2만 명)과 셴양(瀋陽), 다롄(大連), 칭다오(靑島) 등 대도시 근교 지역(탈북 체류자 약 3만 명) 대상 135개 마을 표본조사
국제위기감시기구(International Crisis Group)	2006년	중국 조선족과 현지 인터뷰	10만 명	
Yoonok Chang,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08년		2~4만 명	working Paper Series(March 2008)

이와 같이 해외체류 탈북자는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탈북행렬이 이어졌으나, 식량난이 다소 완화되었던 2000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86)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49면.

나) 탈북자 감소 요인⁸⁷⁾

1990년 중·후반까지만 해도 탈북자들은 중국동포 거주지인 연변조선족자치주를 중심으로 동북삼성지역에 체류하였다. 그러나 2000년 이후부터 체포와 강제송환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북한의 국경과 인접한 중국동포 거주지역을 이탈하여 북경을 비롯한 남방 해안지역 대도시(청도, 상해 등)나 중국 서부 지역(티벳 등) 등 중국 전역으로 이동하였다.

최근 중국체류 탈북자 규모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술한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 10~30만 명 규모의 탈북자들이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중국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강화와 체포 후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북한당국의 국경경비 강화와 단속으로 인한 신규탈북자 감소, 신변안전을 위한 동남아 지역으로 이동과 한국 입국 및 서방 국가로의 망명 증가로 중국 체류 탈북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중국 내 최근 탈북자 체류 규모를 3~5만 명 수준으로 보고 있으나, 일부 현지 활동가와 중국 및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3만 명 이하로 추산하고 있다.⁸⁸⁾ 결국,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현재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은 2~5만 여명으로 예상할 수 있다.

중국체류 탈북자 감소 요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⁸⁹⁾ 첫째, 탈북비용의 급상승 때문이다. 1990년 중반 이후 탈북자들이 급증하자, 북한은 탈북브로커를 체포한 후 공개총살 등의 단속을 강화하자 탈북비용이 급상승했다.

둘째, 중국당국의 강제복송 영향이다.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외국대사관 무단진입 사건 등의 사회문제를 우려하여 공안당국이 체포하여

87)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50-52면 재정리.

88) 최근 미국의 소리방송은 미국 정부의 인권보고서와 인권단체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중국체류 탈북자가 3만-5만 여명이라고 밝힌바 있다(“중국, 최근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의 소리방송, 2009.6.10).

89) 윤여상, “해외 탈북자 실태와 대책”, 북한 2008년 8월호, 북한연구소, 46면 재정리.0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켜 왔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위해 중국과 북한 당국의 국경통제가 강화된 것도 탈북자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⁹⁰⁾

셋째, 북한은 주민들의 국경 이동경로를 차단하고 북한과 중국이 국경 경비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압록강-두만강지역에 대한 병력배치와 삼엄한 경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국도 탈북자를 막기 위한 국경경비를 강화했다.⁹¹⁾

넷째, 한국과 외부세계의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등으로 북한 내 식량사정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경탈출을 위한 뇌물비용(국경수비대) 증가 및 탈북비용과 더불어 한국행을 위한 제3국으로의 이동경비가 급증하자 경비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 탈북자가 감소하게 되었다.

다섯째, 북한 당국의 여권발급 확대⁹²⁾로 합법적인 중국 방문이 가능했기 때문에, 신분상의 위협과 경비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경을 넘어야 할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외에도 장사를 위한 단기체류의 증가, 한국 등 제3국 정착의 증가 등도 중국체류 탈북자의 감소 요인이 되고 있다.

이상의 논의와 같이 최근 중국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급감한 이유는 북한과 중국 당국의 국경경비와 단속강화, 지속적인 강제송환,⁹³⁾ 북한 내 식량사정 완화

90) 중국공안에 체포된 탈북자들은 중국감옥에 1~3개월 구속되어 있는 기간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송환된 후, 북한에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거나 3~6개월간의 강제노동으로 완전히 폐인으로 만들어 방출하는데, 그들은 또 다시 사회적 고립과 영양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중국공안 당국에 체포되어 강제 송환된 탈북자들의 40%는 1~2년 안에 사망하고 있으며 10%만이 재탈북을 시도하고 있다. 탈북한 후 잡혀온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는 북한주민들은 겁에 질려 탈북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임연선, “위기에 처한 탈북민보호 구출과 그 의의”(탈북난민보호UN청원 1,180만명 서명전달 4주년기념 세미나 자료집), 탈북난민보호·구출의 현주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2005.5.17, 1면).

91) 위의 글, 1면.

92) 북한의 경우 정상적인 여권발급 비용은 35유로(북한 돈 10만원) 정도이지만 각 단계마다 뇌물제공이 필수적이라 한다. 그러나 최근 중국방문 주민들이 귀국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되자, 여권 발급이 상당히 어려워져 뇌물 제공액수도 증가하고 있다.

93) 정신철(鄭信哲)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이 학술지 중남민족 대학저널에 기고한 “한반도 정세가 조선족 지역발전과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2002년 공식통계상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통해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자는 4,809명에 이른다. 이들 중 조선족 자치주가 직접 체포해 송환한 탈북자는 3,732명이었다(통일연구원,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통일연구원, 2007, 46면).

및 탈북비용의 증가로 인한 신규 탈북자의 감소, 여권발급 확대에 따른 합법적인 중국방문 확대, 장사를 위한 단기체류의 증가, 한국 등 제3국 정착 증가 등에 따른 것이다.⁹⁴⁾

나. 탈북청소년 현황

1) 국내입국 탈북청소년

가) 탈북청소년 국내입국 현황

탈북청소년은 성인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에 비례하여 급증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사상 또는 개인문제로 소수의 귀순하는 과정에서는 극소수의 탈북청소년들이 발생했으나, 1990년대 중반 식량난 이후 성인 탈북자 급증과 더불어 탈북청소년 역시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0년부터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이 본격화되면서 가족동반 탈북과 남한사회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착금 등을 사용하여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을 입국시키면서 탈북청소년들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10년 2월 현재 10세에서 19세의 국내정착 탈북청소년들은 2,156명으로 전체 탈북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표 3-4> 탈북 청소년 입국 추이⁹⁵⁾

(단위 : 명)

대상 \ 년도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계
청소년 (6~20세)	13	12	22	60	124	211	220	330	224	336	366	378	2,296
2,189(평균 273.6명)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2010. 10. 검색).

94) 위의 글, 46면.

95) “탈북 청소년, 입국 초기부터 사회 진출까지 전방위적 교육지원 이루어진다. - 2009~2010년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계획’ 발표-”(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8.13.

이러한 사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위의 통계결과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즉, 1999년까지만 해도 6세에서 20세의 탈북청소년들은 20명 내외의 소수자에 불과했지만, 200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1년부터 2008년 12월말 현재까지 2,189명이 입국하여 연평균 273.6명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 이전의 경우 탈북자들이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생존을 위한 탈북을 시도했다면, 외부 세계의 지원 등에 의해 식량난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던 2000년부터는 자녀에게 보다 나은 삶과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자녀들과 동반 탈북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무연고 탈북청소년 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통일부는 하나원 입소 당시 만 20세 미만의 가족 미동반 청소년을 무연고 탈북청소년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2009년 6월 24일 현재 202명이 하나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3-5> 무연고 탈북 청소년 수

(‘99.7 하나원 개원 이후 ~ ‘09.6.24 현재 : 126기까지 누계)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인원	2	10	29	55	38	50	27	25	51	52	15	354
남	2	8	20	36	15	24	11	10	16	3	7	152
여	-	2	9	19	23	26	16	15	35	49	8	202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2010. 10. 검색).

나) 국내입국 탈북청소년 증가 요인

최근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과거의 입국자들과 비교해보면 출신 성분, 입국 목적, 입국 경로, 성분 분포와 연령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 스스로 탈북을 시도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은 부모를 따라 탈북한 후 국내로 입국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탈북자 및 가족단위

탈북자의 급증 등은 탈북청소년들의 국내입국 증가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첫째, 탈북여성들의 국내 입국 급증에 따른 것이다.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성별 입국비율을 살펴보면 1989년까지만 해도 전체의 7%에 불과했던 여성의 비율이 2002년을 기점으로 남성을 추월하여 2006년부터는 75% 이상의 분포를 보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77%를 넘어서고 있다. 탈북여성이 급증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북한 내에서 이동이 남성에 비해 쉬울 뿐만 아니라, 탈북 한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사 도우미 등 생계수단의 다양화와 더불어 현지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은신처 확보가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들의 탈북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특히, 탈북여성들이 자녀들을 동반하고 국내에 입국하면서, 탈북여성과 탈북청소년들의 사회 정착과정에서의 부적응 현상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표 3-6> 여성 탈북자 입국 현황

(입국시점 기준~2010년 10월 입국자 기준)

구분	'89	'93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10	합계
남	562	32	235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8	514	6,289
여	45	2	71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59	1,465	13,674
합계(명)	607	34	306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1,979	19,963
여성 비율	7.4%	5.8%	23%	46%	55%	63%	67%	69%	75%	78%	78%	77%	74%	68.5%

* 자료: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정착지원 정책 추진 현황, 2면.

** 탈북자 입국인원은 보호결정을 기준으로 집계

둘째,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들의 연령층이 다양해지면서, 2010년 2월 현재 국내입국 탈북자 중 10대 탈북청소년이 12%(2천여 명)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30대가 32.5%(6천여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와 40대가 각각 27.4%와 15.2%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적응문제와 육아문제, 노인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정착지원 시스템의 개선이 대책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사회일탈과 미성년자 약취 문제, 사회복지에 필요한 예산 증액 등은 사회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표 3-7> 연령별 유형(~'10.2 입국자기준)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계
누계(명)	720	2,156	5,036	5,996	2,759	834	838	18,339
비율(%)	4	12	27	33	15	4	5	100

* 자료: 통일부 정착지원과(<http://www.unikorea.go.kr>; 2010.10.1 검색).

셋째, 자녀를 비롯한 가족 동반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만철 씨가 1987년 2월 소형 선박에 10대의 자녀를 비롯한 11명의 가족을 태우고 공해상을 떠돌다 귀순한 첫 가족 단위 탈북 사례를 기록한 후, 2002년 8월 19일에는 성인 11명과 어린이 10명으로 구성된 순용범씨 일가 등 21명(남자 14명, 여자 7명)이 어선을 타고 집단 탈출해 서해를 통해 귀순했다. 특히, 가족단위 입국은 가족 모두가 일시에 탈북한 후 국내로 직접 입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 입국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국내에 먼저 입국한 자가 종교·시민단체 등의 도움을 받아 중국이나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입국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9년 10월 1일 3t 규모의 ‘전마선(소형 고기잡이 배)’을 타고 11명(남자 5명, 여자 6명)이 동해를 통해 탈출한 후 국내에 입국한 바 있다.

<표 3-8> 가족 단위 입국 현황

구분	1994년	1997년	1999년	2000년	2003년	2004년 5월
가족 수	3	17	36	50	234	93
인원(명)	10	59	91	131	557	221
총인원 대비 비율	19.0%	69.4%	61.5%	42.0%	43.5%	36.2%

* 자료: 통일부 사회문화교류본부.

〈표 3-9〉 탈북자 10명 이상 집단입국 일지

년 월	탈북 인원
1987.2	김만철씨 일가 11명 배 이용 귀순
1996.12	김경호씨 일가 17명 중국 경우 홍콩에서 귀순
2002.8	순용범씨 일가 21명(성인 11명과 어린이 10명) 어선으로 귀순
2009.10.1	주민 11명(성인 9명과 어린이 2명) 동해상으로 귀순

넷째, 탈북청소년은 중국 등 외부세계와 접촉이 용이한 국경지역의 청소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함경남북도의⁹⁶⁾ 경우 변방지역으로 인해 과거 극심한 식량난 시기 아사자가 많아 다른 곳에 비해 고아가 많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영향이 덜 미치고 중국 등 외부세계의 정보를 쉽게 들을 수 있는 지역이다. 때문에 이들 지역 청소년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거나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교적 강폭이 좁고 수심이 얕아 도강하기 쉬운 두만강을 통해 탈북을 시도하였다.

〈표 3-10〉 재북당시 거주지 분포

출신지	함북	함남	평안	양강자강	강원	황해	기타	계	
~1989년	명	48	55	177	5	31	117	174	607
	%	7.9	9.1	29.2	0.08	5.1	19.3	28.7	
1990~2002년	명	1,483	193	276	136	75	95	264	2,522
	%	58.8	7.7	10.9	5.4	3	3.8	10.5	
2003년(명)	명	921	150	81	33	25	31	40	1,281
	%	71.9	11.7	6.3	2.6	2	2.4	3.1	

* 자료: 통일부 인도협력국.

2) 해외체류 탈북 청소년⁹⁷⁾

북한 여성들의 탈북이 본격화 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이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2세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또한 탈북 여성들 대부분은

96) 2003년 국내입국 탈북자를 보면 함경남북도와 평안남북도 주민들이 83.6%를 차지하고 있다. 즉,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와 접경 지역인 함경북도가 가장 많고, 평안도와 자강도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97)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52-54면.

북한에서 가정 붕괴(남편 사망, 이혼 등)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에 두고 온 자녀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부모들만 탈북하여 자녀들이 북한에 남는 경우, 이들 대부분은 꽃제비(부랑아)로 전락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서 버려지는 ‘무국적 꽃제비’들이다. 이들은 어머니가 강제 송환되거나 한국으로 간 이후에 중국인들의 책임 회피로 버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탈북여성과 결혼하는 중국 남성들은 대다수 빈곤층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⁹⁸⁾

중국에 거주하는 무국적 탈북 아동이나 청소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만,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 자료, 현지인과의 인터뷰,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무국적 탈북 청소년들이란 탈북여성과 중국인 또는 탈북자 사이에서 출생한 호적 없는 2세들을 의미한다. 즉, 중국내 무국적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 모두가 탈북자인 경우와 부모 한쪽만 탈북자인 경우를 구분할 수 있는데, 부모 한쪽만 탈북자인 경우는 중국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⁹⁹⁾ 부모 모두가 탈북자인 경우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인권침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 만큼 높아진다. 중국과 국내 입국 무국적 아동과 탈북청소년 대부분은 탈북 여성과 중국인(중국동포 포함)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통일부와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국적 아동과 청소년 수는 최대 1만 5천명에 이르고, 특히 순수 탈북 고아는 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다.¹⁰⁰⁾ “북한인권국민캠페인”은 2008년 자

98) 양정아, “[中 탈북여성 현지르포 ③] 무국적 탈북 2세…국제사회 도움 절실”, 데일리 NK, 2007.4.27.

99) 최근 중국 정부가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통해 낳은 자녀의 경우 수수료 5백 위안만 내면 호적을 만들어준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5천 위안 정도의 뇌물을 파출소(공안국)에 내야만이 아이의 호적 취득이 가능했다. 그것도 파출소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탈북자로 들롱 날 경우 벌금 및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양정아, 위의 기사, 데일리 NK, 2007.4.27).

100) ‘좋은 벗들’은 2006년 1월 국경주변 135개 마을을 표본 조사하여 이들 마을에서 북한여성과 중국남성 사이에 출생한 아이가 267명으로 파악했다. 1999년 같은 마을에 거주했던 북한여성의 수를 토대로 아동 출생률을 22%로 계산하고, 당시 북한여성 탈북자 규모 225,000명을 감안하여 탈북여성이 출산한 아동의 규모가 49,500명이라고 추산하였다. 탈북

체 입수한 동영상상을 통해 국내외 탈북고아 및 무국적 청소년들이 1만 7천명이라고 밝혔다.¹⁰¹⁾ 이러한 무국적 아동과 청소년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수와 비슷한 수치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클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크지 않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방치되고 있으며 생계와 교육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범죄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¹⁰²⁾ 아동 권리에 관한 협약은 아이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고아인지 아닌지, 합법체류인지 불법체류인지를 상관치 않고 '무조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모든 문명국가에서는 부모가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아이의 건강, 교육문제로 체류를 허가해주거나 연장하고 있다. 중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아동 인권에 대한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¹⁰³⁾ 그러나 이들은 신분 불안과 굶주림에 시달리며 그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다. 무국적 아동과 청소년들이 중국에서 겪는 고통은 신분 불안, 가족해체와 생계위협, 언어장벽, 교육과 의료 및 사회서비스 배제, 육체 및 심리적 고통 등을 받고 있다. 특히, 부모의 사망을 목격하거나 인신매매와 굶주림에 의한 극단적인 고통을 경험한 탈북 고아의 경우 심리적 충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2. 탈북청소년 교육지원¹⁰⁴⁾

가. 학비지원

만 25세 미만으로 중·고등학교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탈북청소년의 학

여성들이 강제 송환된 후 재탈북 혹은 중국내 이동을 통해 1명 이상의 자녀를 추산한 경우도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추산규모가 실제보다 과장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통일연구원, 2009, 318면 재인용).

101) 연합뉴스, 2008.9.26; 국내 입국한 '무연고 청소년'은 부모 없이 한국에 온 미성년 탈북자를 의미하는데, 매달 1~2명 많게는 7~8명씩 입국하고 있다. 2009년 9월말 현재 국내에 총 90여명의 무연고 청소년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2세 탈북소녀 남녘땅 첫 한가위 가슴 설레요", 조선일보, 2009.10.1).

102) 최승진, "무국적 탈북 고아, 최대 1만 5천명 추산", CBS 노컷뉴스, 2008.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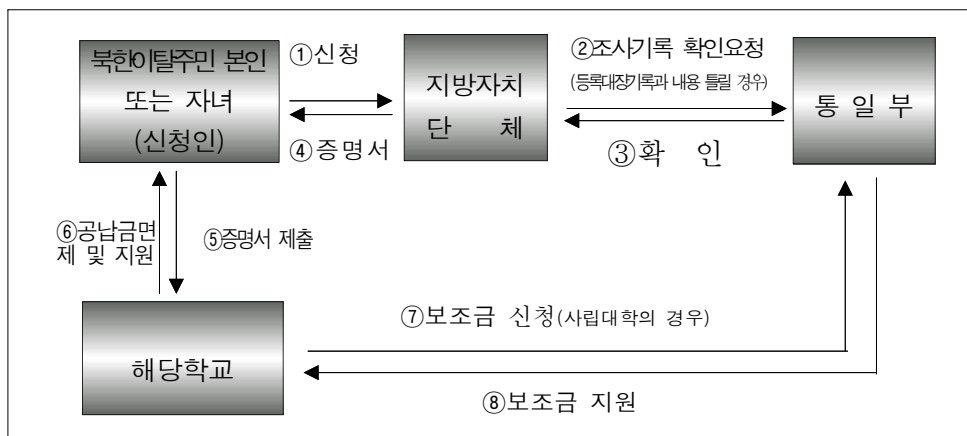
103) 김소열, "자식 키워본 사람은 탈북고아 외면하지 말아야", 데일리NK, 2008.9.5.

104) "2.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은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편람 54-64면 참고하여 재정리하였음.

비지원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법 제24조제1항, 시행령 제45조~제47조, 교육 지원지침 등에 근거하여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졸업할 때까지 면제(학교자체)해 주고 있다.

학비신청을 위해 탈북청소년이 교육보호 대상자 증명서를 시·군·구에 신청하게 되면, 거주지보호담당관은 3S-Net에서 교육보호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월남귀순용사의 자녀로서 교육보호대상자인 경우의 증명서는 통일부에서 발급한다. 학자금의 지급은 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호 결정된 본인 또는 그 자녀로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또는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법시행령이 정하는 소정금액을 2회(상반기, 하반기) 지급한다.

<그림 3-1> 학비 지원절차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나. 편입학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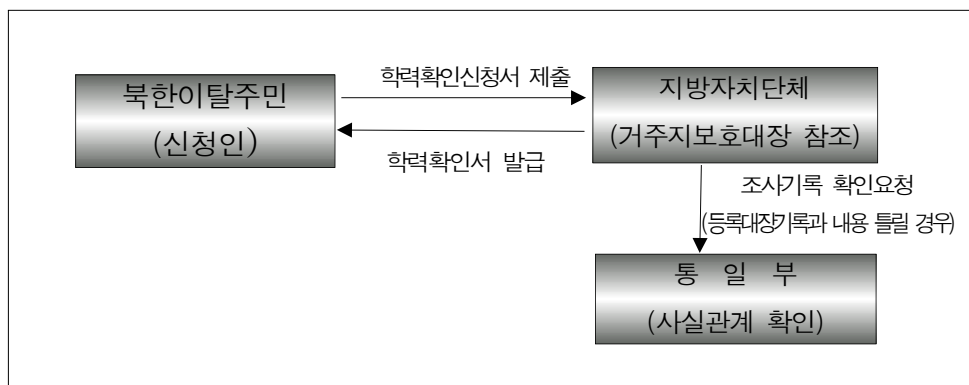
첫째, 청소년의 편입학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2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96조~제98조의3에 근거하고 있다. 즉, 탈북청소년이 각급 학교에 편입학시 학력확인¹⁰⁵⁾서 또는 학력인정¹⁰⁶⁾

105) 합동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탈북자의 학력을 확인하는 사실행위이다.

106) 탈북자가 이수한 북한 학력에 대해 국내학교 졸업 학력을 부여하는 법률행위이다.

서를 구비하여 각급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입학하게 된다. 학력인정 절차는 일정기간(1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대다수 학력확인서를 통해 편입학하고 있다. 탈북자의 신청에 따라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을 3S-Net과 대조하여 신청서 내용과 일치할 때 발급하고 불일치할 경우에는 통일부에 확인 요청해야 한다.

<그림 3-2> 학력확인 절차



둘째, 청소년이 각급 학교에 편입학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별도의 학력인정 절차 없이 각급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¹⁰⁷⁾ 2008년 2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 내지 제98조가 개정되어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절차를 규정하였다. 즉, 탈북청소년 중 초등학교는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력으로 인정한 탈북청소년을, 중학교는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력으로 인정한 청소년을, 고등학교는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학력으로 인정한다. 이와는 별도로 일정 수 이상의 탈북자가 재학 중인 학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학칙으로 학년결정이 가능(제98조의3)하다.

107) 과거에는 통상 국내의 6·3·3 학제에 따라 기계적으로 학년을 배정하였다.

<그림 3-3> 남북한 학제 비교

<북 한>		<남 한>	
대학교 4~7년제 (전문대학)	4학년	대학교 (전문대학)	4학년
	3학년		3학년
	2학년		2학년
	1학년		1학년
중학교 (고등중학교)	6학년	고등학교	3학년
	5학년		2학년
	4학년		1학년
	3학년	중학교	3학년
	2학년		2학년
	1학년		1학년
소학교 (인민학교)	4학년	초등학교	6학년
	3학년		5학년
	2학년		4학년
	1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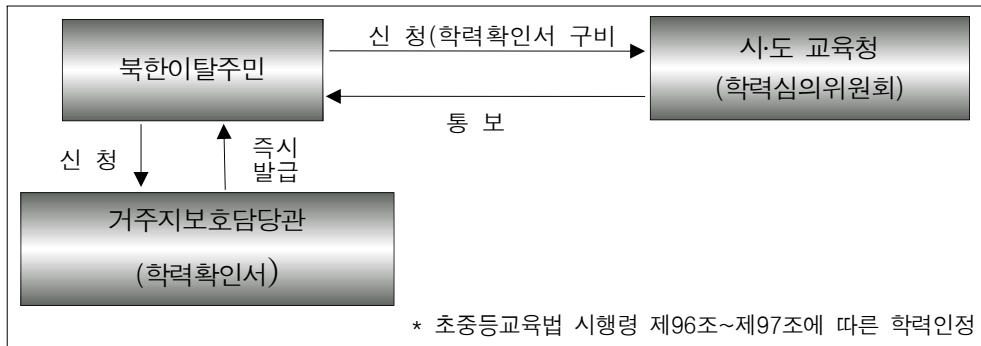
(유치원 높은반)1년
* 비정규 교육과정

다. 학력인정

학력인정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27조, 초·중등교육

법시행령 제96조~제98조 및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의거한다. 즉, 탈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을 국내학력에 상응한 학력으로 인정한다. 북한에서 이수한 학력은 증빙서류 구비가 불가하므로, 통일부의 확인을 거쳐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하며,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탈북자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인정한다.¹⁰⁸⁾

<그림 3-4> 고등학교 이하의 학력



3. 탈북청소년 적응 실태

가. 학교 적응 실태

1) 재학 현황

하나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 탈북청소년이 거주지에 편입하게 되면 주변지역 학교에 편입학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2010년 4월 현재 1,711명의 탈북청소년(만6~20세)이 정규학교나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에 있다. 이 중 초(773명)·중(300명)·고(344명) 정교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417명

108) 외국학력은 통일부 학력확인 불가하다.

(82.8%)으로 전년(09년 1,143명, 77.3%) 대비 274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학교 유형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2010년 4월 기준)

정규학교 재학			학교 밖 탈북청소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민간교육시설	기타	
773(54.5)	300(21.2)	344(24.3)	156 (9.1)	138 (8.1)	1,711 (100)
1,417 (82.8)					

* 전문계고등학교 재학 현황 : 58개교 66명(마이스터고 5개교 5명 포함)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2010.10.5 검색).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규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들은 최근 6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 3-12> 연도별 재학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정규 학교			합계
	초	중	고	
2005	247(58.7)	131(31.1)	43(10.2)	421
2006	248(52.3)	166(35.0)	60(12.7)	474
2007	341(56.6)	181(30.1)	80(13.3)	602
2008	492(50.9)	294(30.4)	180(18.6)	966
2009	562(49.1)	305(26.7)	276(24.1)	1,143
2010.4 현재	773(54.5)	300(21.2)	344(24.3)	1,417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2010.10.5 검색).

2) 중도 탈락률

거주지 학교에 편입하게 된 탈북청소년들 중 다수는 북한 생활 및 국내입국

과정의 중간 기착지에서 학업 결손에 의한 기초 지식의 미달, 남한 도착 후 언어와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재학 중 학업을 포기하는 탈락률은 평균 6.1%('08)로 남한학생(0.96%)보다 6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부적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3-13〉 연도별 중도탈락률

(단위 : 명, %)

구분		초	중	고	계
'06학년도	'06. 5. 재학생 수	248	166	60	474
	중도탈락생 수	7	17	10	34
	중도탈락률(%)	2.8	10.1	12.8	7.1
'07학년도	'07. 4. 재학생 수	341	181	80	602
	중도탈락생 수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2.3
'08학년도	'08. 4. 재학생 수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9.0	14.2	6.1
'09학년도	'09. 4. 재학생 수	562	305	276	1,143
	도탈락생 수	5	26	25	56
	중도탈락률(%)	0.9	8.5	9.1	4.9

* 중도탈락률 = 학교급별 ('08년도 중도탈락자 총수 / '08년도 재학생 총수) × 10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2010.10.5 검색).

최근 4년간(2006-2009) 탈북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은 초등학생,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이 높아질수록 학교 내 부적응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9년도의 경우 탈북청소년들의 중도 탈락률이 전년 대비 미약한 수준이지만 초·중·고 전반에 걸쳐 감소하였다. 이는 그동안 정부당국이 탈북청소년들의 학업관리와 적응문제와 관련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다.

3) 중도 탈락사유

최근 4년간(2005-2008) 탈북청소년들의 중도 탈락 사유를 보면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과 수학능력 부족 등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 부적응 현상이 30.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어서 대안교육 시설에서의 수학 등 기타(26.9%), 검정고시(20.8%), 가사(7.9%), 경제적 사정(5.6%), 질병(2.8%)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나이가 많거나 학습부진 탈북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진로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표 3-14> 중도 탈락사유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5학년도	2006학년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계	비율
	(05.3~06.2)	(06.3~07.2)	(07.3~08.2)	(08.3~09.2)		
부적응 ¹⁰⁹⁾	7	16	21	20	64	39.9%
경제적 사정	-	2	6	2	10	5.6%
검정고시	1	8	14	14	37	20.8%
가사	1	2	4	7	14	7.9%
질병	-	-	3	2	5	2.8%
기타	2	6	26	14	48	26.9%
계	11	34	74	59	178	100%

* 자료: 교육과학기술부(<http://www.mest.go.kr/>; 2010.10.5 검색).

나. 탈북청소년의 의식성향

1) 북한의 주체형 인간양성

북한의 교육 목표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요구하는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한 혁명적 투사 즉, 주체형의 인간을 양성하는데 있다.¹¹⁰⁾ 김정일은 1986년 7월 15

109) 탈북청소년들의 학교부정은 내용은 동급생보다 높은 연령, 수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적응 현상이다.

110)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150면.

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의 대답에서 “주체사상 교양은 우리당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으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튼튼히 무장시켜 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사상 교양사업입니다”¹¹¹⁾라며, 주체사상 교양은 ‘주체형 공산주의혁명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임을 밝힌 바 있다. 결국, 북한 정권이 주장하는 주체형의 인간이란 ‘공산주의 건설자’라는 보편적 의미보다는 북한의 유일체제의 안정적 재생산을 목적으로 체제 유지와 재생산의 역할을 담당하는 ‘김정일 체제의 수호자’를 의미하는 것이다.¹¹²⁾

북한정권은 김정일 체제의 수호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탁아소, 유치원, 가정, 학교, 사회단체(소년단, 청년동맹, 노동당, 직맹, 농근맹), 군대, 언론 등을 동원하여, 김일성 유일사상체계 확립,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에 대한 증오심 고취, 집단주의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정권이 유치원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정치사상을 주입하여 온 결과, 탈북청소년들이 국내에 정착한 후에도 그 여파가 사회 부적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 탈북청소년 의식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정권의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에서 학습된 독특한 사고체계와 행동양식에 따라 형성된 사고 즉, 획일적 사고체계, 공격·비판적 성격 구조, 의식구조의 양면성, 강한 집단의식, 봉건적 가치 소유, 타인을 비판하는 탁월한 능력 등은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¹¹³⁾

첫째, 획일적이고 제한적인 사고로 가치관 혼란을 야기한다. 북한은 전주민들의 사상통일을 위해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사고가 획일적이고 폐쇄적이다. 특히, 사고의 제한은 집단체조나 가극에서 잘 반영되고 있는데, 작가나 제작자들은 사상의 틀을 만들어 놓고 절가와 방창¹¹⁴⁾을 통하여 관객들의 상상력을 단절

111) 김정일, 『김정일선집 8』,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32면.

112) 신호숙, “북한교육 연구의 성격과 과제”, 통일정책연구, 제15권 1호, 통일연구원, 2006, 143면.

113) 안재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실태와 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석사논문, 2005, 15-22면 참조 재정리.

시켜 관객들이 그 속에서 사고하도록 하는 등 북한은 유아시절부터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충성)을 교양하여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심성을 형성시켜왔다. 이러한 사고의 제한성은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 경직성, 흑백 논리적 사고를 유발시켜 창의성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체제에서 체득한 가치체계와 행동규범 등을 답습한 채 우리사회에 편입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자유’라는 개념을 방종으로 이해하고, 법과 규정은 자신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가하면 우리사회를 무질서 사회로 오해하고 있다.

셋째,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자기중심의 의식구조를 가진다. 탈북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비판과 자아비판 등의 조직생활을 통하여 무조건 복종하도록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행위의 폭이 제한적이고 외적자극에 대한 적응력이 취약하며 자기중심적 성향이 강하다.¹¹⁴⁾ 이렇게 체질화된 생활습관은 독립심과 책임의식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자기의견과 권리만을 앞세우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을 보인다.

넷째, 문제가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집단에 의존하려고 한다. 집단주의 의식이 내면화된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의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속한 집단내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깊고, 문제해결도 소속집단에 지나치게 의존하려고 한다.

다섯째, 사회성이 부족하여 급우들과 잘 융화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 흑백논리의 경직된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판단과 기준에 어긋나면 태도가 돌변하고,

114) 절가 형식이란 여러 개의 절로 나뉘어져 있는 정형시 형태의 가사를 하나의 곡에 맞춰 반복하도록 하는 가요형식이고, 방창은 무대 뒤에서 이야기의 줄거리에 얽힌 인물들의 갈등, 상황, 사건 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서설, 대면, 평가하는 것으로 모두다 인민성과 통속성이란 원칙을 위한 형식이다.

115) 조지현, “남북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한 주민교육의 기본방향”(통일교육원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1999), 21면.

극단적인 해결책을 선택하는 등 인간적 유대관계가 미흡하다.

여섯째, 탈북청소년들은 자신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의 구성원 문제에 적극 개입해 해결하려는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이는 “오직 개인을 위하여 사람들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승냥이 법칙이 지배하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 도덕과는 근본적으로 달리 모든 사람들이 자주성을 존중하며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원칙의 기초에 놓여 있는 인간관계의 가장 아름다운 도덕”¹¹⁶⁾으로 평가하는 북한의 집단주의 교육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탈북자 청소년들은 자신과 같은 집단이나 소속 출신과는 유달리 같음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일곱째, 탈북청소년들은 이중성 의식구조를 지닌다. 탈북청소년들은 때로 아주 순진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태도를 취한다. 탈북자들을 접해본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말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든 것은 거짓말을 하고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또는 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농장세포에 불과한 자기 아버지를 북한군의 고위 장성이라고 속이며, 북한에서 결혼을 했었는데도 총각이라고 우기거나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군부대에 근무했는데 평양냉면 가게에서 근무했었다는 등 거짓말을 한다. 이들은 북한에서의 자기 신분을 속임으로써 자기의 가치를 높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대단한 사람임을 과시하고자 한다. 또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면에는 남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거를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 주민들이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자본주의 사람들과 달리 순수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나중에 그들이 한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고 난 뒤 허탈감에 빠지고, 이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탈북자를 가까이하지 않으려 한다.¹¹⁷⁾

여덟째,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죄의식, 중국 등 제3국에서의 도피생활로 인한 피해의식과 불안감,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 혼자라는 외로움, 남한생활상에

116)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교육리론, 사회과학출판사, 1975, 154면.

117)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187-188면 재정리.

대한 부러움과 시기심 등에 의한 정서적 장애가 나타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 청소년들은 목숨을 걸고 남한에 입국한 행동에 대한 명분을 앞세우면서, 법보다는 힘의 논리를 가진 사람의 의지를 더 중요시하고 타인을 의심하는 경향을 보인다.

결국, 탈북청소년들은 국내에 입국하여 사회적응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에도 북한 김정일 독재 체제에서 체득한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가치체계, 행위규범 등을 가지고 우리사회에 편입됨으로써, 가치관의 혼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몰이해, 자기중심의 이기주의, 경직된 사고방식에 의한 사회성과 자립 의지 부족, 가족을 두고 온 죄의식 등에 의한 정서장애 등이 발생하여 사회정착의 부적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탈북자 사회일탈 현황

1) 성인탈북자 사회일탈¹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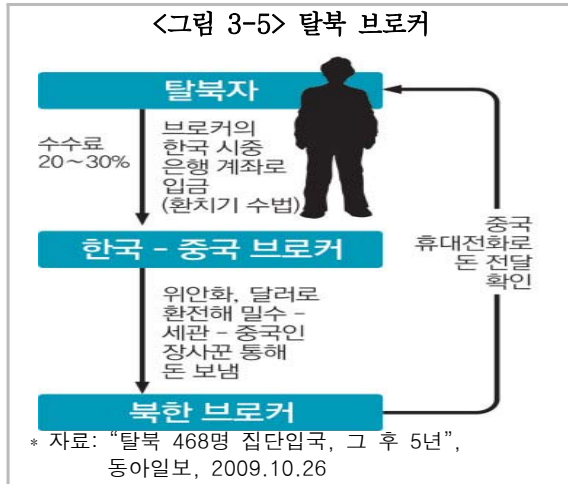
탈북자들은 중국과 제3국을 경유하여 입국하거나 중국에서 직접 국내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탈북 브로커들이 개입하고 있다. 탈북 브로커를 통해 국내로 입국한 탈북자들은 입국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입국비용은 입국 직전 선불로 지급하거나 입국 후 초기 정착지원을 비용으로 지급하게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09년 통일부 용역보고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¹¹⁹⁾를 작성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2009년 10월 29일에서 11월 13일(12일간) 만 15세 이상 탈북자 총 637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전화조사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르면 본인 및 가족 입국경비로 인해 응답자의 28.7%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탈북자들이

118)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124-128 재정리.

119) 송창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통일부 용역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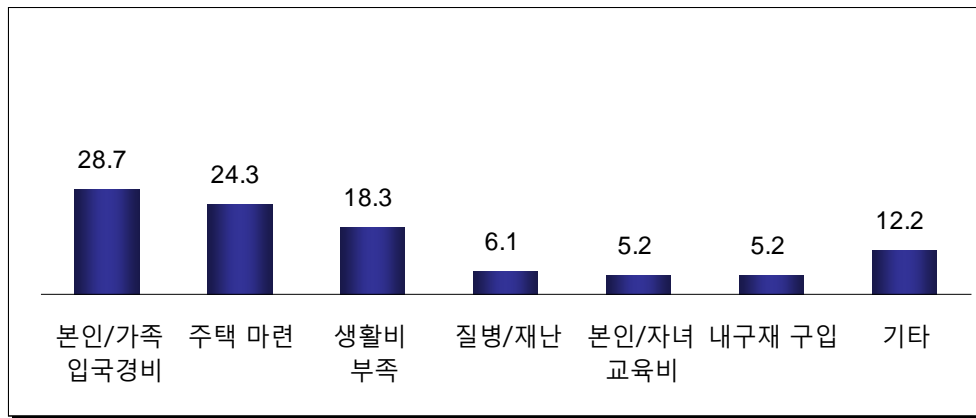
대체로 한국 입국 후 북에 남겨진 잔여 가족을 입국시키기 위해 우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²⁰⁾



<그림 3-5>에서와 같이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북한이나 중국에 두고 온 자녀나 가족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서 입국 경비를 시중 은행 계좌에 먼저 입금시키면 이중 한국-중국과 연계된 전문 브로커가 20-30%를 수수료로 공제하고 나머지 돈을 위안화나 달러로 환전해 북한 탈

북 브로커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림 3-6> 국내 정착 탈북자 가구 부채(단위: %)



* 자료: 송창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통일부 용역보고서), 118면.

국내입국 탈북자들은 본인 및 가족들의 입국 경비나 생활비 등을 해결하고자 절도범죄, 사기범죄, 문서 위변조 범죄, 마약범죄, 보험범죄, 성매매 등에 쉽게 빠져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¹²¹⁾

120) 위의 보고서, 118면.

121) 탈북자 범죄실태는 김윤영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표 3-15> 탈북자 범죄현황(1998-2007.1.31)

(단위: 명)

계	형법범									교통 사범	기타
	소계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 위변조	기타		
1,687	899	5	12	58	603	64	36	46	75	603	185

* 출처: 김용환, “북한이탈주민 정착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7. 22면 재인용.

<표 3-16> 탈북자 범죄현황(1998-2004.6)

(단위: 명)

연도별	형법범								특별법범		계
	살인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 위변조	기타	교통 사범	기타	
1998		1	2	12	4	2		5	33	26	85
1999		1	5	37	3	3	4	3	32	19	107
2000		1	2	32	2	2	2	3	42	16	102
2001		2	5	42	3	2	7	5	50	11	127
2002		3	7	69	5	5	4	9	79	25	206
2003	2	2	4	70	5	7	2	9	109	6	216
2004.6	1	0	5	81	3	3	3	7	82	9	194
누계	3	10	30	343	25	24	22	41	427	112	1,037

* 출처: 경찰청,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II), 2004, 585면(유정복 의원 요구자료); 이하섭, “보안경찰의 탈북자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2005, 23면.

첫째,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탈북자들 중에는 정부에서 지급한 사회정착 초기비용을 탈북비용, 중국이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에게 송금, 사기 등을 통해 탕진하게 됨으로써 극심한 생활고를 시달리게 되는 과정에서 절도, 사기, 폭행, 문서 위변조 등의 범죄 늪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둘째,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부 탈북자 중에는 마약범죄에 빠져들고 있다. 2007년 생활고에 시달리던 탈북자 가족 등 3명이 5만여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중국에서 밀반입했다가 경찰에 체포된 바 있고,¹²²⁾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2010년 1월 29일 아기 기저귀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한 탈북자 A씨(33)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의 부인 B씨(32·여)를 같은

37-40면을 참조할 것.

122) “마약 밀반입 체포된 탈북가족”, 연합뉴스, 2007.5.9

협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A씨 부부는 생활고로 인해 2009년 11월 중국에서 현지 공급자로부터 필로폰 260g을 구입한 뒤 생후 6개월 된 아들의 기저귀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들과 함께 중국 지린성으로 출국해 2,000만원을 주고 필로폰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비정상적이고 열악한 환경 하에 있는 중국체류 중인 탈북자들 중에는 조직폭력단의 마약운반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셋째, 한국 사회에 정착한 탈북자 수백 명이 연루된 대규모 보험사기 조직이 적발되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2010년 3월 24일 경기지방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탈북자 중 보험사기 의심자 674명의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겨 정밀 분석한 결과 264명이 지난 5년간 31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31억 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었다.¹²³⁾

〈표 3-17〉 보험사기 의심 탈북자 보험수령 금액

2005-2009.9 현재

이름	나이	보험계약건수	사고건수	보험금 수령액(원)
김00	49	9	11	382,000,000
김00	57	19	233	299,000,000
전00	55	27	268	140,000,000
오00	50	27	170	128,000,000
윤00	47	10	73	103,000,000
박00	37	15	133	95,000,000
조00	41	3	32	88,000,000
설00	46	2	38	79,000,000
박00	31	12	86	56,000,000
이00	58	3	45	52,000,000
계		127	1,089	1,422,000,000

* 자료: 금융감독원·경기경찰청; 중앙일보, 2010.3.25 재인용.

123) 경찰과 보험업계로부터 보험계약 건수, 보험금 지급현황, 심사서류 등을 넘겨받은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에서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을 이용하여 탈북자 674명에 대한 보험사기 가담 혐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가담자가 264명이었고, 그 중 1000만원 이상의 불법 보험금을 받은 탈북자가 61명이었으며, 1억원 이상도 5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탈북자 보험사기의 실체”, 중앙일보, 2010.3.25).

넷째, 일부 탈북 여성들 중에는 탈북브로커에 진 입국비용을 마련하거나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교적 돈 벌이가 쉬운 성매매 유혹에 빠져들고 있다. 2007년 7월 24일 탈북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모 스포츠마사지센터 업주를 입건하고 탈북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단체에 인계한 바 있다. 성매매 탈북여성 3명 가운데 2명은 2007년 1월 각각 탈북브로커의 도움으로 제3국을 통해 남한에 입국했다. 이들은 입국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의 입국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브로커가 건넨 자금은 이들의 발목을 죄는 ‘족쇄’로 작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 여성들 하나원 교육을 받고 나온 뒤 마땅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남한사회에 적응할 기회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입국 브로커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서 성매매 업소에 종사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다.¹²⁴⁾

다섯째, 탈북 브로커들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이다. 탈북자들 중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등 제3국을 거쳐 국내입국이나 서방국가로 망명하는 과정에서 탈북브로커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탈북 브로커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2006년 여동생(30)과 함께 사상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난민(難民) 지위를 인정받은 신00(35)씨가 2010년 4월 2월 남긴 자살 유서에 여동생 성추행문제, 지원금 지급 문제, 신상공개 문제 등을 제기하고 있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¹²⁵⁾ 이외에도 탈북브로커들에게 진 탈북비용을 청산하기 위해서 유흥주점 등 성매매에 내몰리기도 한다.

여섯째, 위장결혼을 통해 사례금을 받는 경우이다. 탈북여성들 중에서 경제적 빈곤과 건강상 문제로 중국인 남성과 위장결혼을 통해 사례금을 받고 불법 입국시키는 사례가 경찰에 적발된 바 있다. 2003년 북한을 탈출해 울산의 한 주택가 식당에 일하던 38살 김모 여인은 2006년 허위 혼인 신고서를 꾸며 4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중국인 남자를 국내에 입국시켰다 적발된바 있다.¹²⁶⁾

124) “탈북여성 입국 5개월만에 ‘성매매’”, 연합뉴스, 2007.7.24.

125) “미국 정착 1호 탈북자는 죽음으로 뭉 알리려 했나”, 조선일보, 2010.4.17.

126) “탈북자 위장결혼으로 사례금”, MBC 7시뉴스(뉴스와 경제), 2009.7.4.

2) 탈북청소년 사회일탈

탈북자들이 남한사회에 잘 융화되지 못하고 분리되는 현실은 탈북청소년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수령중심의 일인독재 체제에서 생존하기 위해 형성된 상호 감시와 비판의식, 심각한 식량난을 해결하고자 탈북 과정에서 형성된 절도 및 폭력성 등의 나쁜 습관 등으로 국내 입국 후 자유주의 법치주의 남한문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 겪는 나이나 학력 차이, 정체성 등이 심리적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사회일탈 현상을 낳게 한다.¹²⁷⁾ 이외에도 탈북청소년들은 사선을 넘어 무사히 남한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이 가시기 전에 문화적 차이와 편견, 자신을 향한 동정어린 눈빛과 외로움, 가난과 향수병이라는 다양한 사회적 장애물에 맞닥뜨리면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일탈의 길을 걷다 쉽게 범죄의 덫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일탈 현상은 2000년 1월 1일부터 2002년 8월 31일까지 폭력 및 절도 등과 관련된 범죄는 7건에 불과할 정도 성인탈북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 시기만 하더라도 탈북청소년들은 범죄조직 가입이나 결성, 학교 불량서클 활동 등의 동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간 흐름에 따라 사회일탈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표 3-18> 탈북청소년 범죄발생 현황

(2000.1.1-2002.8.31 현재)

구분	죄명	형법범						특별법범		
		강간	상해	폭력	절도	사기	문서위변조	기타	교통	기타
7건		0	0	4	1	0	0	0	2	0
남 7건(여 0건)				4	1				2	
처 분	징역(0)									
	벌금(0)									
	기소유예(2)			2						
	처분미상(5)			2	1				2	

* 자료: 경찰청, 2002 : 이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2002년도 정기국회 정책자료집, 2002, 58면 재인용.

127) 즉, 탈북청소년들이 편입학을 할 때 자신의 연령보다 낮은 학년 배치나 학력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의사소통의 상이성에 따른 남한학생들로부터 따돌림과 놀림 등은 자기비하감과 열등감을 낳게 한다.

최근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으로 인한 같은 연령에 비해 낮은 학업수준, 질병과 열악한 신체조건, 언어 등 문화차이 등으로 급우들부터 따돌림에 따른 학교 부적응은 학업의 중도 포기과 함께 다양한 사회일탈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일탈행위는 남한청소년의 사회일탈 유형과 유사한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

첫째, 유흥비 마련을 위해 금품을 갈취하는 유형이다. 2003년 입국한 한 촉법탈북청소년은 초등학교 6학년에 다니다 적응하지 못하고 중퇴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금품갈취, 절도, 폭력 행위로 적발되어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져 약 13개월 수감되었다. 이 탈북청소년을 담당했던 신변보호담당관은 자신들의 말도 잘 안 듣는다고 한다. 특히, 담당교사나 신변보호담당관은 자신이 맡고 있는 탈북청소년들을 자식처럼 대하려 하지만 이들이 안받아준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¹²⁸⁾

둘째, 주민등록증 위조와 해커범죄 유형이다. 양모씨는 2001년 16살때 단독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하고 전전하다 2006년 탈북브로커로부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제의에 속아 신분증을 위조해 중국으로 잠입하였다. 이후 자의만 타의만으로 중국인과 재중동포들이 주축이 된 해커 조직에 가담하여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국내 9개 온라인 업체에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가해 홈페이지를 마비시키고, 그 가운데 2개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동 공갈 등)로 지난 7월 21일 구속 기소된바 있다.¹²⁹⁾

셋째, 이성과 동거 생활을 하는 경우이다. 2006년 가족과 함께 남한에 온 탈북청소년 A군(20)은 남한학생이면 고3에 해당되지만, 2008년 경기도 모 중학교에 입학하였다. 이미 성인에 접어든 A군은 자신보다 한참 어린 중학생 급우들과

128) 탈북청소년 신변보호경찰관과의 면담, 2009.10.21; 박윤숙,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해결방안”, 교정담론, 제3권 2호, 아시아 교정포럼, 2009.12, 10-14면 재정리.

129) “20代 탈북자, 中 해커집단 가담까지… 꿈 찾아 왔는데 지독한 생활고에 범죄 소굴로”, 국민일보, 2010.7.21.

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다 탈북 여자 친구와의 동거생활을 하며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려 일탈행위에 빠져들고 있다.¹³⁰⁾

넷째, 돈벌이 수단으로 성매매를 하는 유형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이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위기청소년 실태점검 및 구호활동’을 시행한 결과, 탈북청소년 이모(17)양은 용돈을 벌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한 사실을 적발하여 구호했다.¹³¹⁾ 이외에도 탈북여성 성매매 알선 브로커의 소개로 탈북여성 박모(22)씨와 A씨(24, 2008년 입국한 함경북도 출신) 등은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탈북 비용과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본인들을 상대로 성매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¹³²⁾

다섯째, 학교 내에서 집단 패싸움이다. 학교생활 내에서 반감과 비하, 불신을 견디지 못한 탈북청소년들은 '폭주족', '일진회'를 만들어 남한 학생들과 패싸움을 벌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¹³³⁾ 특히, 탈북청소년들은 어려움에 처한 친구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칭찬 받을 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동료가 급우와 싸움하다 맞게 되면 주변 탈북청소년들을 규합하여 집단으로 상대방을 응징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 의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이 학교 내에서 경험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불만과 분노로 확산될 경우 집단적 폭력적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서의 폭력의 형태는 넓은 의미에서 개인적 형태의 폭력으로서 각종 사회일탈 현상과 범죄를¹³⁴⁾ 포함하며,

130) 김봄내, “일탈행위 빠지는 ‘10대 새터민’ - 견딜 수 없는 편견과 외로움 “뛰쳐나가고 싶다”, 헤이맨뉴스(<http://www.heymannews.com>), 2009.1.12.

131) “용돈 벌러 性 파는 청소년 크게 늘어”, 노컷뉴스9(<http://www.cbs.co.kr>, 2010.10.1 검색), 2009.1.29.

132) “탈북여성들의 탈선 무더기 일본원정 성매매”, 연합뉴스, 2010.10.22.

133) 탈북청소년이 일반 학교에 들어가 북한 출신임이 알려질 경우, 남한학생들로부터 "북한으로 돌아가라.", "남남북녀라고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너 때문에 내가 군대에 가야 하느냐.", "빨갱이자식", "북한 애들은 싸움 잘 한다는데 한번 붙어볼까." 등의 반감과 놀림, 편견과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다(“탈북청소년들 '왕따'와 반감에 시달려 이해, 배려, 포용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2008.9.9).

134) 대한변호사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 동안의 북한이탈주민 일탈현상이 크게 늘어나 절도와 폭력이 62건, 교통법규 위반 59건, 행정법규 위반 31건 등 모두 152건의 법규위반 사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집단적 폭력의 형태로 발전될 경우 유럽사회의 소수민족에게서 나타나는 폭력적 집단행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¹³⁵⁾ 심리학자 거어(Ted. R. Gurr)가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이론¹³⁶⁾에서 지적한 “만약 사회적 욕구 형성도가 사회적 욕구만족도를 훨씬 초과할 경우 여기에는 결과적으로 사회·심리적 좌절감이 형성되고, 이것은 곧 폭력적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섯째, 학교부적응과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이다. 실제 중학교를 중퇴하고 대안학교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심모 씨(20)는 2009년 6월 자살한 바 있다.¹³⁷⁾ 탈북청소년들은 초기 정착 단계에서 우울, 불안감의 심리적 상태가 범죄 및 자살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한다. 양희창 간디학교 교장은 2008년 11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입법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탈북청소년들은 초기 정착 단계에서 우울, 불안 정도가 남한 청소년들보다 훨씬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우울, 불안 심리적 상태는 외부 자극에 과잉 대응하거나 범죄 및 자살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탈북청소년들 100명 중 29명은 약물치로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한 중증 불안을 겪고 있으며, 8.9명(100명 당)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³⁸⁾

135) 유지용,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공간으로부터의 분리와 사회적 이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 19면.

136) 거어는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시키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열망적 박탈감(Aspirational Drprivation), 점감적 박탈감(Decremental Deprivation), 점진적 박탈감(Progressive Deprivation) 등이 그것이다. '열망적 박탈감'이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의 기대치는 계속 상승하는 데 비해 이 기대치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체재능력이 한정적인 데서 빚어지는 박탈감이다. 이러한 박탈감은 이제 막 근대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발생하는 형태이다. '점감적 박탈감'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기대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대치를 받쳐 줄 국가의 능력이 점차 퇴보하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박탈감이다. 또한 '점진적 박탈감'이란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 삶의 조건이 개선되어 왔고, 앞으로도 점진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점진적 개선이 실제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을 때 나타나는 박탈감이다. 북한이탈주민 일반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에서 열망적 박탈감과 점감적 박탈감이 공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즉 남한사람들과의 비교에서 그들의 기대가치는 계속 상승하는 데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그들의 기대를 미치지 못하는 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박탈감의 형태이다.

137) “학교중퇴에 자살까지... 탈북 청소년들 꿈이 없어요”, 동아일보, 2009.10.28.

이외에도 최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일부 탈북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 흡연이나 폭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사회에서 음주, 게임 중독, 무면허 오토바이 폭주 행위, 절도나 폭력, 방화 등 다양한 유형의 사회일탈을 자행하고 있다. 한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청소년들이 나쁜 친구를 만나면 학교적응은 불가능하며 한 번 일탈행동하게 되면 다음부터 쉽게 범법행위를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¹³⁸⁾ 탈북청소년의 범죄행위가 아직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들을 방치할 경우 우리사회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면서 사회불안과 갈등 요소로 작용하여 치안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38) 양정아 기자, “탈북 청소년 28.1%, 고등교육과정 중도 탈락”, 데일리 NK(<http://www.dailynk.com>), 2008.11.13.

139) 강서경찰서 탈북청소년 신변보호경찰관과 면담, 2010.9.11.

IV. 탈북청소년 신변보호 지원체계 및 문제점

1. 신변보호 지원 현황

가. 탈북자 보호의 법적 근거

탈북자의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009.1.30 일부개정, 이하 법률)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7.31 일부개정, 이하 시행령),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신변보호 지침」(2008.6.9 전부개정, 이하 신변보호지침) 등에 근거하고 있다.

<표 4-1> 탈북자보호 및 정착지원법 연혁

연도	법률명	기본이념
1962년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특별원호법'	체제 선전
1978년	'월남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체제 선전, 독자 규율
1993년	'귀순 북한동포보호법'	소외 계층 보호
199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인도주의
2007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2009.1.30 일부개정	자립·자활 지향

시행령 제42조(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신변보호 대상자라 함은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탈북자(법 제2조2)를 의미한다. 탈북자 정착지원 시설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법 제2조3), '보호금품'이라 함은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의미한다(법 제2조4).

나. 신변보호 체계

1) 신변보호의 의미

보호대상자 신변보호¹⁴⁰⁾라 함은 거주에 편입된 탈북자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 위해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기관(경찰관서)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변보호경찰관(보안경찰관)은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하는 역할을 하면서, 북한 공작원이나 국내 친북세력 등의 보복테러 가능성에 대비하고 위장귀순 등 보안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2) 신변보호경찰관서

신변보호지침 제4조 참조

140) 법률 제9조에 의하면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혐의자,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등은 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탈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1.30).

3) 신변보호기관의 지정 절차

경찰청장은 관계기관(통일부장관)이 거주지 편입 탈북자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에 협조해야 하고(시행령, 제42조), 지방경찰청은 거주지에 편입한 탈북자에 대하여 신변보호경찰관서를 지정하고, 신변보호경찰관서장은 보호 대상자의 신변위해도 등급에 따라 신변보호경찰관을 지정한다.

4) 신변보호 내용

신변보호지침 제9조 참조

5) 신병인수 확인

신변보호지침 제5조

6) 신변보호대상 등급

신변보호지침 제10조 참조

7) 등급별 신변보호경찰관 지정

신변보호지침 제9조 참조

8) 신변보호 기간

신변보호지침 제8조 참조

9) 신변보호 종료자 관리

신변보호지침 11조 참조

10) 해외여행자 신변보호

신변보호지침 제12조 참조

2. 신변보호 지원의 문제점

가. 신변보호경찰관과 탈북자와 관계

탈북자의 남한사회 적응실태 분석과 대응책에 연구는 많았지만, 탈북자들의 사회적응 및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이 경험한 지원·관리상의 어려움, 인간관계,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분석하는 작업은 미진한 실태이다. 물론, 탈북자들이 신변보호경찰관과의 맺는 인간관계가 그들의 남한 사회적응 정도의 전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탈북자가 신변보호경찰관과 맺은 ‘인간관계’는 ‘남한사회 적응’의 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¹⁴¹⁾

1) 탈북자와 맺는 인간관계

탈북자와 신변보호경찰관과의 인간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설문조사의 어려움이나 보안상의 한계 때문에 기존에 분석된 자료들을 재인용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즉,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¹⁴²⁾과 “보호경찰관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¹⁴³⁾은 2년간 탈북자들을 담당했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172명의 경찰관이 응답한 결과로써, 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 두 논문은 2년간의 신변보호경찰관 경험 172건의 사례에 대한 통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는데 의미가 있다. 신변보호경찰관들은 자신들이 맺은 탈북자와 인간관계가 비교적 보통 관계였다고 생각하였고(관계평점, 2.96),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명하게 호전되었다고 보는 경우(호

141) 전우택 외, “보호경찰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1, 211면.

142) 전우택 외,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4권 제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21-64면.

143) 전우택 외, “보호경찰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203-216면.

전형)가 가장 많았으므로(72명, 41.8%) 전체적으로 인간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⁴⁴⁾

첫째, 탈북자들의 연령, 학력, 입국경로에 따라 보호경찰관과의 인간관계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이 경우 △탈북자들의 연령이 10대였을 때 가장 좋은 관계를 보인 반면에 30대, 40대는 가장 나쁜 인간관계를 보였다. △탈북자들의 학력이 낮을수록 인간관계가 더 나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다.¹⁴⁵⁾ △탈북자들이 남한에 들어 온 경로에 있어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들어온 경우가 중국이나 러시아, 제3국을 경유하여 온 사람들에 비하여 더 좋은 인간관계를 보였는데,¹⁴⁶⁾ 이는 제3국을 경유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중간 기착지인 중국과 동남아 국가 등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면서 겪게 되었던 갈등이나 충격,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 다른 탈북자로부터 제공 받은 정보 등에 따른 나쁜 경험이 국내 정착과정에서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표 4-2〉 탈북자와 담당경찰관 연령에 따른 인간관계 평점 분포

탈북자 연령	경찰관연령					
	30대		40대		50대	
	숫자	평점(SD)	숫자	평점(SD)	숫자	평점(SD)
10-19	3	3.78(0.84)	2	4.00(0.00)	0	-(0.00)
20-29	11	3.00(0.86)	17	3.12(0.74)	14	2.93(0.89)
30-39	10	2.87(0.82)	41	3.03(0.92)	19	2.53(0.87)
40-49	1	3.33(0.00)	11	3.00(0.70)	4	3.25(0.74)
50-59	1	4.00(0.00)	9	2.56(1.09)	5	3.00(0.33)
60-69	1	3.00(0.00)	10	3.07(0.86)	10	3.27(0.84)
평균	27	3.08(0.82)	90	3.02(0.82)	54	2.84(0.87)

* 자료: 전우택 외, “보호경찰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208면.

144) 이하의 내용은 전우택 외,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과 “보호경찰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을 재정리한 것임.

145) 인민학교 출신자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적인 자원이 적어 새로운 직장을 가지기도 어려웠고, 자본주의 체제를 이해하고 적응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6)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들어 온 탈북자들은 탈출 과정이 비교적 짧아서 제3국에서 겪는 정신적 갈등이나 충격, 다른 탈북자들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비교의식이 적은 가운데에 곧 바로 남한사회에 적응을 시작한 것과 연관되어 보였다. 반대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하여 국내입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장기간에 거친 자일수록 경찰관과의 관계에서도 호전이 느리며 전체적인 관계형성도 나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신변보호경찰관들의 연령대에 따라 그들이 탈북자들과 맺는 인간관계는 차이가 있다. 즉, 보호경찰관의 나이가 젊을수록 관계는 더 좋았으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조기에 해결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경찰관들의 연령대에 따라 더 적합한 탈북자 연령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향후 탈북자를 담당할 경찰관 배정에 하나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 신변보호경찰관들이 탈북자들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하여 사용한 방법이 인간관계 결과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신변보호경찰관이 직접적인 ‘문제 해결자’¹⁴⁷⁾로서의 역할보다 ‘교육자’로서의 역할 규정을 한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탈북자들의 남은 정착에는 어떤 형태로든 “애로사항 해결”이라는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한 문제는 탈북자 지원 시민단체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도록 하고, 경찰관은 그들이 그런 단체와 연관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¹⁴⁸⁾

넷째, 신변보호경찰관들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양상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에는 불안과 불신, 사회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되었으나 후기에는 자립의지 부족, 이기주의, 돌출행동 등이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었다.

2) 탈북자와의 인간관계 형성의 어려움

탈북자들이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새로운 사회에서 정착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첫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신변보호경찰관들이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이들이 거주지에 배치되면 일정기간 경찰관의 신변보호를 받게 되는 과정에서 담당경찰관을 통하여 남한사회를 보고 접근하고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은

147) 이러한 경우 대체적으로 탈북자의 요구가 주도적이고 보호경찰관은 끌려 다니는 식으로 그들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주지 못하는 좌절감과 함께 그러한 노력과 고생을 몰라준다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48) 전우택 외, “보호경찰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213면.

한명의 탈북자와 한명의 경찰관 사이의 일대일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관계는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때로는 두 사람 간에 오해와 긴장, 그리고 대립과 갈등을 겪기도 한다.¹⁴⁹⁾ 이러한 어려움은 경찰관의 업무 수행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3) 탈북자들의 신변보호 활동 이해 부족

필자가 몇몇 탈북자와 인연을 맺는 것은 20년이 되어왔지만, 아직도 이들의 의식성향을 이해하기 힘들다. 탈북자를 비롯한 탈북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폐쇄된 1인 독재체제 하에서 김일성·김정일이 요구하는 유일사상과 흑백논리의 교육을 받아 온 결과, 전술한 바와 같이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공격적, 비판적 성격 의식구조는 물론 의식구조의 양면성, 강한 집단 의식, 봉건적 가치, 타인을 비판하는 탁월한 능력 등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을 보호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신변보호담당관은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특히, 탈북자들은 신변보호경찰관이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특이 사항 정보수집, 신상 변동사항 및 범죄가담 등을 파악하는 것을 자신들을 감시하는 감시자로 오해하여 불안불신하고 있다. 물론, 국내정착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들의 인식은 호전되기도 하나, 적응 초기에는 주로 불안과 불신, 사회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이 나타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립의지의 부족, 이기주의, 돌출행동, 경제생활 미숙 등의 새로운 문제가 나타난다. 즉, 북한에서 습득한 기본적인 의식구조의 성향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동서독 통일이 20년이 지난 오늘날 까지 동서독 주민들은 서로 ‘오시’(Ossi-동쪽놈)와 ‘베시’(Wessi-서쪽놈)라 비방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와 초기관계에서 불안과 불신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변보호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그들의 의식구조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무엇보다

149) 제성호,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형사정책연구원, 1996, 38-39면.

중요하다. 그들과의 많은 대화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경찰관과 남한사회에 대하여 오해 또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지 않도록 정확하고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¹⁵⁰⁾

나. 과잉보호의 문제

탈북청소년을 비롯한 탈북자들이 거주지에 편입하게 되면, 신변보호경찰관이 이들의 보호와 지원활동 과정에서 지나친 관심과 보호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탈북자들이 정착지에 편입하게 되면 거주지 관할 경찰관서장은 보안경찰관을 신변보호경찰관으로 지정하여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 요소 제거 및 방지와 신변보호에 필요한 사항 파악, 애로사항 파악 및 관련기관 통보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¹⁵¹⁾ 보안경찰관은 지정받은 탈북청소년 및 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해 그들과 수시로 접촉함으로써 그들 간에는 매우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 즉, 보안경찰관은 법규에 의한 지원관리 이외에도 그들의 취업, 결혼, 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적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 현행 탈북자 지원 시스템 하에서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여부는 보안경찰의 지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일부 탈북여성들은 신변보호담당관의 보호에 대해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침해로 인식하고 있어 과잉보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¹⁵²⁾

<사례>

“탈북여성들의 경우 혼자 살면, 담당형사들이 따뜻하게 대해주느라고 자주 찾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이 과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보았지만 우리(북한사람들)들은 그런 걸 내놓고 이야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 여자한테도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여18세)

“경찰들이 사생활까지 깊이 알고 있고 ... 가끔은 이게 아닌데, 음흉한 사람인가 느끼게 될 정도로 있을 때도 있어요. 저는 담당형사들이 간섭하는 게 정말 보호해주려고 하는 건지 ... 감사하긴 해도 어떤 때는 우리에게 뭐 뽐아낼게 있어서 저런가 할 정도로 간섭하는가 싶을

150) 전우택 외, “보호경찰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213-214면.

151) 신변보호는 신변위해요소에 따라 상시적 보호나 비상연락망 유지 등의 보호방법으로 구분하여 보호대상자의 신변위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지속한다.

152) 박호성 외,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5, 104면.

때는 정말 답답해요. 여자한테 물어볼게 있고, 안 물어 볼게 있지, 만나는 남자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잤는가? 이런거까지 그냥 다 물어봐요”(여 23세)

“우리 사촌언니의 경우 흔히 여기에 왔다. 그러다보니 담당형사가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경우가 있다. 거의 매일 전화를 한다거나, 전화해서 뭐하냐? 밥 먹었냐? 등을 묻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쑥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여자 혼자 사는데 그렇게 자꾸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 자체가 아주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여 23세)

* 출처: 박호성 외,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104-105면.

다. 보호담당관의 역할분담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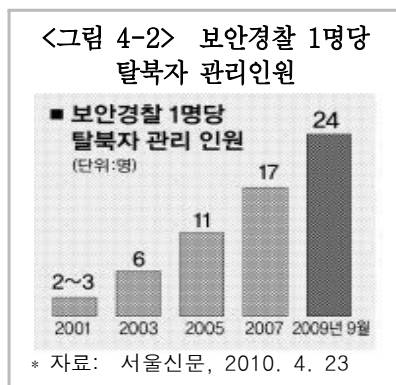
최근 국내입국 탈북자가 2만 명을 넘어섬에 따라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 신변보호경찰관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 정부는 경찰을 통한 신변보호 전담제를 운영하여 담당 보안경찰이 신변보호 기간 중 신변안전은 물론 행정적·법적 지원 등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상담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을 통해 탈북자들이 지역사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정보 및 자료제공,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종교·민간단체 등과의 결연·후원추진, 취업보호 대상사업체 알선, 직업훈련 등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탈북자의 급증에 따라 인력과 예산 등의 부족으로 그들의 활동은 미흡한 수준에 있다. 이로 인해 보안경찰은 신변보호 이외의 지원업무까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보호담당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상호간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고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해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를 받을 수 있으나 비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보다는 관련기관에 연결해 주거나 정보제공 및 신변보호에 국한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탈북자 스스로 필요한 자원을 찾아 나서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자립심이 형성될 수 있으며, 다른 보호담당자와 기관들도 전문가로서 관심과 책임감을 가질 것이다. 또한

거주지 보호담당자는 현재 조직되어 있는 탈북자지원지역협의회를 지역사회복지회관의 전문 사회복지사와 함께 운영하되 협의회위원들의 다양한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취업보호 담당자는 다양한 직업정보와 훈련 정보에 정통한 전문가가 되어야 하며, 탈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는 반드시 담당자와 멘토를 지정해야 한다. 결국 보호담당자 상호간 명확한 업무 분담과 협력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보호담당자와 민간지원기관이 통합적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민간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탈북자가 밀집 거주하는 지역에는 ‘지역사회 정착도우미’나 전담 멘토를 배치하여 사회편입 초기부터 정착에 성공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호·관리해야 할 것이다.¹⁵³⁾

라. 신변보호경찰관의 인력 및 예산 부족

현재 정부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신변보호담당관, 거주지보호담당관, 취업보호담당관제는 인력부족과 제도미비, 관리부실로 형식적인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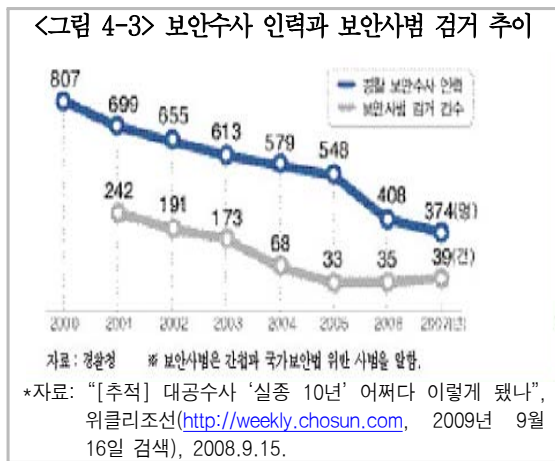
1990년 중반 이후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이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0년 11월 11일 현재 2만명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의 신변보호를 관리하는 보안경찰관의 수는 지난 10년간 700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의 경우 보안경찰 1인당 평균 29명의 탈북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다. 신변보호대상자 ‘가’급과 ‘나’급은 보안경찰 1명씩을 배정하여 신변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

에 실제적으로 신변보호 담당 보안경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신변보호경찰관으로 지정된 보안경찰관은 탈북자 보호·지원 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방첩 및 사회안전 분야의 업무까지 겸하고 있어 신변보호 업무가 형식적으로

153) 장동수, “남한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석사논문, 2006, 80면.

변질될 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즉, 보안경찰의 업무는 탈북자 관리뿐만 아니라 간첩 색출 등의 방첩활동, 중요 좌익사범에 대한 수사, 경호활동 등 범위가 매우 넓다. 이외에도 탈북자들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경찰의 수요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20일 북한 정찰총국 공작원 김명호(36)와 동명관(36)이 위장탈북한 후 황장엽씨를 암살하려다 정보당국에 의해 체포된 바 있다.¹⁵⁴⁾

따라서 탈북자 신변보호의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신변보호전담 보



안경찰의 인력과 예산확보는 반드시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다. 그러나 근래 보안경찰의 인력과 조직¹⁵⁵⁾이 현저히 감축되어 왔다.¹⁵⁶⁾ 즉, 전국 보안경찰의 수는 1998년 3,732명에서 매년 대폭 감소해 2008년 1,804명까지 감소하였다.

154) “황장엽의 목을 따라 김영철(北 정찰 총국장), 특수요원들에게 직접 지시”, 조선일보, 2010.4.21.

155) 1994년에는 보안 5과가 폐지되었고, 1999년 5월 24일에는 보안 4과도 폐지됨으로써, 보안 1과, 2과, 3과 등 3개의 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156) 1998년 전체 경찰관 중 보안경찰은 4.6%에서 2004년에는 2.1%로 현저히 감소되었다(경찰청,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I), 경찰청, 2004, 691면).

V. 탈북청소년 신변보호 개선 방안

1. 신변보호경찰관 역량 강화

탈북자들의 국내입국은 2010년 11월 현재 2만명을 넘어 서고 있다, 탈북자의 증가와 비례하여 탈북청소년 역시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전술한 바 와 같이 최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북청소년들은 일부이긴 하지만 절도와 폭력, 방화, 성매매, 금품 갈취, 해커범죄 등 성인탈북자와 유사한 범죄¹⁵⁷⁾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신변보호경찰관의 역할과 임무가 중요한 업무로 부상되고 있다 즉, 보안경찰관의 역량이 강화될 때만이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이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 신규인력 및 예산 확보

2009년 8월 말 현재 보안경찰은 1,818명으로 10년 만에 보안경찰의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¹⁵⁸⁾ 그럼에도 신규 보안경찰관의 충원 없이 급증하는 탈북자들의 신변보호업무를 기존 인력으로 대체하다보니¹⁵⁹⁾ 보안경찰의 업무과중과 더불어 기본업무 수행의 공백까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보안경찰의 충실한 기본업무와 탈북청소년의 원활한 신변보호 및 사회이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탈북자 신변보호 전담 신규인력과 예산확보는 반드시

157) 최근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탈북자들은 본인 및 가족들의 입국 경비나 생활비 등을 해결하고자 위장탈북 간첩, 절도범죄, 사기범죄, 문서 위·변조 범죄, 마약범죄, 보험범죄, 성매매 등에 쉽게 빠져들 뿐만 아니라,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58) “보안수사 ‘눈치 10년’ 끝”, 동아일보, 2009.9.15.

159) 탈북자 신변보호를 위해 신변보호인력을 신규인력으로 충원하지 않고 기존 보안외근인력을 차출하여 대체하고 있다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보안경찰의 신변보호 업무수행은 탈북자 청소년들의 일탈 행위를 예방하여 안정적인 사회정착은 물론 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남북한 통일과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수당의 현실화나 인사 등과 관련한 사기 진작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도 해야 한다.

나. 탈북청소년 전담 전문요원 양성

현실적으로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자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의 의식구조를 잘 이해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 양성이 필요하다. 현재 탈북자 신변보호는 보안수사요원을 차출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탈북청소년의 의식성향을 잘 파악하지 못하여 친근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보안경찰관 중 심리학 전공자나 북한학 전공자를 선발하여 재교육을 실시한 후 탈북청소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탈북청소년 신변보호경찰관으로 선발된 자들을 심리학이나 북한학을 전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변보호 전문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경찰 교육기관에 별도의 탈북자 ‘신변보호과정’을 개설하여 재교육과 주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보안국은 우선적으로 신변보호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탈북자 관리전문화를 위해 신변보호경찰관서별로 탈북자 관리전담팀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¹⁶⁰⁾

다. 탈북자 지원 전담부서 신설

보안경찰의 활동영역은 정치적, 시대적, 안보적 상황 및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아왔다. 그렇지만 보안경찰활동이 국가의 존립유지와 관련되는 직접적인 경찰작용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절대로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 될 사안이

160)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164-165면.

다. 따라서 보안경찰은 변화하는 국내외적인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들에 적극 대처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해야하는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보안경찰의 인력과 조직이 현저히 감축되어 왔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이든 형식적 의미의 경찰작용이든 간에 다양한 위협 요소들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문화된 보안 및 정보기관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탈북자들이 급증함에 따라 그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폭증되고 있다. 이러한 보안환경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탈북자 보호·관리를 전담하는 가칭 ‘동포지원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향후 통일에 대비하여 경찰청 보안국 내에 탈북자는 물론 국외거주 동포를 지원·관리하는 1개과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칭 ‘동포지원과’에서는 탈북자 관리(1계), 탈북자 합선 및 수사(2계), 재외동포 지원·관리(3계) 등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경찰청 내 보안과 내에는 ‘동포지원계’를 신설하고, 탈북자 밀집지역(1,000명 이상) 관할 경찰서에는 보안과 내에 ‘동포지원계’를 신설하여 운영하면 될 것이다. 동포지원계 내에는 탈북청소년을 상담 지원하는 전문요원을 반드시 배치할 필요가 있다.

2. 신변보호경찰관의 효율적 배치와 의식 재고

가. 맞춤형 신변보호경찰관 배치

1)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인원배치

탈북자들은 국내입국 후 사회적응 기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의 입장도 점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신변보호경찰관과 탈북자의 관계는 연령, 성별, 학력, 탈출 경로, 종교 등에 따라 서로의 인간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

을 고려하여 탈북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따라 신변보호경찰관을 지정하여 관리해야 할 것이다. 즉, 10~20대의 탈북청소년은 30대의 신변보호경찰관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외에도 40대 신변보호경찰관은 30-40대, 50대 신변보호경찰관은 50-60대의 탈북자를 담당하게 되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¹⁶¹⁾ 이를 위해 탈북자와 관련한 DB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신변보호경찰관과 탈북자들의 원만한 인간관계가 성립되어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¹⁶²⁾

2) 동일종교 신변보호경찰관 배치

탈북자나 탈북청소년들은 탈북과정, 제3국 체류, 국내 정착과정 등에서 종교단체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으면서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 종교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종교는 사회적응의 심리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할 수 있고 탈북자들의 외로움, 우울감, 불안감 등을 치유할 수 있어 사회정착에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자가 지향하는 종교를 가진 신변보호경찰관을 배정하여 종교 활동 통한 심리적 안정감을 증대시키는 한편, 그들의 심리상태를 파악하여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할 수 있다.¹⁶³⁾

나. 신변보호경찰관의 의식 재고¹⁶⁴⁾

1) 탈북자 의식구조 이해¹⁶⁵⁾

인간은 사회화를 통해 자기가 속한 집단의 가치관, 규범, 사회적 역할, 행동양식 등을 습득하는데, 이는 비교적 오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지며 쉽게 바뀌지 않는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체제의 감시와 통제 하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한 후,

161) 전우택 외, “보호경찰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213면.

162)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166면.

163) 위의 글, 167면.

164) 위의 글, 167-170면.

165)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184면.

중국 등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각종 인권침해를 당하다 국내에 입국한 경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입국 후 사회적응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거주지에 편입된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들의 의식구조는 개인의 존중, 자유, 박애, 사랑, 봉사, 진실, 성실, 정의 등의 가치관보다는 북한체제에서 습득한 획일적·공격적·폐쇄적·비관적 가치체계와 집단주의, 투쟁, 비방 등을 더 중요시하는 의식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의 의식구조 잔재는 거주지 생활과정에서 가치관의 혼란,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몰이해, 이기주의, 경직된 사고방식에 의한 사회성과 자립의지 부족, 가족을 두고 온 죄의식 등에 의한 정서장애 등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신변보호경찰관은 감시자로 오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외에도 신변보호경찰관은 자신들의 언행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열등의식을 가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특히, 동서독이 통일 된 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중의 하나는 서독주민들이 갖는 우월의식과 동독 주민이 갖는 열등의식은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을 수 없다.

2) 탈북청소년과의 접촉 엄격화

인권침해 논란은 사람과 사람사이의 직접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 많다. 신변보호경찰관 역시 탈북청소년과의 관계 속에서 신변보호나 애로사항 청취 명목으로 개별적 접촉과정에서 지나친 온정주의로 인한 인권침해의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과 접촉은 신변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탈북청소년 보호는 사회일탈예방이나 학교적응 등과 관련한 조언자로서 그들과 인간적 신뢰성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단독 입국한 탈북여성 청소년과의 접촉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신변보호경찰관이 보호기간 중 필요에 따라 거주지 확인을 위해 방문이나 늦은 시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3. 사회일탈 예방책¹⁶⁶⁾

최근 탈북청소년들 중 일부이기는 하지만 남한사회 정착과정에서 범죄환경에 노출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탈북청소년들은 생사를 넘어 남한에 입국했기 때문에 남한사회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것이라는 기대심리와 함께 남한사회의 새로운 법이나 사회문화 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범죄환경에 노출되고 있다.

가. 검증시스템 강화

최근 위장탈북 간첩이 검거되면서 사회문제로 비하되고 있다. 이러한 사건은 대다수의 선량한 탈북자들까지 범죄자나 간첩으로 오인하게 만든다. 국내입국 탈북자가 2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범죄 경력자나 위장탈북자들이 신분 세탁을 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탈북청소년 역시 북한이나 탈북과정에서 범죄환경에 노출된 경험을 가진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국내입국 전 범죄경력이 있는 탈북청소년은 국내 범죄경력자 관리수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련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변보호경찰관은 필요시 축적된 자료의 수시 열람을 통해 정착초기단계에서부터 세심한 관리를 해야 한다. 즉, 탈북청소년들의 학교부적응에 따른 일탈행위를 차단하는 등의 범죄예방책에 주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학업을 중도 포기하고 가출이 잦은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찰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최근 북한의 대남공작기관이 위장탈북 간첩을 남파시켜 사회적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북한당국은 위장탈북 청소년을 남파시켜 공작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질적으로 북한은 인민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영재들만을 평양 제1중학교에¹⁶⁷⁾ 입학시켜

166)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160-162면 재정리.

컴퓨터 교육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킨 후 대학에 진학시키거나¹⁶⁸⁾ 중국으로 유학을 보낸다.¹⁶⁹⁾ 이러한 인원을 다시 컴퓨터 전문학원에서 집중적인 훈련을 시켜 최정예 요원으로 양성한 후 사이버 공작기구(심리전부대)에 배치하고 있다. 결국, 20대 전후의 청소년을 컴퓨터 최정예 요원으로 대남 사이버공작 기구를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들을 위장 탈북시킨 후 국내에 침투시켜 대남사이버 투쟁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실제로 김정일은 2004년 3월 21일 “남측의 심리전에 반공격적으로 대처하자”라는 당 중앙위원회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조선 도피주민(탈북자) 속에 우리의 공작인원을 침투시켜 그들이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대책안이 나온 것은 실효성이 있는 안이라 생각한다”고¹⁷⁰⁾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의 위장탈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2차 검증시스템을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국가안보는 국가존망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2차 검증시스템은 사회적인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자문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최근에 제안한 대로 적들의 심리전에 반(反)공격(대응)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조선으로 도피해간 사람들이 남조선에 가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 모두 적들의 심리작전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조선 도피주민(탈북자) 속에 우리의 공작인원을 침투시켜 그들이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한 대책 안이 나온 것은 실효성이 있는 안이라 생각합니다. 특수 부서들에서 이미 이러한 대책을 세운 것이 있지만 소극적인 안으로서는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조직적으로 짜고 들어 적들이 심리전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짚을 뚫고 들어가 보다 효과적인 반공격을 가해야 합니다. 대책안대로 단계를 설정하여 적극적인 공세를 벌리도록 하여야 합니다(김정일 총비서 말씀, 2004년 2월 27일 전문)”¹⁷¹⁾

167) 일반 중학교에서는 수학과목 시간에 컴퓨터를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168)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김책공업종합대학, 이과대학, 평양기계대학 등 몇몇 대학에만 컴퓨터 관련 학과가 개설돼 있다.

169) 박진우, “체제 선전·해커부대… 北 ‘사이버 무기’로”, <세계일보>, 2007년 2월 12일자.

170) “김정일 탈북자 대상 공작원 지시”, 연합뉴스, 2004.12.3; 조정진, “김정일 탈북자 간첩 투입 지시”, 세계일보(<http://blog.segye.com> 2010.6.11 검색), 2004.12.2.

171) 조정진, 위의 기사.

나. 범죄피해 매뉴얼 작성 배포

탈북자들의 생활지도, 인간적 신뢰구축, 준법정신과 자립정신의 교양, 범죄행위 등을 관리하는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청소년들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친구와 의리를 중요시하는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적응 초기 과정에서 학교폭력 집단과 연계될 가능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최근 탈북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등의 범죄피해가 빈발하게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형사법과 탈북자들의 범죄 및 피해 사례들을 ‘매뉴얼’로 제작하여 탈북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다. 범죄예방 프로그램 지원

탈북청소년들이 안성시 ‘하나원’에 위치한 ‘하나들학교’에서 소정의 사회적응 기초 교육을 받지만,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한 교육 내용은 미흡하다.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의 범죄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서 하나원의 사회적응 교육과정에 법률 강의와 무료 법률상담 외에도 범죄유혹에 대한 ‘역할연기’와 ‘퀴즈대회’ 등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개발하여 지원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변보호경찰관서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괴롭힘이나 조직폭력배 및 불량청소년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범죄 유혹 등에 대한 사례집을 작성 배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라. 지방·민간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탈북청소년들의 성공적인 학교적응과 사회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신변보호경찰관서장은 탈북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예방하여 건전한 시민이자 통일역군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지역 교육청은 물론 시·군·구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211명), 민간단체(67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26개), 정착도우미(2,000여명)¹⁷²⁾ 등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탈북청

소년들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마. 탈북청소년 쉼터 제공

탈북자 밀집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변보호경찰관서 파출소나 지구대 내에 ‘탈북청소년 쉼터’를 개설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성인탈북자는 물론 탈북청소년들 역시 북한생활에서 보안원(경찰)의 권위적이고 비인권적인 횡포를 경험한 부정적인 잔상 때문에 경찰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경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켜 경찰관과의 유대감을 조성함은 물론 경찰체계나 치안환경에 대한 무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쉼터’ 제공은 필요하다. ‘탈북청소년 쉼터’에는 생활법률이나 경찰활동 및 치안환경 등의 홍보용 동영상을 통해 범죄 및 범죄피해 예방을 모색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컴퓨터나 동영상(문화생활, 영화 등) 자료를 비치하여 우리문화에 동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탈북청소년들이 쉼터에 오면 편안한 휴식공간이자 자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주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 치안환경 적응 프로그램 지원

탈북청소년들이 국내 정착 후 사회일탈을 경험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국내 치안환경의 몰이해에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서는 과거 북한에서 생활했던 생활습관에서 빠른 시간 내에 탈피하여 새로운 치안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할 때만이 탈북청소년들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범죄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미래의 통일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신변보호경찰관서는 탈북청소년들이 새로운 치안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의식전환 동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동화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남북한 법률과 경찰조직 비교, 치안환경, 자유와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 등으로 구성하면 될 것이다. 동화교육 담당자는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이나 북한

172) 정착도우미는 현재 대한적십자사(14개 지사) 및 하나센터(4개), 종합사회복지관(6개) 등 24개 단체 소속 자원봉사자 총 2,000여명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학을 전공한 경험이 있는 신변보호경찰관을 선발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외에도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기법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브레인스토밍은 ‘두뇌 폭풍’이란 의미 그대로 새로운 치안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와 같은 특정한 주제 또는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져 생각나는 아이디어를 쏟아 내놓게 하는 방법이다. 즉, 남한 치안환경 적응문제에 관한 해결책으로 특정 주제에 대하여 탈북청소년들의 다양한 사고를 브레인스토밍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 전직 신변보호경찰관 활용

현재 700여명의 신변보호경찰관이 2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탈북청소년을 비롯한 탈북자들을 보호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탈북청소년들의 사회이탈 현상의 대부분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을 중도 포기한 후 PC방 등을 전진하다가 같은 또래의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전직 보안경찰관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들은 현장에서 탈북자들의 신변을 보호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탈북자들과 친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애로사항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전직 신변보호경찰관을 탈북청소년들의 멘토로 지정하여 방과 후 생활지도 등을 지원할 경우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경찰관의 가중한 업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전직 보안경찰관들의 활용에 따른 업무활동비이나 사기 대책에 대한 별도의 대책도 필요할 것이다.

4. 신변보호활동의 과학화

가. 탈북청소년 전용 홈페이지 구축

탈북청소년들 역시 남한의 청소년들과 다를 바 없이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찾아 자신들이 처한 입장과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국내 탈북자 단체들은 각기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탈북청소년들을 위한 별도의 홈페이지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특성상 자신들만 어울릴 수 있는 사이버공간을 원한다. 따라서 신변보호경찰관서는 지역 교육청이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탈북청소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그들의 애로사항이나 의견 등을 수렴한 후 학교적응 실태를 파악하여 일탈행위 예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신변보호경찰관은 탈북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다양한 정보와 첩보를 획득할 수 있어 범죄환경 노출을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탈북청소년 전용 홈페이지에 게재된 탈북 경로 등에 대한 체험수기 등을 분석하여 탈북브로커들의 범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신변보호의 매뉴얼화

보안경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분야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듯이, 탈북청소년 신변보호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신변보호경찰관은 학업중단 후 일탈행위 탈북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관리단계별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학교나 유관기관에 제작·배포하여 업무지침서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신변위해 요인 차단

북한당국에 의한 탈북자 신변위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북한당국은 ‘탈북자 사살’을¹⁷³⁾ 지시한데 이어서, 탈북자를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첫째가는 처단대상”로 규정하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갈 협박한 바 있다.¹⁷⁴⁾ 실제로 지난 4월 20일 북한 경찰총국

173) 한미정보 당국에 의하면 김정일은 2009년 5월 “탈북자들은 사살하거나, 체포시 10년간 노동교화형에 처하라” 지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안용현, “김정일 탈북자 사살 지시”, 조선일보, 2010.1.26).

174) 북한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 2010년 3월 23일 담화; “우리민족끼리”, 2010.4.5.

공작원 김명호(36)와 동명관(36)이 위장 탈북하여 국내에 입국한 후 황장엽씨를 암살하려다 정보당국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수사과정에서 ‘체포는 곧 변절’이라는 표현을 쓰며 “지금이라도 세상 밖에 나가면(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¹⁷⁵⁾ 따라서 신변보호경찰관서는 성인탈북자와 같이 고위급 인물 자녀나 지명도가 있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집중관리체제 방안을 도입하여 신변위해 요인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무국적 아동의 보호¹⁷⁶⁾

탈북자가 급증하기 시작했던 1990년 중반부터 최근까지의 15년간은 탈북자 문제가 우리사회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면, 향후 15년은 탈북자 2세 문제가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지난 15년 동안 중국에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 사이에서 태어난 무국적 아동들은 이제 청소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조만간 우리와 함께해야 할 청소년이자 미래의 자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신분과 생존권 보장, 교육 및 의료서비스, 심리 및 정서안정 대책 등이 요구되고 있다. 물론, 중국 등 무국적 아동 체류국에 합법적인 지위를 요구하는데 있어 외교적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국적 아동 대다수가 체류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탈북자들을 망명자로 인정하지 않고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로 인식하여 강제송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의 강제송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사안이기에 하다.

해외공간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의 기본업무¹⁷⁷⁾ 중 하나가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일이다. 탈북자 역시 재외국민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보호 지원해야 할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재외국민의 하나인 탈북자는 헌법 제2조 2항¹⁷⁸⁾에 따라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즉, 국외체류 탈북자 역시 헌

175) “北의 딸 생각에... 황장엽 암살조의 눈물”, 동아일보, 2010.7.2.

176)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 149-150면 재정리.

177) 경찰 주재관은 주로 국제범죄 공조수사나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78)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외체류 탈북자나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

법에 의한 우리국민 뿐만 아니라 탈북자 관련 법률은 북한주민이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동법 제3조)할 경우, 이들을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보호(동법 제4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분위기를 조성을 통해 탈북자가 갖는 국적의 2중과¹⁷⁹⁾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한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경찰 주재관은 독자적인 경찰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해당 국가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어 해당국 경찰의 무관심이나 비협조적 태도에 대해 싸워야 할 때도 있다. 따라서 탈북자들이 재외공관에 보호를 요청할 경우나 무국적 아동을 보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향후 예상되는 북한의 급변사태와 붕괴로 예상치 못한 통일로 북한주민들이 대량 유입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들을 안정적으로 조기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국적 아동에 대한 다음과 같은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한시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중국인과 사실혼을 맺고 있는 탈북여성과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당국과 협조해야 해야 한다. 무국적 아동들의 교육 및 의료 수혜를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중국의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정부차원에서 호구를 부여한다고는¹⁸⁰⁾ 하

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179) 탈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자 국제법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공민이라는 2중성을 지니고 있다. 남북한은 유엔동시 가입국으로 국제사회에서 국가주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한 동시 수교국에 탈북자나 탈북청소년이 체류할 경우 한국정부의 관할권 행사의 한계뿐만 아니라 해당국에도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정부의 재중탈북자에 대한 영사보호권 행사는 소극적이고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한계가 따른다.

180) 국제교육증진 기금의 창립자인 케이트 조우 미 하와이대 교수는 자유아시아방송(2008.9.3)에서 “중국 라오닝성 환런(桓仁) 지방정부가 2007년 말 2명의 탈북여성에게 임시 영주권을 발급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탈북여성들의 합법적 체류를 허용함으로써, 한국과 미국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지방정부를 설득하여서 성사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자유아시아방송, 2008.9.3).

나, 출생신고를 위해 필요한 관련자료(병원발급 증명서 등) 마련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궁핍한 가정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¹⁸¹⁾ 최근 중국 정부가 북한 여성이 중국 남성과 사실혼 관계를 통해 낳은 자녀의 경우 수수료 500위안만 내면 호적을 만들어준다는 방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5,000위안 정도의 뇌물을 파출소(공안국)에 내야만이 아이의 호적취득이 가능했다. 그것도 파출소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 중 한명이 탈북자로 들통 날 경우 벌금 및 처벌을 감수해야 했다.¹⁸²⁾

둘째, 국외체류 무국적 탈북아동 문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해당국과 협조해야 한다. 무국적 아동들을 지원·보호하기 위해서 이들이 체류 해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유엔차원의 지원활동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범정부차원에서 국제사회 및 구호단체들이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공론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셋째, 탈북여성들의 문제는 곧 바로 무국적 아동 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탈북여성들이 합법적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당국과 협조해야 한다. 중국에 불법체류 중인 탈북자 중 상당수가 인신매매된 여성들로¹⁸³⁾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무국적 아동으로 남는다. 따라서 탈북여성과 중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무국적 아동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탈북여성들의 인권문제와 인신매매에 대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기구나 NGO와 연계하여 중국내 인신매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181) 탈북자 000 면담, 2007.4.6;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347면 재인용.

182) 양정아, “무국적 탈북 2세…국제사회 도움 절실”, 데일리 NK, 2007.4.27.

183) 김영권, “중국, 최근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의 소리방송, 2009.6.10.

VI. 결론

전술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실태와 신변보호경찰관의 지원체계를 분석한 후 탈북청소년들의 보호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탈북청소년들은 일인독재체제의 정치적 탄압과 배고픔에서 벗어나고자 목숨을 걸고 부모와 함께 또는 홀로 중국으로 탈출하는 순간 불법체류자로 낙인 찍혀 열악한 환경 하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입국이나 서방세계로의 망명을 위해 동남아 등 제3국으로 이동하지만, 이들 역시 불법체류자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¹⁸⁴⁾ 국외체류 탈북자가 갖는 밀입국자라는 신분적 한계로 인해, 최대 1만 5천여 명의 탈북청소년이 무국적 상태로 생존을 위해 유랑하며 인신매매나 노동력 착취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들 중 부모의 인도나 구호단체에 의해 국내에 입국한 자는 2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 정착한 탈북청소년 역시 상이한 체제와 이념, 생활방식이 전혀 다른 우리사회에 적응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이들은 사회정착과정에서 남북한 교육제도의 이질화에 따른 학제차이, 북한체제의 경제난과 탈북과정에서 학업 중단으로 인한 학업손실, 사회주의 생활습관을 비롯하여 북한에 두고 온 가족 걱정과 그리움, 건강상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탈북과정에서 겪은 육체적·정신적 피폐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우리사회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착과정에서 사회적 냉대와 차별로 인해 ‘주변인’으로 머물며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감 정도가 남한 청소년들보다 심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기력증과 자포자기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의 부정적 심리적 상태는 외부 자극에 대한 과잉 반응을 보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적개심으로 표출되어 일탈행위로 이어지고 있었다.

184)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174면.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를 토대로 신변보호경찰관의 지원 체계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보호 개선방안으로 신변보호경찰관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배치와 의식 재고, 탈북청소년의 사회일탈 예방책, 신변보호 활동의 과학화, 신변위해 요인 차단, 무국적 아동의 보호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탈북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정착은 향후 예상되는 남북한 사회통합이 갖는 의미를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이 우리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면, 남북한 양 체제는 물론 중국 등 제3국의 경험을 다한 이들이 건전한 국민으로 성장하여 향후 통일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갈등 해소와 사회적 혼란을 예방할 수 있는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¹⁸⁵⁾ 그러나 이들이 사회정착에 실패할 경우, 또 다른 남남갈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여 치안환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소식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해져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대해 품고 있던 동경도 사라질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통일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탈북청소년들의 남한사회 정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¹⁸⁶⁾

따라서 탈북청소년들이 국내에 정착한 후 측근에서 가장 많은 접촉을 하며 그들을 후원(조언)하고 보호하는 신변보호경찰관의 책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탈북청소년들은 ‘어떤 신변보호경찰관은 만나느냐에 따라 자기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진다’고 한다. 여기서 국가경찰(보안경찰)이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할 임무 중 하나가 탈북청소년들이 남한사회에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통일을 염원하고 준비하는 많은 시민단체들과 종교단체들은 정부와 함께 탈북청소년들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탈북

185) 김운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348면.

186) 위의 책, 6면.

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경찰관의 역할은 단순 신변보호로 그들을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동서독의 통일된 힘이 동독탈출 주민들에 대한 서독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정책에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탈북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우리사회 정착은 모습은 남한사회 적응의 선각자로서, 향후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 남북주민 통합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정치, 사회, 문화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혼란을 예방하는 치안활동의 매개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모든 국민들이 그들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⁸⁷⁾ 결국, 탈북 청소년들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우리사회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이루어 질 때 사회의 안정화는 물론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또 다른 아픔을 겪을 수 있다.¹⁸⁸⁾

끝으로 이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탈북청소년들의 통계자료나 적응실태에 대한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언론매체나 인터뷰 자료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통한 미시적인 분석을 할 수 없어 총론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이 연구가 신변보호경찰관의 실무활동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보며, 남북한 교류나 남북통합에 대비하여 정부당국의 다양한 채널을 동원한 탈북청소년들의 실태자료 확보와 공개로 각론적 차원의 선진화된 연구가 이루어질 기대해 본다. 오늘도 북한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또는 ‘나 홀로’ 생존과 보다 나은 삶을 찾아 목숨담보로 탈북을 시도하여 국내입국을 희망하고 있다.¹⁸⁹⁾

187)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 102면 참조.

188)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 178면.

189) 김윤영,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 114면.

【참고 문헌】

1 단행본

- 경찰청, 2004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II), 경찰청, 2004.
- 고유환 외,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 선인, 2006.
- 김경준 외, 북한이탈 청소년 종합대책 연구 III -대안학교 재학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8.
- 김수암 외, 북한인권백서 2007, 통일연구원, 2007.
- 고상두 외, 북한의 대량탈북난민 발생시 서울시의 역할,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 김동선, 하나님의 선교,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 조용관·김병로, 북한 한걸음 다가서기, 예수전도단, 2007.
- 김윤영, 국내외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호 개선 방안 연구(2010년 상반기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10.6.
- 김윤영,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2008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8.
- 김윤영, 북한의 수사제도 운용에 관한 연구(2009년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9.
- 김윤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안경찰의 효율적인 지원방안 연구(2007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7.
- 김윤영, 북한주민의 대량탈북 사태에 대비한 대응책 연구(2008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8.
- 김윤영, 외국인밀집지역 범죄실상 및 치안확보 방안 연구(2007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7.
- 김윤영, 해외체류 탈북자의 보호대책에 관한 연구(2009 연구과제), 치안정책연구소, 2009.

- 김윤영·조용관,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도서출판 한울, 2009.7.
- 대한변호사협회, 2006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5.
- 박종철 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민족통일연구원, 1996.
- 박종철·허문영·김보근,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통일연구원, 2008.
- 박호성 외,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에 관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5.
- 송창용,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 실태조사(통일부 용역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9.12.
- 백영옥, 북한이탈주민 대책 연구, 세종연구소, 1998.
- 오경섭 외, 2006 북한인권백서, 대한변호사협회, 2006.
- 우승지, 탈북자문제와 한반도의 국제정치, 외교안보연구원, 2005.
- 오윤경 외, 21세기 국제법 질서, 박영사, 2001.
- 이금순, 북한주민의 국경이동실태: 변화와 전망, 통일연구원, 2005.
- 이금순 외, 북한이탈주민 적용실태연구, 통일연구원, 2003
- 이금순 외, 북한인권백서 2009, 통일연구원, 2009.
- 이우영 외,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종합적 정책방안 연구, 통일연구원, 2000.
- 임순희 외, 북한인권백서, 통일연구원, 2006.
- 정주신, 탈북자문제의 인식, 한국학술정보, 2007.
- 조선말대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92.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제114호, 2008.3.
- (사)좋은벗들, 2006-2007 북한 사회변화와 인권, 좋은벗들, 2007.11.
- (사)좋은벗들 편,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좋은벗들 엮음, 1999.8.30.
- (사)좋은벗들 편,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서, 정토출판사, 1999.
- 최규엽,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 국가인권위원회, 2004.12.1.
- 통일부,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2010.

통일연구원, 북한인권: 국제사회의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통일연구원, 2007.

2 논문

고유환, “권두언: 분단정권 수립 60년을 되새기며”, 지방행정, 대한지방행정공제회, 2008.

길은배·문성호,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문제와 정책적 함의”, 청소년학 연구, 제10권4호, 한국청소년학회, 2003.

금명자·권해수·이희우, “탈북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6권2호, 한국심리학회, 2004.

김구섭, “북한대량난민 발생가능성과 동화정책방향”, 합참, 제5권, 1995.1.

김문수, “탈북에서 입국까지”(탈북자입국지원 법률개정 자료집), 2004.

김병로, “북한으로부터의 대량난민문제에 대한 대책”, 한일저널, 제31권, 1997.6.

김성규,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실상과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2008.

김성순, “난민의 대량적 유출사태에 대한 배경과 그 대응방안고찰”, 인도법논총, 제19권, 1999.4.

김수암, “해외체류 탈북자 실태와 보호방안”, 남북통일시대에 대비한 탈북자의 역할, 북한민주화위원회 제1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북한민주화위원회, 2008.2.15.

김영자, “중국 내 탈북여성들의 인권실태와 정책제안”, 북한인권시민연합편, 제2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자료집, 북한인권시민연합, 2000.

김윤영, “북한의 범죄 실태와 보안(경찰)기관의 대응책”, 교정담론, 제3권 1호, 아시아교정포럼, 2009.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 (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진환, “국제법상 탈북자의 인권보호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태천, “북한이탈주민의 대량난민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법학논고, 제14권, 1998.
- 김화순, “탈북대학생의 학업실태와 진로”, 제1회 북한이탈주민대학생 세미나, 북한이탈주민후원회, 2010.
- 董承哲, “새터민의 效率의定着支援方案에 관한 研究”, 동국대석사논문, 2005.
- 박상봉, “중국내 탈북자 현황, 정책 및 전망”, 새로운 차원에서 접어든 북한난민 문제의 해결과 접근,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3.
- 박선경,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 석사학위, 1999.
- 박운숙,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06.
- 박운숙, “북한이탈 청소년의 일탈행동과 해결방안”, 교정담론, 제3권 2호, 아시아 교정포럼, 2009.12.
- 박은주, “최근 탈북자의 국내외 망명동향과 정책적 대안”,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2006.
- 박기륜,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 동국대 박사논문, 1997.
- 북한자유이주민, 동남아시아 난민 의 국제사회역할,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 IPCNKR 총회 자료집, 대한민국국회, 2008.10.24~26.
- 신영호, “대량탈북사태와 사법적 대응”, 법제연구, 제12호, 1997.
- 신창대, “대량탈북이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비방향”, 중앙대석사학위논문, 2005.
- 안재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실태와 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석사논문, 2005.
- 양수려, “재외탈북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양운철, “출장보고서 요약”, 세종연구소, 2009.3.2.
- 양칭밍(ang Chengming), “중국의 탈북자문제와 해결책”,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엄, 국가인권위원회, 2004.12.1.
- 이기영, “하나원에서의 북한이탈청소년 교육생 사회적응력 제고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통일부, 2000.

- 이향규, “새터민 청소년 학교 적응실태와 과제”, 교육비평, 가을-겨울 제1호, 2006.
- 이향규, “새터민 청소년 학교 적응 실태와 과제”, 인간연구, 가톨릭대학 인간연구소, 2007.
- 임연선, “위기에 처한 탈북민보호 구출과 그 의의”, 탈북난민보호UN청원 1,180만명 서명 전달 4주년기념 세미나 자료집, 탈북난민보호·구출의 현주소,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 2005.5.17.
- 유가효·방은령·한유진, “한국사회에서 탈북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사회적응-초기사회 적응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5호, 2004.
- 윤인진, “탈북자의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경인발전연구원 공동정책심포지엄, 기로에 선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주무부처 조정, 지자체·민간이양 가능한가?, (사)북한인권시민연합(사)경인발전연구원, 2007.12.10.
- 양영은, “학업중단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논문, 2009.
- 안재윤,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실태와 관리대책에 관한 연구”, 영남대석사논문, 2005.
- 오준교, “탈북자문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민족통합을 향한 거시적 접근”, 고려대석사학위논문, 1998.
- 유지웅, “북한이탈청소년의 교육공간으로부터의 분리와 사회적 일탈”, 치안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2005.
- 유지웅,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배제 연구: 소수자의 관점에서”, 한국중앙연구원 박사논문, 2005.
- 윤여상, “중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실태 조사 보고서”, 생명과 인권, '98 겨울 No10, 1998.
- 윤여상, “채러시아 탈북자 실태와 지원방안”, 제1회 북한인권·난민문제 국제회의 발표 자료, 1999121-3(<http://cafedaumnet/Nambuktongil/ghl/302>; 2009년 10월 3일 검색).
- 윤여상, “해외 탈북자 실태와 대책”, 北韓, 2008년 5월호, 북한연구소, 2008.

- 윤인진, “탈북자의 적응실태와 정착지원의 거버넌스 패러다임”, 경인발전연구원 공동정책심포지엄, 기로에 선 탈북자 정착지원 정책주무부처 조정, 지자체·민간이양 가능한가?, 사북한인권시민연합·사경인발전연구원, 2007.12.10
- 이광수, “재외 탈북자의 국내법적 지위”, 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18.
- 이금순, “관련국의 탈북자정책: 변화와 전망”, 평화연구, 제28집, 경북대학교 평화문제 연구소 200312윤여상, “북한이탈주민 실태와 지원체계: 중국지역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제2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이수정, “북한이탈청소년 현황과 대책: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탈북자 및 북한인권 문제의 대안과 전략, 통일학연구원 봄학술회의, 2009.
- 이신화 외, 북한 난민 대량발생사태의 대응방안: NGO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23회 북한동포의 생명과 인권 학술토론회 자료집,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3.12.5.
- 이신화, “재외 탈북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 현황 과제, 국회탈북자 공청회 발표논문, 2002.9,
- 이영환, “해외 북한이탈주민들의 실태와 인권”, 국내외 탈북자 실태변화와 금후 과제, 사북한전략센터, 2009.6.5.
- 이장희,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18.
- 이정우, “대량난민 발생 가능성과 한국측 대응방안”, 平和研究, 경희대 국제평화연구소, 1997.
- 임연선, “위기에 처한 탈북민보호 구출과 그 의의”, 탈북난민보호UN청원 1,180만명서명 전달 4주년기념 세미나 자료집, 탈북난민보호·구출의 현주소, 탈북난민보호운동보부, 2005.5.17.
- 임채완, “중국 내 탈북자의 성격분석”, 한국동북아논총, 제19집, 한국동북아학회, 2001.
- 이장희, “재외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재외 탈북자의 법적지위 국회인권포럼, 2008.9.18.
- 이정우, “북한의 대량난민 발생가능성과 우리의 대응방안”, 통일로, 제107권, 1997.7.

- 장동수, “남한의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조선대석사논문, 2006.
- 장복희, “무국적 탈북자의 법적 지위”, 재외 탈북자의 법적 지위, 제34회 국회인권포럼 세미나 자료집, 2008.9.18.
- 장문강, “새터민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 -다문화 교육 관점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논문, 2006.
- 장 용, “대량탈북사태의 전략적 대응방안”, 자유, 제374권, 성우회, 2004.
- 장창호, “탈북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사회사업적 고찰”,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제성호, “북한 난민 대량발생사태의 대응방안: NGO의 활동을 중심으로”, 제23회 북한동포의생명과인권 학술토론회,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3.12.
- 제성호, “북한 귀순자 보호 및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형사정책연구, 제7권 1호, 형사정책연구원, 1996.
- 전우택 외, “보호경찰들의 탈북자 지원 경험 분석”, 신경정신의학, 제40권 제2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01.
- 전우택 외, “탈북자들과 보호경찰관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분석, 보호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제4권 제1호,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0.
- 정옥임, “해외 체류 북한자유이주민 현황과 대책”, 북한자유이주민, 동남아시아 난민 의 국제사회역할,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대한민국국회, 2008.10.24~26.
- John Grogan 영국 의원, “유럽지역 탈북자 난민 현황”, 북한자유이주민, 동남아시아 난민 의 국제사회역할, 제5차 북한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 대한민국국회, 2008.10.24~26.
- 제성호, “대량탈북자발생시 공법적 대응”, 법제연구, 제12권, 1997.6.
- 조명철, “북한의 해외진출 현황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7-3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7.23.
- 최명선·최태산·강지희, “탈북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상담 전략 모색”,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9권 3호, 한국놀이치료학회, 2006.

학습제강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한만길,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의 과제”, 북한이탈학생의 증가와 교육의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통일교육포럼, 2009.5.

한영진, “北 국경강화, 中 올림픽 대비 탈북자 3만명 체포 돌입”, 북한, 2008.3월호, 북한연구소, 2008.

황진수전신옥, “북한이탈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지원방안”,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8권 3호, 한국정책과학학회, 2004.

3 언론매체 및 기타

강서경찰서 탈북청소년 신변보호경찰관과 면담, 2010.9.11.

곽대중, 통일연구원 자문회의, 2005.6.24.

김봄내, “일탈행위 빠지는 ‘10대 새터민’ - 견딜 수 없는 편견과 외로움 “뛰쳐나가고 싶다”, 헤이맨뉴스(<http://www.heymannews.com>), 2009.1.12.

김소열, “자식 키워본 사람은 탈북고아 외면하지 말아야”, 데일리NK, 2008.9.5.

김영권, “중국, 최근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의 소리방송, 2009.6.10.

“김정일 탈북자 대상 공작원 지시”, 연합뉴스, 2004.12.3.

김정일, “당사업을 강화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2년 1월 1일”, 김정일 선집(12), 조선로동당출판사, 1997.

김필재, “태국 밀입국 탈북자, 3년새 10배 증가”, 프리존 뉴스 (<http://www.freezonenews.com>, 검색일: 2008.3.27).

“꽃제비 북한 장편소설에 등장”, 조선일보(<http://nkchosun.com/news/>; 2010. 9. 15 검색), 2001.10.4.

“보안수사 ‘눈치 10년’ 끝”, 동아일보, 2009.9.15.

- “北의 딸 생각에… 황장엽 암살조의 눈물”, 동아일보, 2010.7.2.
- “마약 밀반입 체포된 탈북가족”, 연합뉴스, 2007.5.9
- “12세 탈북소녀 남녘땅 첫 한가위 가슴 설레요”, 조선일보, 2009.10.1.
- 20代 탈북자, 中 해커집단 가담까지… 꿈 찾아 왔는데 지독한 생활고에 범죄 소굴로”, 국민일보, 2010.7.21.
- 안용현, “김정일 탈북자 사살 지시”, 조선일보, 2010.1.26.
- 양정아, “무국적 탈북 2세…국제사회 도움 절실”, 데일리 NK, 2007.4.27.
- 양정아, “[中 탈북여성 현지리포 ③] 무국적 탈북 2세…국제사회 도움 절실”, 데일리 NK, 2007.4.27.
- 양정아, “탈북 청소년 28.1%, 고등교육과정 중도 탈락”, 데일리 NK(<http://www.dailynk.com>), 2008.11.13.
- 연합뉴스, 2008.9.20.
- “용돈 벌러 性 파는 청소년 크게 늘어”, 노컷뉴스9(<http://www.cbs.co.kr>, 2010.10.1 검색), 2009.1.29.
- “우리민족끼리”, 2010.4.5.
- 자유아시아방송, 2008.9.3.
- 조정진, “김정일 탈북자 간첩투입 지시”, 세계일보(<http://blog.segye.com> 2010.6.11 검색), 2004.12.2.
- 조치현, “남북한 사회통합의 실현을 위한 주민교육의 기본방향”, 통일교육원 활성화 세미나 자료집, 1999.
- “중국, 최근 탈북자 단속 강화”, 미국의 소리방송, 2009.6.10.
- 최승진, “무국적 탈북 고아, 최대 1만 5천명 추산”, CBS 노컷뉴스, 2008.10.6.
- “탈북자 보험사기의 실체”, 중앙일보, 2010.3.250
- “탈북여성들의 탈선 무더기 일본원정 성매매”, 연합뉴스, 2010.10.22.
- 탈북자 000 면담, 2007.4.6.

“탈북청소년들 '왕따'와 반감에 시달려 이해, 배려, 포용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2008.9.9.

탈북청소년 신변보호경찰관과의 면담, 2009.10.21,

“탈북 청소년, 입국 초기부터 사회 진출까지 전방위적 교육지원 이루어진다. - 2009~2010년 탈북 청소년 교육 지원 계획' 발표-”(보도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8.13.

“학교중퇴에 자살까지... 탈북 청소년들 꿈이 없어요”, 동아일보, 2009.10.28.

학습제강 “자본주의사상문화적침투를 짓부시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리데 대하여”, 조선로동당출판사, 2002.

한겨레신문, 2005.1.12.

“황장엽의 목을 따라 김영철(北 경찰 총국장), 특수요원들에게 직접 지시”, 조선일보, 2010.4.21.

【부 록】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5. 민간단체 현황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09.1.30법률제0935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이 정치·경제·사회·문화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한다.

②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③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제5조 (보호기준등) ①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의 기준은 연령·세대구성·학력·경력·자활능력·건강상태 및 재산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대를 단위로 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의 보호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대책협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6>

제6조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①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9.12.28, 2009.1.30>

1.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보호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의2.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6>

③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1999.12.28>

④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보호신청등)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보호 기타 필요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제8조 (보호결정등)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 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제9조 (보호결정의 기준) ①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9.1.30>

1. 항공기납치·마약거래·테러·집단살해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혐의자
4.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
5. 국내 입국후 1년이 경과하여 보호신청한 자
6. 기타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에 따라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1.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30>

제1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자를 위하여서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1.21, 1999.12.28>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9.1.30>

③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제11조 (정착지원시설에의 보호등)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대장) 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가족관계·경력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7>

②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재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1999.12.28>

제13조 (학력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제14조 (자격인정) ①보호대상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1.26>

제15조 (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제16조 (직업훈련) ①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6,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제17조 (취업보호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실시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취업보호 실시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이를 정한다. <신설 2007.1.26>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④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취업보호대상자가 복한을 이탈하기 전에 지냈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⑤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⑥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전문개정 1999.12.28]

제17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①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9.1.30>

1. 삭제 <2009.1.30>

2.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부터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있다. <신설 2009.1.30>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본조신설 1999.12.28]

제17조의3 (영농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 등 영농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28]

제18조 (특별임용) ①북한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담당직무 및 경력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②북한의 군인이었던 자로서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가족관계등록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

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구·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5.17]

제19조의2 (이혼의 특례)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 중 북한에 배우자가 있는 자는 그 배우자가 남한지역에 거주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②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창설한 자의 배우자로 기재된 자는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개정 2007.5.17>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관할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혼청구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송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본조신설 2007.1.26]

제19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1.30]

제20조 (주거지원등)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전입신고일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개정 1999.12.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이를 행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의 설정이 금지된다는 뜻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1조 (정착금등의 지급)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여건 및 생계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6>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품 및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6>

④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착금은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07.1.26>

제22조 (거주지보호)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데 따른 애로사항의 해소 기타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제2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기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실태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제24조 (교육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기타 교육여건등을 고려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9.1.30>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제25조 (의료급여 <개정 2001.5.24>)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급여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제26조 (생활보호)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가 종료된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년의 범위내에서 동법 제7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제26조의2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07.7.23>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자 :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자 : 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금액은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가급연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의 매 1월은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③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26조의3 (생업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안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28]

제27조 (보호의 변경)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1999.12.28>

1. 1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종료 또는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그 기간의 단축·연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8.2.29>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보호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제28조 (신고의무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 전입일부터 5년간 주소·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의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28, 2008.2.29>

제29조 (비용의 부담) ①이 법에 의하여 행하는 보호 및 정착지원의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②국가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며, 그 과부족액은 추가로 교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제30조 (북한이탈주민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1999.12.28, 2009.1.30>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4. 기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후원회에 위탁하는 사업

②통일부장관은 후원회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③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후원회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②이 법에 의한 통일부장관의 권한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제32조 (이의신청) ①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12.28, 2007.1.26>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9.12.28>

제33조 (벌칙)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이 법에 의한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업무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얻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부칙 <제9358호,2009.1.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호결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이 법 시행일 당시 보호를 신청하지 아니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법 시행일 이후 1년 이내에 보호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7.31] [대통령령 제21658호, 2009.7.31, 일부개정]

통일부 (정착지원과)02-2076-1282

제1조 (목적) 이 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8>

제1조의2 (세대의 단위)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하는 세대의 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인 부부 및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부부를 포함한다) 및 직계혈족(직계혈족이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형제자매

② 제1항 각 호의 세대를 구성하는 보호대상자 사이의 관계, 보호대상자의 재산 상태, 사회적응 상태 또는 보호결정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세대로 보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7.31]

[시행일 : 2010.1.31]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통일부·외교통상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대통령실·국가정보원·국무총리실·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전문개정 2008.10.20]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협의회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3.31>

제4조 (소위원회) ①협의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의안과 관계있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로 구성한다.

제5조 (회의) ①회의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소위원회회의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을 차기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2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안건

제6조 (의견청취등) ①위원장은 협의회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서·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간사) 협의회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두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의 해당위원이 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8조 (실무협의회)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의안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의 실무협의회를 수시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부의 해당위원이 되고, 위원은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2.31>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할 사안에 따라 참석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보호신청)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6.28>

1.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2. 가족의 구성원이 나머지 가족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3. 기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보호신청사실 통보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 기타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하되,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1.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2.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②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을 받은 후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까지 보호신청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방법, 신변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제12조 (임시보호등의 내용) ①법 제7조제3항에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라 함은 보호신청이후 보호신청자에 대한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와 보호여부 결정등을 위한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방법·기간과 필요한 조치를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등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04.12.18>

제13조 (임시보호등의 결과통보) ①국가정보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보호 기타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후, 보호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사·자료를 추가로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14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 단서에서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7.6.28>

1.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압호부정사용죄 및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목적으로 있다가 전향의사를 표시한 자
2. 북한의 노동당·내각·군·사회안전성 및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북한체제 수호를 위하여 적극 활동한 자로서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전보장에 긴급하다고 판단하는자
3. 북한 최고권력자의 배우자 또는 그의 친인척
4. 국가안전보장에 밀접히 연관되는 첨단과학 기타 특수전문분야에 중요한 첩보를 가지고 있는 자

제15조 (보호결정등) ①통일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3.31>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보호를 신청한 기관에 있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당시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1998.12.31>

④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면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⑤ 제1항 단서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보호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보호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09.7.31>

제16조 (보호결정의 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호대상자로 결정할 경우 정치·외교적으로 대한민국에 중대한 어려움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제12조에 따른 임시보호 기간 중 다른 사람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시설을 손괴(損壞)한 자

3.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획득한 자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류국에서 억류(抑留)되거나 감금되는 등의 사유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체류국의 수용시설 등에 장기간 구금되는 등의 사정이 있었던 경우

3. 체류국에서 은둔하거나 도피하는 등의 사정으로 정상적 또는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정으로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체류국에서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④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법 제15조에 따른 사회적응교육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7.31]

제17조 (처우내용의 고지) 재외공관장등은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가 결정된 때에는 그의 권리·의무등 처우내용을 고지한다.

제18조 (보호의 재신청) 보호신청자중 보호가 거부된 자는 새로운 사실 관계자료나 증거자료가 있는 때에는 다시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제19조 (국내입국교섭등) ①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국내입국을 위한 당해주 재국과의 교섭 및 그의 신병이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법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외교통상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해외에 있는 보호대상자의 신병이송시기·방법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해요소가 현존하고도 명백한 때에는 국내입국즉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0조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보호대상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숙박시설·관리시설·교육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③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

제21조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 ①통일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심리안정, 애로사항해소 기타 자립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착지원시설내에 심리·법률·직업·고충분야상담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착지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호대상자의 건강·심리·언행등에 특이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즉시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④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⑤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정착지원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3.31>

제22조 (보호대상자의 다른 정착지원시설로의 이송)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로 그를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3조 (임시신분증명서 교부)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각각의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임시신분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신분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9.3.31>

[전문개정 1998.12.31]

제24조 (협조요청등) ①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정착지원을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②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에게 동 시설의 경비·치안유지등에 대한 협조를 요

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제25조 (보호금품의 지급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생활에 필요한 보호금품을 개인별로 지급한다. 다만, 세대를 구성한 때에는 세대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금품의 지급기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6조 (등록대장) ①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등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사본을 반기별로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③국가정보원장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 신원 및 북한이탈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기타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종료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가정보원장의 통보 내용과 등록대장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9.7.31>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23조 및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제출받은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그 사본을 반기별로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⑤등록대장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제27조 (학력인정기준 및 절차) ①보호대상자가 북한 또는 외국에서 이수한 학력은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인정한다.

②법 제13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으려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98조

의2 및 제98조의3에 따라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③제2항 본문에 따라 학력인정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09.7.31>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학력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제28조 (자격인정절차)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를 당해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확인서를 송부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 여부 및 자격인정을 위하여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이하 "보수교육등"이라 한다)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통일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④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격인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자격인정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07.6.28>

⑤제4항에 따른 자격인정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자격인정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07.6.28>

제29조 (보수교육등의 실시)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자격인정을 받는 데에 필요한 보수교육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해당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보수교육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자격인정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교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6.28]

제30조 (사회적응교육 등 <개정 2009.7.31>)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이하 "기본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7.31>

② 통일부장관은 기본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자가 국민으로서 기본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등 각 분야의 교과과정을 마련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응교육(이하 "지역적응교육"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7.31>

④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주지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각종 상담 및 보호대상자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연계 등을 포함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9.7.31>

⑤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지역적응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적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⑥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가 희망하거나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사회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대상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7.31>

제31조

[중전 제31조는 제35조의3으로 이동<2000.1.28>]

제32조 (직업훈련신청등) ①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자(이하 "보호대상자등"이라 한다)는 직업훈련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한 보호대상자등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내의 교육훈련시설에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노동부장관, 중소기업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하 "노동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대상자등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

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3개월 이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7.6.28, 2009.7.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협조를 요청받은 노동부장관등이 보호대상자등에 대한 직업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제32조의2 (훈련수당의 지급)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직업훈련기간동안에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2.6.3>

②직업훈련수당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33조 (직업지도) ①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능력 및 적성에 맞는 취업과 기능및 경력등에 적합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의 실시
2. 직종소개·근로조건·고용동향등 직업정보의 제공
3. 각종 기능자격 검정안내등
4. 적정 직업훈련기관에의 알선등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에 관한 지원
5. 기타 직업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과 기본적인 적응에 관한 지원

②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의 실시를 요청할 수있으며, 요청을 받은 노동부장관등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제34조 (고용촉진지원)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그의 학력,경력, 기능소지 여부등을 수집·정리하여 대장을 작성·비치함으로써 민간기업체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제34조의2 (고용지원금의 지급 등) ①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최초로 취업

한 날"이란 보호대상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한 날을 의미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날을 최초로 취업한 날로 본다. <신설 2009.7.31>

②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6.28, 2009.7.31>

1. 취업보호기간 동안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2. 노령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서 통일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③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고용지원금(이하 "고용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취업보호대상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지원금신청서에 임금대장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를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고용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분기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7.6.28, 2009.7.31>

④제2항에 따라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은 통일부장관은 고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18, 2007.6.28, 2009.7.31>

⑤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1. 사업주인 취업보호대상자가 본인의 고용을 이유로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2. 사업주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⑥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09.7.31>

[본조신설 2000.1.28]

제34조의3 (우선구매) ①법 제17조제5항에서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07.6.28>

1. 연간 평균 7인 이상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

2. 1년 이상 월 평균근로자수의 7퍼센트 이상을 취업보호대상자로 고용할 것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단체로부터 우선적으로 구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8]

제35조 (취업알선) ①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취업을 알선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취업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2.6.3, 2007.6.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노동부장관등과 협의하여 신청인의 직업훈련정도와 북한에서의 경력을 고려하여 취업을 알선한다. <개정 2000.1.28, 2002.6.3>

③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8>

제35조의2 (취업보호의 제한) 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1>

1.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6월
2. 취업보호대상자가 법 제1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② 법 제17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09.7.31>

[본조신설 2000.1.28]

제35조의3 (영농정착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의 영농교육훈련실시 또는 농업현장실습지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2000.1.28, 2008.2.29>

1. 북한에서 농업계 대학·전문학교, 농업계 고등학교등의 재학기간이 1년이상인 자
2. 협동농장등에서 농업기술을 지도한 경력이 1년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력이나 자격을 가진 자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실습을 마친 보호대상자중 영농의지가 확고한 자를 농업인후계자로 선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후계자선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31조에서 이동<2000.1.28>]

제36조 (공무원의 특별임용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북한이탈당시 북한의 각급 행정기관에 재직하고 있던 자 또는 통일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1998.12.31>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특별임용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19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신청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각급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행정안전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등은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④행정안전부장관등은 보호대상자를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특별채용에 부과되는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제37조 (군인의 특별임용)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은 「군인사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6.28>

제38조 (주거지원)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의연령·세대구성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임대에 필요한 지원[알선 및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말한다]을 할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 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금 중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9.7.31>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4.12.18, 2009.7.31>

1. "가"지역 :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을 말한다)
2. "나"지역 : 광역시(인천광역시는 제외한다)
3. "다"지역 : "가"지역 및 "나"지역 이외의 지역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원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④보호대상자는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공급하는 주택중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을 수 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03.11.29, 2004.12.18, 2007.6.28, 2009.7.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임대를 희망하는 보호대상자는 통일부장관에게 동 주택의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 대한주택공사사장 기타 동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이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북한이탈주민이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하는 날까지 동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제38조의2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결정 시 24세 이하인 보호대상자(직계존속을 동반하지 아니한 자만 해당한다. 이하 "무연고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무연고청소년에 대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을 유예하고 공동생활시설을 알선할 수 있다. 다만, 무연고청소년의 연령, 생활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무연고 청소년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다른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진학 지도, 보충 교육 및 직업훈련 안내
3.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 심신회복을 지원하는 업무
4.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④ 통일부장관은 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 특별히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주택의 임대료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주택공사 사장 또는 지방공사 사장 등 해당 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생활시설의 이용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39조 (정착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월최저임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최저임금액"이라 한다)의 2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와 같이 기본금·가산금 및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호대상자 및 그 직계가족의 재산·사회적응상태, 정착의지, 정착지원시설과 임시보호시설에서의 위반행위 및 제3국에서의 체류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착금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2.6.3, 2004.12.18, 2007.6.28, 2009.7.31>

1. 기본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월최저임금액의 10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세대구성원의 수를 고려하여 정한다.
2. 가산금은 월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 본인 및 세대구성원의 연령·건강상태·근로능력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장려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50배 상당액의 범위안에서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이수 여부, 자격취득 여부 및 취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②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을 통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구체적 지급기준·감액사유 기타 필요한 사

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2002.6.3>

④통일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및 장려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8.12.31, 2004.12.1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및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가산금지급 신청서 및 장려금지급신청서에 통일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8.12.31, 2004.12.18>

제40조 (보로금의 지급기준)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은 보호대상자가 국가이익을 위하여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종류에 의하여 2억5천만원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에 가치있는 정보 : 2억5천만원이하
2. 군함·전투폭격기 : 1억5천만원이하
3. 전차·유도무기 기타 비행기 : 5천만원이하
4. 포·기관총·소총등 무기류 : 1천만원이하
5. 재화 : 시가상당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의 구체적인 지급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1998.12.31>

제41조 (실태조사등) ①통일부장관은 외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지원 등을 위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6.28>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를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7.6.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7.6.28>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내용등이 포함된 거주지보호대장을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7.6.28>

제42조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 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국방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변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해외여행에 따른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은 외교통상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3.31, 2002.6.3>

제42조의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를 위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제42조에 따라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소속 공무원 및 종교단체·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43조 (보고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거주지전입일부터 5년간 반기별로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09.7.31>

제44조 (입학등의 지원) ①보호대상자가 국내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법 제13조에 따른 학력인정을 받아 각급 학교에 편입학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7.31>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편입학을 원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조하여 이를 위한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제45조 (교육지원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에 한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보호기간중이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1998.12.31, 2004.12.18, 2007.6.28, 2008.6.5, 2009.7.31>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미만의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학,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제45조의2 (학교등의 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기관의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특별한 적응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외의 학교 중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에 대하여 제44조제2항에 따른 준비·보충학습을 실시하는 학교
- ② 학교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학교등의 운영 실적을 통일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운영이 지원 목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학교등의 예산 집행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지원의 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교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9.7.31]

제46조 (교육지원의 기준) ① 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②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국립·공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면제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반액(半額)을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호대상자의 성적 및 학업태도 등을 고려하여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보호대상자가 입학 또는 편입학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8학기(의학·치의학·약학 및 한의학 계통은 7년의 범위에서 12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1]

제47조 (교육지원의 절차)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대상자는 교육지원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통일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9, 2008.2.29, 2009.7.31>

③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8.12.31>

제47조의2 (생업지원)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소관 공공시설안의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8>

1. 장애인
2. 부자(父子)가정 또는 모자(母子)가정

3.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 55세 이상인 자로서 생활이 곤란한 자

[본조신설 2000.1.28]

제48조 (보호변경의 사유)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12, 2009.7.31>

1. 보호대상자가 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영관급장교로 특별임용된 경우
2. 보호대상자가 교수·연구원등 전문직에 취업하거나 의사등 전문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보로금을 포함하여 보호대상자의 취득자산 규모가 3억원이상인 경우
4. 보호대상자가 제3국으로 망명을 신청한 것이 확인된 경우
5. 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경우
6. 보호대상자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를 한 경우

제49조 (권한의 위임) ①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거주지보호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8.12.31, 2009.7.31>

1. 제4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 1의2.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에게 위탁한다. <신설 2000.1.28, 2002.6.3>

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정착지원시설안의 직업훈련을 제외한다)의 실시

1의2.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의 지급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지도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신청서접수 및 취업알선

제50조 (이의신청)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수령한 통일부장관은 지체없이 그 사본을 국가정보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1999.3.31>

②통일부장관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658호,2009.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최초로 취업한 것으로 본다.

1.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보호대상자가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2. 거주지 보호기간 중 4년이 지난 보호대상자가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2010년 7월 31일 이내에 최초로 취업하는 경우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09.8.5] [통일부령 제53호, 2009.8.5, 일부개정]

통일부 (정착지원과)02-2076-12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30>

제2조 (학력·자격인정의 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력 또는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력·자격인정신청서에 학력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②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내는 학력 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9.8.5>

③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보내는 자격 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8.5>

제3조 (직업훈련의 신청 등) ①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가 영농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농교육훈련·농업현장실습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3조의2 (취업보호기간의 연장 등 <개정 2007.8.10>) ① 영 제3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취업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8.10>

1. 60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이 제5급 이상인 자

②영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가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10.30, 2007.8.10>

③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30, 2007.8.10>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3 (우선구매 등의 지원신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우선구매등지원신청서에 영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30>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4 (취업알선 등의 신청) 영 제35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알선 또는 특별임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취업·특별임용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자격증명서사본 기타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5]

제3조의5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개정 2009.8.5>) ①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4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으면 별지 제4호의5 서식의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09.8.5>

[본조신설 2007.8.10]

제4조 (주거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1조의2에 따른 세대에 대하여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임대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그 세대의 구성원이 5명 이상 일 때에는 둘 이상의 주택을 알선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지급에 필요한 지원(이하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주거지원금 중에서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의 거주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 그 보호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일시불로 지급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영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수도권 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거주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영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나"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10퍼센트

2. 영 제38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다"지역에 거주하는 보호대상자: 주거지원금의 20퍼센트

④ 제3항에 따른 지방거주장려금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⑤ 영 제38조제5항에 따라 주택의 분양 또는 임대를 신청하려는 보호대상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택분양·임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5조 (정착금의 지급방법) ① 통일부장관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기본금을 지급하되,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퇴소할 때 기본금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1년 이내에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9.8.5>

② 통일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착금의 지급방법을 제1항의 규정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가산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3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중증장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18>

②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산금지급신청서에 진단서 등 가산금 지급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장려금의 지급사유 등) ①영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개정 2006.10.30, 2009.8.5>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 기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를 포함한다)에서 50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수료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

나. 제1호에 따른 직업훈련을 수료한 후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 외에 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6개월 이상 취업한 사실이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된 경우

② 영 제28조에 따라 북한 또는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8.5>

③영 제3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장려금지급신청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지급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노동관서 등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본조신설 2004.12.18]

제7조 (거주지보호대장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거주지보호대장을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지보호대장의 내용을 반기말의 다음달 20일까지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③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거주지등변경신고서에 신상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5>

제8조 (수업료 등을 보조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 제46조제3항 단서에서 통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영 제45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전 두 학기 평균 성적이 각각 만점의 7할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8조의2 (교육지원의 절차) ①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 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교육지원 신청자가 영 제4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교육지원 신청자의 편입학, 휴학·복학, 졸업·제적·자퇴 여부
3. 유급으로 재이수하거나 정규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재학하는지 여부

③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 신청자가 제2항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을 대상으로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46조제3항 본문에 따른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의 보조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사립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장이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교육보호대상자의 입학통지서 또는 성적통지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통일

부장관이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입학금·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9조 삭제 <2009.8.5>

제10조 (생업지원의 신청)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 사업 또는 편의 시설의 설치의 허가 또는 위탁(이하 "편의사업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보호대상자중 통일부장관의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생업지원신청서에 편의사업허가등신청서를 첨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47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15]

부칙 <제53호,2009.8.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거주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주지로 전입한 보호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업훈련 장려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연수실시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직업훈련 중인 보호대상자가 수료하게 될 직업훈련의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500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4.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 지침

제정 2001. 1. 30 통일부지침

개정 2005. 12. 7 통일부지침

개정 2008. 2. 26 통일부지침

개정 2009. 12.28 통일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 법률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학교등”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에서 중학교·고등학교를 말한다.
2. “대학등”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이 정하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3. “수업료등”이라 함은 입학금·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지원대상) ①법 제24조 및 영 제44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내의 중학교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25세 미만의 자
2. 국내의 대학·교육대학에 거주보호기간 중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거나 고

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만 35세 미만의 자

3. 국내의 산업대학·전문대학·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그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 거주보호기간 중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거나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후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②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학교등 및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로서 1997. 7. 13이전에 보호 결정된 자
2. 중학교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12.11이전에 보호결정 되고 1993.12.11이전에 출생한 자
3.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부 또는 모가 1993.12.11이전에 보호결정 되고 1993.12.11이전에 출생한 자

③제1항 각호의 연령산정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교육지원내용) ①제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별 교육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일부장관은 영 제44조에 따라 제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가 국내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관계법령에 따라 준비·보충학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2. 영 제46조에 따라 중학교등 및 국공립의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게는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3. 영 제46조에 따라 사립의 대학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에게는 수업료

등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3조제2항제1호의 교육지원대상자(1993년 12월 11일 이전에 보호 결정된 자에 한한다) 중 중학교등에 진학한 자와 제3조제2항제2호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는 수업료등의 면제·보조와는 별도로 학자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육지원내용 중 입학금은 입학·재입학·편입학 등 그 입학의 형태 등과 관련 없이 해당 지원대상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한다.

제5조(입학 또는 편입학 절차) ①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호의 교육지원대상자가 교육 관계법령상의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하고자 할 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에 의한 학력인정 및 학년결정을 받은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제출한다.

②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 제1호의 교육지원대상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고자 할 때는 해당 학교의 장의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에 따른다.

제6조(수업료등의 면제절차) 중학교등 및 국공립의 대학등에 진학한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당해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보조금의 지급절차) ①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해당학교의 장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지원보조금교부신청서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성적통지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재학 중인 사립대학교에 국고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은 교육지원대상자의 신변보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해당 학생 및 보호자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지원신청서와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의 보조금을 당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지급함으로써 학교에서 지원되는 50%의 수업료등을 면제받지 못할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은 당해 학생 및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통일부장관은 제7조의 보조금 신청서류를 제출받아 북한이탈주민등록대장 및 보호대상자 조사서류와 대조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학교별 교육지원보조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별 교육지원보조금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 해당대학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교육지원보조금 교부시기는 1학기분은 매년 5월에 2학기분은 매년 11월에 교부한다.

④교육지원보조금은 해당학교의 장이 요구한 시중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제7조제3항의 경우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가 원하는 시중금융기관 계좌로 송금한다.

제9조(과오납의 환수) ①통일부장관은 보조금에 대한 과오납이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해당학교에 통보하고 정정 및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과오납 및 환수조치를 통보 받은 해당학교의 장은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업료등의 지원기간) ①중학교등은 졸업시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②대학등의 수업료등의 면제·보조기간은 영 제46조 제4항에 따른다. 이 경우 기간의 기산은 대학등에 최초로 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하고, 제11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면제·보조기간을 포함한다. 다만,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한다.

③ (삭제)

- ④ (삭제)
- ⑤ (삭제)
- ⑥ (삭제)

제11조(수업료등의 지원제외대상) ①대학등에 진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등의 면제 및 보조대상에서 제외 또는 제한한다.

1.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2. 북한이탈주민 본인으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2회이상 70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학기의 수업료 등을 면제 및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서 직전학기의 평균학업성적이 100점 만점 중 70점 미만인 자는 다음 학기 수업료 등의 면제 및 보조를 아니 한다.

②제적·자퇴 이후 같은 대학 등에 재입학하거나 타 대학등에 신 입학 또는 편 입학하는 경우에는 이전 학교의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를 적용한다.

③<삭제>

제12조(학자금의 지급등) ①제4조 제4호의 학자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

②고등학교의 학자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1. 인문계 : 보통교육·과학·외국어를 주로 하는 학교 및 종합고등학교의 인문과정
2. 실업계 : 농업·공업·상업·수산·해운·가사·실업·예술·체육 및 종합고등학교의 실업과정

③제3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교육지원대상자가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자금지급신청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학자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학기 분은 매년 5월, 2학기 분은 매년 11월에 당해 학생 및 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시중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⑤통일부장관은 지급된 학자금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지원대상자 학자금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학자금의 지급기간) ①일반 중학교등에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학자금 지급기간은 각 학교급별로 6학기 이내로 한다.

②심신장애 등으로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자의 학자금 지급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치부 : 2학기
2. 초등부 : 12학기
3. 중등부 : 6학기
4. 고등부 : 6학기

제14조(증명서의 발급) ①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등록대장 및 조사기록표와 대조하여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 및 자치단체장은 교육지원대상자가 거주지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학력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등록대장 및 조사기록표와 대조하여 거주지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학력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통일부지침 2001. 1.30>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지침 2005.12. 7>

이 지침은 2006.1.1부터 시행한다.

부칙 <통일부지침 2008.2.27 >

- ①(시행일)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교육대상에 관한 경과조치)2005년 2월 28일 이전에 보호결정 되어 거주지보호기간이 종료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2008년 1학기에 대학 등에 입학하거나 편입학한 경우에 한하여 이 지침에 의한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부칙 <통일부지침 2009.12.28>

- ①(시행일)이 지침은 2009.12.28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육지원대상자 성적 통지서

○○○○년

제○학기

○○ 대학교(대학)

보호 번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락처 (TEL)	학부 (과)	학년	평균 성적	공 납 금 액				보조금 청구금액	신상 변동사항 (휴학·졸업등)
							입학 금	수업 료	기성 회비	계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학교별 교육지원보조금 지급결정서

○○ 대학교(대학)

(단위:
원)

대 상 자	학부(과)	학년	지원액(개인)	개인별 총지원회수	총 지원액(학교)	비고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학자금지급신청서

수 권 자	보호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계 좌 입 금 취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학 자	성 명	수권자와의 관계	학 교	학 과	학년	주민등록번호
<p>위와 같이 학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서명 또는인)</p> <p style="text-align: center;">수권자와의 관계</p> <p>통일부장관 귀하</p>						
구 비 서 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재학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5. 민간단체 현황¹⁾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포함 총 67개 단체로 구성

① 아동청소년 분과 : 총 13개 단체

연번	단체명	대표	연락처	주소	주요 활동
1	꿈사리 공동체	노공순	02-2690-0521 010-9286-0319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40-11 황금주택 502호	- 무연고탈북청소년 보호시설
2	남북문화 통합교육원	김영우	02-2677-827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45 동성빌딩2호	- 새터민 아동·청소년 대상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시
3	대구KYC	이홍우	053-356-8220	대구 중구 개산동2가 139 동광빌딩 101호	- 탈북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4	북한인권 시민연합	윤 현	02-723-1672	서울 종로구 교북동 10-22 심지빌딩 402	- 해외탈북자 지원사업 - 탈북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 하나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
5	셋넷학교	박상영	02-2636-289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121-245 동성빌딩 2층	- 탈북청소년 대안학교 운영
6	여럿이 함께 만드는 학교	조진경	031-672-9120	경기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633-8	- 탈북청소년 지원
7	여명학교	이만열	02-888-1673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49-25	-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 조명숙 교감
8	열린사회강서 양천시민회	이종철	02-3661-1810	서울 강서구 등촌1동 649-10 강서NGO센터 301	- 탈북청소년 지원사업 - 멘토 양성사업
9	우리집 (다리공동체)	최경숙	031-408-6317 011-9660-9947	경기 안산 상록구 본5동 1136-6	- 무연고탈북청소년 보호시설
10	우양 복지재단	정의승	02-333-2855	서울 마포구 서교동 460-1 우양빌딩 4층	- 탈북청소년 정착지원사업
11	지구촌 고등학교	신기영	051-503-2485	부산 연제구 거제동 50	- 무연고청소년 보호시설
12	하늘꿈학교	임향자	041-560-1933	충남 천안시 삼용동 40 (고려신학대학원 내)	- 무연고청소년 보호시설 - 탈북청소년 대안형 학교
13	한꿈학교	김성원	031-574-2156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덕송리 206	- 무연고 청소년보호시설 - 탈북청소년 대안형 학교

1) 통일부, 2010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실무편람, 통일부, 2010, 212-220면.

② 지역복지분과 : 총 29개 단체

연번	단체명	대표	연락처	주소	주요 활동
1	가양7종합 사회복지관	이권일	02-2668-8600	서울 강서구 가양3동 1486번지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강서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강서구지역협의회 가입기관
2	갈산종합 사회복지관	김영수	032-525-8187	인천 부평구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3	개금종합 사회복지관	박용하	051-893-5034	부산 부산진구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4	공릉종합 사회복지관	노유환	02-948-0520- 2	서울 노원구 공릉3동 708번지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노원구지역협의회 가입기관
5	군자종합 사회복지관	김경옥	031-410-607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9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6	대구종합 사회복지관	심형래	053-964-3335	대구 동구 서호동 89-1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7	덕유 사회복지관	최유호	032-325-2161	경기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41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8	마들 사회복지관	김정숙	02-971-8387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5-3 (중계주공1단지내)	- 지역복지서비스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9	만수종합 사회복지관	정해운	032-463-8161	인천시 만수종합7단지 내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10	명륜종합 사회복지관	김효중	033-762-8131 -2	강원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2차A 단지내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11	목포종합 사회복지관	임영배	061-272-2395	전남 목포시 신정동 1749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12	물운대종합 사회복지관	김정년	051-264-9033	부산 사하구 다대1동 1548-12	- 지역복지서비스제공 - 부산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신규 추진
13	방화6종합 사회복지관	정애선	02-2666-6181	서울 강서구 방화3동 816 (도시개발A6단지내)	- 지역복지서비스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14	범동종합사 회복지관	박명순	042-633-1141	대전 대덕구 범2동 188	- 지역복지서비스

연번	단체명	대표	연락처	주소	주요 활동
15	부산종합 사회복지관	이수경	051-465-0990	부산 동구 수정4동 1169-3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부산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부산지역협의회 가입기관
16	상리종합 사회복지관	조덕자	051-404-5061	부산 영도구 동삼3동 1123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17	성남중탑 사회복지관	조덕자	051-404-5061	부산 영도구 동삼3동 1123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18	생명종합 사회복지관	이재현	042-283-9191	대전 동구 판암2동 239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19	우림 복지재단	김대식	031-924-5784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2동 14 임대상가 105호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20	울산중구종합 사회복지관	박을남	052-296-3161	울산 중구 남외동 529-2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21	울산화정종합 사회복지관	김상도	052-236-3139	울산 동구 화정동 862-2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울산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22	인천삼산종합 사회복지관	강유경	032-529-8607	인천 부평구 삼산동 157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인천 부평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23	자원봉사 능력개발원 (북한이주민 지원센터)	윤 옥 한재홍	053-356-0464	대구시 서구 원대3가 1371-6	- 남북가족 통합봉사단 및 토론 모임 - 전문자원봉사자 교육 및 육성 - 청소년 학습지도·개인 결연
24	태화기독교 사회복지관	김현숙	02-2040-1662	서울 강남구 수서동 741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강남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강남구지역협의회 가입기관
25	평화종합 사회복지관	양지윤	02-949-0123	서울 노원구 중계3동 514-3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26	하안종합 사회복지관	강병권	02-894-0720	경기 광명시 하안동 200 (하안3단지 1303호)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27	학장종합 사회복지관	오홍숙	051-311-4015	부산 사상구 학장동 168-7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28	한빛종합 사회복지관	정성환	02-2690-8762	서울 양천구 신월4동 540-1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 양천구 거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 양천구지역협의회 가입기관
29	한솔종합 사회복지관	성화	031-716-4215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01	- 지역복지서비스 -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

③ 정착지원분과 : 총 16개 단체

연번	단체명	대표	연락처	주소	주요 활동
1	교육복지 연구원	김령자	02-396-5063	서울 종로구 평창동 189 동남빌딩 304	- 북한이탈부민 친목활동 후원 - 탈북여성 사회적응교육 실시
2	대구YWCA	김초자	053-652-0070	대구 남구 대명동 447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자원봉사자 교육
3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강덕기	02-2290-6751	서울 성동구 마장동 523-1 서울지사 사회봉사과	- 자원봉사자 교육 - 서울 지역 사회봉사관 북한 이탈주민 지원사업 지원
4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김관숙	051-441-2240	부산 동구 초량3동 1158-7	- 탈북여성 상담 및 교육 - 북한이탈주민 적응프로그램
5	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홍사덕	02-747-2944-5	서울 종로구 인의동 28-9 인의빌딩 1105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활동 (취업지원활동)
6	새마을운동이북5도지부	최경모	02-396-3707	서울 종로구 구기동 139 통일회관 125호	- 자매결연사업 - 후원행사 개최
7	새서울생명의전화	김인숙	02-2649-9233	서울 양천구 목2 917-1 기독교방송 11층	- 지역복지서비스 제공
8	생명의전화	박종철	02-763-9195	서울 종로구 이화동 93-8	- 북한이탈주민 고충 상담
9	서울YWCA	김숙희	02-3705-6007	서울 중구 명동1가 1-1	- 탈북 여성 상담 및 지원사업
10	선한사람들 자유시민대학	김순배	02-783-2292~3 783-245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3-5 오성빌딩 804호	-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프로그램 'Good People' 대학 운영 -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11	전주YWCA	조숙진	063-224-55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7-1	- 지역복지 서비스 제공
12	좋은씨앗	임향자	02-443-2073	서울 송파구 가락2동 196-16	- 자매결연 - 탈북청소년 대안형 학교 추진

13	한국 자유총연맹	권정달	02-2238-9137	서울 중구 장충동2가 201-6	- 북한이탈주민 친목활동 후원
14	한국기독교 탈북민 정착지원협의회	석사현	02-742-9182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1002호	- 자매결연사업 - 북한이탈주민 친목활동 후원
15	한국인성개발 연구원	이문수	02-766-3224~5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66-2 동관빌딩 2층	- 탈북자 인성교육
16	한민족통일여성 중앙협의회	고정명	02-704-2193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444-21 광림빌딩 403호	- 후원행사개최

④ 해외분과 : 총 8개 단체

연번	단체명	대표	연락처	주소	주요 활동
1	동북아 평화연대	도재영	02-959-7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236-1 더성빌딩 B1	- 해외탈북자 지원사업
2	두리하나	김진홍	02-532-2513	서울 동작구 사당동39-18 건화빌딩 2층	- 해외탈북자 지원사업 - 북한선교사업
3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한기홍	02-723-6711	서울 종로구 18-5 홍성빌딩 1층	- 해외탈북자 지원사업
4	북한인권 정보센터	김상헌	02-723-6045	서울 종로구 사직동 247	- 해외탈북자 지원사업
5	좋은벗들	법륜	02-587-8996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585-15 정토회관	- 해외탈북자 지원사업 - 하나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
6	천주교민족 화해위원회	김운희	02-499-2781	서울 광진구 중곡1동 643-1 221호	- 해외탈북자 지원사업 - 탈북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하이모' 운영
7	피랍, 탈북인권연대	도희윤	02-718-3397	서울 마포구 아연3동 615-28호 4층	- 해외탈북자 지원사업
8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용규	02-745-0191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 해외탈북자 지원사업 - 자매결연사업

6. 기타

● 법률상담기관 및 연락처

번호	기관명	연락처
1	새롭게 하나된 조국의 모임	02) 747-2944~5
2	대한법률구조공단	02) 532-0132
3	대한변호사회	02) 3475-4003
4	서울지방변호사회	02) 3476-6000
5	인천지방변호사회	032) 861-2170
6	수원지방변호사회	031) 216-0646
7	춘천지방변호사회	033) 243-8321
8	청주지방변호사회	043) 284-9683
9	대전지방변호사회	042) 472-3358
10	대구지방변호사회	053) 753-1900
11	부산지방변호사회	051) 506-8500
12	울산지방변호사회	052) 267-6633
13	창원지방변호사회	055) 266-0606
14	광주지방변호사회	(062)222-0430
15	전주지방변호사회	(063)252-7710
16	전주지방변호사회	(063)252-7710
17	제주지방변호사회	(064)751-1402

● 정착도우미 사업기관 현황

순번	단체명 (담당부서)	연락처	주소	주요활동
1	대한적십자사 (사업 지원본부 재난봉사과)	02-3705-3612	서울 중구 소파길 10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2	대한적십자사 서울지 사 (구호봉사과)	02-2290-6752	서울 성동구 고산자 로 112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3	대한적십자사 부산지 사 (구호복지과)	051-801-4023	부산 부산진구 전포 2동 607-1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4	대한적십자사 인천지 사 (구호복지과)	032-810-1331	인천 연수구 연수동 함박피길 116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5	대한적십자사 울산지 사 (구호복지과)	052-271-5657	울산 남구 삼산동 1564-14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6	대한적십자사 경기지 사 (구호복지과)	031-230-1623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 1015-6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7	대한적십자사 강원지 사 (구호복지과)	033-255-9596	강원 춘천시 중앙로 1가 45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8	대한적십자사 충북지 사 (구호복지과)	043-230-8641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18-14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9	대한적십자사 대전·충 남지사 (구호복지과)	042-254-7101	대전 중구 선화동 194-1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10	대한적십자사 전북지 사 (구호복지과)	063-280-58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603-5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11	대한적십자사 광주·전 남지사 (구호복지과)	062-573-0543	광주 북구 매곡동 256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12	대한적십자사 경북지 사 (구호봉사과)	053-252-9846	대구 중구 남산2동 257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13	대한적십자사 경남지 사 (구호복지과)	055-263-6184	경남 창원시 용호동 4-4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14	대한적십자사 제주지 사 (구호복지과)	064-758-3502	제주 제주시 용담1 동 266-1	- 자원봉사자 교육 - 북한이탈주민 이송 및 정착활 동 지원

● 지자체별 결연사업(멘토링) 운영현황

대상	지역	프로그램 명(멘토 인원)	월인원 (연인원)
아동, 청소년	노원구	○ 청소년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23명) - 주 2회 2시간 학습 ○ 캠퍼스 멘토링 프로그램(대학적응지원) ○ 아동 공부방 무지개교실 운영	
	부천시	○ 아동/청소년 멘토 결연사업(Happy Together) - 학습 및 문화체험	
	성남시	○ 파랑새 교실 멘토링 프로그램 - 봉사자(한국의대 부속외고 영문과 학생)	
	부산시	○ 청소년과 신변보호담당관과의 멘토 결연 ○ 교사-청소년 멘토 결연	
	대구시	○ 청소년 생활안정지원 프로그램(Freinds 1:3) ○ 통일길라잡이 멘토-멘티 결연 ○ 신규 대학생 대상 영어공부방 운영	
	인천시	○ 아동/청소년 학습지도(53명)	
가족결연	노원구	○ 종교단체와 결연(40개 종교시설)	
	양천구	○ 북한이탈주민 한가족 자매결연(2회)	
	성남시	○ 남한가정과의 1:1결연맺기(People to People)	
	부산시	○ 한가족 결연(1:1결연)	
	대전시	○ 실향민 1세대와 가족 결연사업(3회)	
	울산시	○ 평통자문위원과 멘토링 결성 ○ 울산 YWCA 자원지도자와 멘토링 결성	
	충북도	○ 이북도민-북한이탈주민 자매결연체결(5개 시군)	
	원주시	○ 신규 전입 북한이탈주민 대상 1:1후견인 지정	

책임연구보고서 2010-24

신변보호경찰관의 탈북청소년 신변보호 방안 연구

2010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영 식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